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0 서울시 여성 · 가족의 현황과 이슈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036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0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과 이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contents

I. 서울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분석	1
II. 서울시 여성정치의 현황과 지역정치정착을 위한 과제	21
III.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39
IV. 공정무역(Fair Trade)과 여성일자리	57
V. 서울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77
VI. 고용 양극화와 여성 고용	93
VII. 서울시 경제활동상태의 성별 추이분석(2000~2009)	125
VIII. 서울시 보육정책 전망	145
IX.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부자(父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175
X. 서울시 아동·청소년 안전 및 건강 실태 조사	189
XI. 서울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제도의 발전방향	227

● 표 목차

표 1-1	기업·은행권 미소금융재단 및 지부 (총 14개)	5
표 1-2	미소금융재단 지역지점 (총 7개)	5
표 1-3	미소금융 지원대상 기준	6
표 1-4	외국의 사회연대은행 금융지원 및 기간	7
표 1-5	서울/서울 외 지역의 근로빈곤층 여성가장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비교	11
표 1-6	서울/서울 외 지역의 근로빈곤층 여성가장가구 부채 발생요인 비교	13
표 II-1	역대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의 여성의원 당선율	24
표 II-2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25
표 II-3	서울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여성 후보자, 당선자 현황	26
표 II-4	민선4기 서울시 기초의원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	27
표 II-5	민선3기, 4기 서울시의원 조례안 처리현황	28
표 II-6	민선4기 서울시의회 조례안 성별 발의 건수(2006~2009년)	29
표 II-7	년도별(민선4기) 조례안 처리 현황	29
표 II-8	서울시의회 위원회별 여성의원 소속 현황(7대)	30
표 II-9	민선 4기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발의 조례안 내용	31
표 II-10	서울시 성별 공무원 현황	32
표 II-11	2009년 서울시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및 비율	33
표 II-12	년도별 서울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35
표 III-1	가구형태 및 성별 하루생활시간량	46
표 III-2	한국과 미국 유배우자 성인의 하루생활시간	48
표 III-3	요일별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 실태-남편	49
표 III-4	요일별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의 실태-부인	49

표 III-5	행동유형별 하루평균 부부의 가족공유시간	51
표 III-6	맞벌이부부와 남편홀벌이부부의 가족공유시간 차이	53
표 V-1	서울형 어린이 집 학부모 만족도	83
표 V-2	보육시설 학부모 만족도	84
표 V-3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서비스 개선	85
표 VI-1	비정규직 규모 (2010년 3월)	97
표 VI-2	성별 비정규직 규모 (2010년 3월)	98
표 VI-3	성별 비정규직 규모 변화 (2007년~2010년)	98
표 VI-4	성별 비정규직 규모 증감 정도	99
표 VI-5	성 및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규모 (2010년 3월)	101
표 VI-6	고용형태별 시간당 정액급여 (2010년 3월)	103
표 VI-7	성 및 고용형태별 시간당 정액급여	104
표 VI-8	연도별·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2010년 3월)	106
표 VI-9	성별·고용형태별 총급여액	107
표 VI-10	고용형태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08
표 VI-11	성 및 고용형태별 월근로시간	109
표 VI-12	성 및 고용형태별 총 근로일수	109
표 VI-13	성 및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110
표 VI-14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112
표 VI-1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113
표 VI-16	고용형태별 상여금·퇴직금 적용률 및 노조 가입률	115
표 VI-17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률 비교	116
표 VII-1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추이	128
표 VII-2	서울시 비경제활동 인구	129
표 VII-3	서울시 경제활동 참가율	131
표 VII-4	서울시 고용률	132

표 VII-5	서울시 실업률	133
표 VII-6	서울시 성별 취업자 수	134
표 VII-7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135
표 VII-8	서울지역 여성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137
표 VII-9	서울지역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138
표 VII-10	서울지역 여성의 직종별 취업자	140
표 VII-11	서울지역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41
표 VIII-1	서울시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이용아동 현황	149
표 VIII-2	서울시 아동(만0세~만5세)의 보육시설 이용율 현황	150
표 VIII-3	한국, 일본 대기 아동 수	151
표 VIII-4	취약계층 지원 내용과 지원 아동 수(명)	152
표 VIII-5	무상보육 소요예산 2(월)	155
표 VIII-6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매입/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158
표 VIII-7	무상보육 방안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의 기대효과	161
표 VIII-8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율	162
표 VIII-9	유치원(pre-school)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	163
표 VIII-10	일본 인가·인가 외 보육시설 현황(2006년)	167
표 VIII-붙임-1	자치구별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과 보육시설 유형별 아동 수	171
표 VIII-붙임-2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보육시설 수와 대기 아동 수	172
표 VIII-붙임-3	보육시설 규모별 연간 운영 수지	173
표 IX-1	부자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된 후 부딪치는 어려움	180
표 IX-2	부자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된 후 겪은 양육의 어려움(복수응답)	182
표 IX-3	가족유형 변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및 소원화의 이유	183

【 표 IX-4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인지도 및 필요성	186
【 표 IX-5 】 한부모가족 지원 희망 서비스 우선순위	187
【 표 X-1 】 성교육 경험여부	198
【 표 X-별첨-1 】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	216
【 표 X-별첨-2 】 학교폭력 경험	217
【 표 X-별첨-3 】 학교폭력 후 대처방안	217
【 표 X-별첨-4 】 성적피해경험	218
【 표 X-별첨-5 】 가출경험 유무	218
【 표 X-별첨-6 】 가출경험 원인	218
【 표 X-별첨-7 】 가출 후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이용경험	218
【 표 X-별첨-8 】 학교가기 전 아침식사 여부	219
【 표 X-별첨-9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219
【 표 X-별첨-10 】 평소 운동의 정도	219
【 표 X-별첨-11 】 자신의 체격 정도(주관적 생각)	220
【 표 X-별첨-12 】 건강한 정도 (주관적 생각)	220
【 표 X-별첨-13 】 정기 건강검진 여부	220
【 표 X-별첨-14 】 하루 평균 게임시간 및 게임 지속시간 (중, 고)	221
【 표 X-별첨-15 】 게임빈도 및 pc방 이용빈도 (중, 고)	221
【 표 X-별첨-16 】 게임중독 관련 문항 (중, 고)	222
【 표 X-별첨-17 】 유해매체 중독 (초, 중, 고)	223
【 표 X-별첨-18 】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경험 여부	224
【 표 X-별첨-19 】 유해매체 유해성교육에 대한 효과정도	224
【 표 X-별첨-20 】 스트레스 정도	224
【 표 X-별첨-21 】 자살생각 경험	225
【 표 X-별첨-22 】 자살생각 이유	225
【 표 XI-1 】 급식도우미 연차별 추진 실적	230

● 그림 목차

■ 그림 1-1 ■	미소금융사업의 기본방향	4
■ 그림 1-2 ■	미소금융사업 재원확보 현황	6
■ 그림 1-3 ■	금융지원 기간 및 조건	7
■ 그림 1-4 ■	서울지역의 근로빈곤층 여성가장가구 생활비 부족 시 충당방법	12
■ 그림 1-5 ■	서울 지역의 근로빈곤층 여성가장가구 부채액	12
■ 그림 1-6 ■	서울여성소액금융재단 설립 목표	17
■ 그림 1-7 ■	서울여성소액금융재단 추진 전략	17
■ 그림 1-8 ■	서울여성소액금융재단 추진시기 및 단계별 로드맵	18
■ 그림 II-1 ■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25
■ 그림 II-2 ■	서울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여성 후보자, 당선자 현황 ...	26
■ 그림 II-3 ■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	28
■ 그림 II-4 ■	2009년 서울시 본청 직급별 공무원 현황	33
■ 그림 II-5 ■	200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급별 평균 공무원 현황 ..	34
■ 그림 II-6 ■	년도별 서울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35
■ 그림 VI-1 ■	성별 비정규직 규모 변화 (2007~2010)	99
■ 그림 VI-2 ■	성별 비정규직 규모 증감 정도	100
■ 그림 VI-3 ■	성·고용형태·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분포	100
■ 그림 VI-4 ■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	105
■ 그림 VI-5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105
■ 그림 VI-6 ■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106
■ 그림 VI-7 ■	성 및 고용형태별 총급여액	107
■ 그림 VI-8 ■	성 및 고용형태별 총 근로일수	110
■ 그림 VI-9 ■	성 및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111

■ 그림 VI-10 ■	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113
■ 그림 VI-11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114
■ 그림 VI-12 ■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 현황	116
■ 그림 VI-13 ■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 차이	116
■ 그림 VII-1 ■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	129
■ 그림 VII-2 ■	서울시 비경제활동 인구	130
■ 그림 VII-3 ■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131
■ 그림 VII-4 ■	서울지역 성별 고용율 추이	132
■ 그림 VII-5 ■	서울지역 성별 실업률	133
■ 그림 VII-6 ■	서울시 성별 취업자 수 추이	134
■ 그림 VII-7 ■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136
■ 그림 VII-8 ■	서울지역 여성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137
■ 그림 VII-9 ■	서울지역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조성분포	139
■ 그림 VII-10 ■	서울지역 여성의 직종별 취업자	140
■ 그림 VII-11 ■	서울지역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142
■ 그림 VIII-1 ■	무상보육 소요예산1	155
■ 그림 IX-1 ■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이	178
■ 그림 IX-2 ■	서울시 2세대 가구형태별 분포	178
■ 그림 IX-3 ■	한부모 가족이 된 후 부딪치는 어려움	180
■ 그림 IX-4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부모-자녀 관계	181
■ 그림 IX-5 ■	향후 생활에 대한 기대	184
■ 그림 IX-6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수혜 현황	185
■ 그림 X-1 ■	(동네 및 학교주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도 (성별비교)	192
■ 그림 X-2 ■	(동네 및 학교주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도 (초중고비교)	192

■ 그림 X-3 ■ 학교폭력 경험률	194
■ 그림 X-4 ■ 학교폭력 후 대처방안	195
■ 그림 X-5 ■ 성적피해 경험 성별비교(서울지역)	196
■ 그림 X-6 ■ 성적피해 경험 성별비교(서울외지역)	196
■ 그림 X-7 ■ 성적피해 후 보고대상	197
■ 그림 X-8 ■ 성교육 무경험 비율	198
■ 그림 X-9 ■ 가출경험률 비교(서울/서울외)	199
■ 그림 X-10 ■ 가출경험 원인	200
■ 그림 X-11 ■ 가출 후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이용경험	201
■ 그림 X-12 ■ 학교가기 전 아침식사 하지 않은 비율	202
■ 그림 X-13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203
■ 그림 X-14 ■ 초중고별 평소 운동정도 비교	204
■ 그림 X-15 ■ 성별 운동 전혀 안하는 비율	205
■ 그림 X-16 ■ 성별 평소 운동정도 비교 (중학생)	205
■ 그림 X-17 ■ 자신의 체격 정도(고등학생 성별비교)	206
■ 그림 X-18 ■ 초중고별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	206
■ 그림 X-19 ■ 정기 건강검진 여부	207
■ 그림 X-20 ■ 하루 평균 게임시간 (평일)	209
■ 그림 X-21 ■ 하루 평균 게임시간 (주말)	209
■ 그림 X-22 ■ 게임 한번 했을때 지속시간	210
■ 그림 X-23 ■ 게임빈도	210
■ 그림 X-24 ■ pc방 이용빈도	210
■ 그림 X-25 ■ 게임중독률 (자주그렇다+항상그렇다)	211
■ 그림 X-26 ■ 유해매체 경험률	212
■ 그림 X-27 ■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경험 여부	213
■ 그림 X-28 ■ 유해매체 유해성교육에 대한 효과정도	213

■ 그림 X-29 ■ 스트레스 실태	214
■ 그림 X-30 ■ 외모·신체적 조건 스트레스 정도 (중학생/성별비교) ...	214
■ 그림 X-31 ■ 자살생각 경험	215
■ 그림 X-32 ■ 자살생각 이유	215
■ 그림 XI-1 ■ 급식도우미 현장 활동사진	231
■ 그림 XI-2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제도 운영의 만족도	232
■ 그림 XI-3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의 배식 활동에 대한 만족도	233
■ 그림 XI-4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의 자격에 대한 만족도	233
■ 그림 XI-5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제도의 만족도	234
■ 그림 XI-6 ■ 급식도우미의 연령	236
■ 그림 XI-7 ■ 급식도우미의 소득	236



I

서울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크래딧 활성화 방안분석

이성은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I 서울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분석

제1절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분석의 배경

- 한국의 제도권 금융 사업은 2005년 복지부 예산으로 민관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서 시작되었음. 2009년 9월 제31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미소금융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09' 9.17).
- 2009년 12월 15일 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한달 간 기업, 은행계 미소금융 재단 및 미소금융 지역 지점이 21개 설립됨. 2010년 상반기 중 50여 개의 미소금융 지점 설립을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소금융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1) 대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2) 다양한 빈곤층의 대출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사업 방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임.

2. 분석의 목적

- 한국 사회의 빈곤의 여성화는 IMF 이후 양극화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대도시 서울의 여성 빈곤은 이혼, 사별 등의 가족관계의 변화, 청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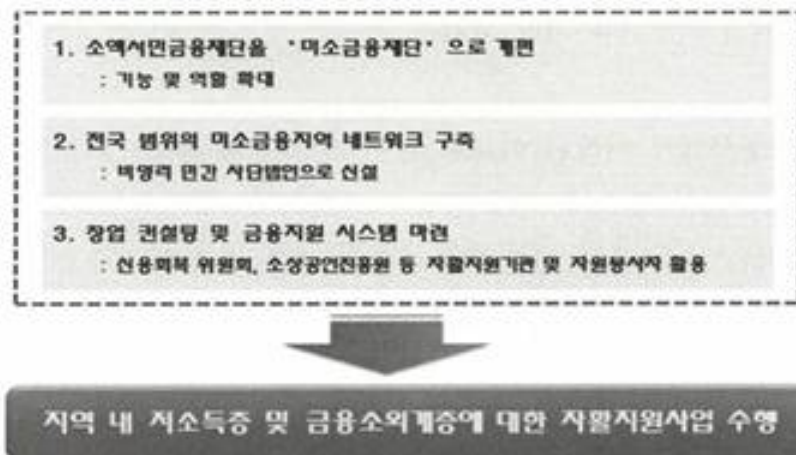
업층의 증가, 고령화 사회 등으로 더욱 가속화, 다층화 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제도권 소액 금융사업의 활성화를 연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왜 여성에 대한 특화된 사업이 제도권 금융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함.

- 따라서 본 분석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권 소액금융사업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함. 이를 통해서 여성의 탈 빈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액금융사업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제2절 미소금융사업의 현황 및 한계점

1. 미소금융사업의 현황

1) 미소금융사업의 기본 방향



(자료: 미소금융사업 추진계획, 2009)

【그림 1-1】 미소금융사업의 기본방향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현황

- 지점설립현황 : 2010.2월 현재 총 24개의 기업, 은행권 미소금융재단(17개) 및 미소금융 중앙재단 지역 지점(7개)이 설립됨(표 1-1, 표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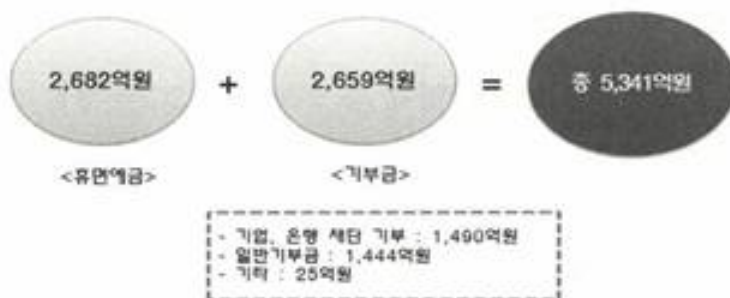
【 표 1-1 】 기업·은행권 미소금융재단 및 지부 (총 14개)

설립일	재단명	장 소	비고(지부)
2009.12.15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 팔달문	수원권선구
2009.12.17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 을지로2가	
	국민미소금융재단	대전 은행동	
	신한미소금융재단	경기 부평	
2009.12.18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서울 동대문	울산지점
2009.12.21	LG미소금융재단	경기 파주	강동지점
	하나미소금융재단	서울 종로구	충주지점
2009.12.23	SK미소금융재단	서울 영등포구	서귀포 지점
2009.12.24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서울 강서구	포항, 광양
2009.12.29	기은미소금융재단	경기 안산시	
2009.12.30	롯데미소금융재단	서울 남대문	

【 표 1-2 】 미소금융재단 지역지점 (총 7개)

설립일	재단명	대표자(대표경력)
2009.12.24	서울 서초구지점	김영수(교육자)
2009.12.28	충북 청주지점	박노성(교육자)
2009.12.30	서울 은평구지점	박운석(사업가)
2009.12.31	광주 서구지점	김재철(금융인)
2010.01.06	대구 서구지점	박성동(금융인)
2010.01.12	강원 춘천지점	박의범(교육자)
2010.01.15	부산 중구지점	정진욱(금융인)

- 재원확보 현황 : 2010.1.18일 현재 휴면예금 및 기부금 등 총 5,341억원 조성(그림 1-2 참조).



■ 그림 1-2 ■ 미소금융사업 자원확보 현황

3) 금융지원 대상기준

- 금융지원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인하여 대출 상담 건수에 비해 실제 대출 수혜자는 30% 내외임.

■ 표 1-3 ■ 미소금융 지원대상 기준

미소금융지원 대상기준
○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사업등록자 대출의 경우 사업자 등록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자 ○ 초기 창업 대출자의 경우 창업 자금 중 50%를 확보한 자. ○ 대도시 거주자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재산 대비 부채가 50% 미만인자.

4) 금융지원 운영형태

- 프랜차이즈 창업 자금대출, 창업 임차 자금, 운영자금대출, 시설개선자금 대출 등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함.
- 하지만 앞선 탈 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소액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한 외국의 사례 및 한국의 민간 기관의 사례를 볼 때, 창업자금에만 한정된 소액 금융 대출 사업은 현실적으로 탈 빈곤에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금융지원 기간 및 조건



※ 대출종류에 따라 6개월~1년 이내 거지 기간 별도 운영

【그림 1-3】 금융지원 기간 및 조건

6) 외국의 사회연대은행 금융지원 및 기간

【표 1-4】 외국의 사회연대은행 금융지원 및 기간

(자료: 노대명, 정명순 외, 2003)

사례	대출대상	대출 방식	대출금액	대출이자	창업 지원	조직 운영	성과측면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	농촌 빈곤여성	개인 대출	1인 평균 3,000다카 (약 75달러)	4% 낮은 이자율, 5~15년의 장기 상환기간 적용	기초 교육에 주력	중앙 집중형	상환율 90%
미국 ACCION	빈곤 청년층	개인/ 공동 대출	300~ 50,000 달러	초기이자율 16%, 3~12개월까지 원리금 분할상환	경영 지도	지방 분권형	상환율 90%
영국 GRF	저발전 지역 소기업 중심	개인/ 공동 대출	300~ 30,000 파운드	2~3% 변동금리 (일반은행 4~15% 변동금리)	직업 훈련, 경영 지도	지방 분권형	상환율 90%, 3년 이상 생존율 44%

사례	대출대상	대출 방식	대출금액	대출이자	창업 지원	조직 운영	성과측면
프랑스 ADIE	사회적 취약계층 (농촌여성, 신용불량 자 포함)	개인/ 공동 대출	최대 30,000 프랑까지	6%이자율, 초기 대출비용 3% 추가됨	직업 훈련, 경영 지도	지방 분권형	상환율 90%, 3년 이상 생존율 75%

2. 미소금융사업의 한계점

1) 창업대상자로 한정된 대출상품의 한계

- 2008년도 현재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의 비중은 25.3%로 미국 (7.1%), 일본(9.7%), 프랑스(10.2%) 등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편임. 2009년 2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5만 8,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만 6,000명이나 감소함. 이는 자영업자들 간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한국일보 2009.3.23 일자)됨. 따라서 탈 빈곤을 위해서 창업에 집중한 대출 사업이 과연 효과적이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함.

2) 포괄적 금융시스템으로서의 기능 부재

- 기업, 금융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재단의 지점은 소액금융사업이 단지 대출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금융시스템으로서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직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포괄적 금융지원 시스템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그러나 현재 대출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대출 자격 때문에 대출 신청자에 비해서 수혜자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3) 다양한 빈곤계층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흡

- 다양한 계층의 빈곤 그룹(장애인, 여성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특화된 마이크로크레딧 상품 개발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즉 탈 빈곤의 전략이 곧 창업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제3절 빈곤의 여성화 실태

1.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원인

- 1990년대 이후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의 증가와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여성가장 가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빈곤의 여성화가 보다 강력하고 심각하게 확산되어 있는 현실(송다영, 김유나, 2008).
- 빈곤의 여성화의 구체적인 원인은 ①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②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및 차별 임금, 자녀 양육 및 가사 책임으로 인한 이중 제약, ③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사회보장에서의 불평등한 지위 등에 의해서 구조화됨(김영란, 1997; 박영란, 강철희, 1999; 석재은, 2004; 류정순 2005; Pearce, 1987).

2. 빈곤여성가장의 실태

1)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 빈곤한 여성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 활동 실태와 관련됨. 통계청 (2005)이 발표한 여성 가구주 경제활동 추이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경제활동 참여 인원이 3,175천명에서 4,042천명으로 약 27.3%가 증가했고, 여성 가구주도 2,113천명에서 2,623 천명으로 약 24% 증가, 실질적인 참여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직, 청소 용역부 등과 같이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숙련의 단순직에 종사, 정규 직은 10%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실정(송다영, 성정현 2006).

2) 주거비 및 생계비 대출

- 빈곤을 지속시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주거문제임. 여성가장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전세, 무상주택, 보증부 월세, 월세 등 취약한 주거상황에 놓여 있음. 즉, 불안정한 주거 보유로 인한 높은 주거비 지출이 빈곤의 원인이 됨(송다영, 김유나 2008; 송다영, 성정현, 2005).
- 빈곤 여성가장의 소비지출실태를 살펴보면, 지출 항목 중 주거비 비율은 다른 형태 가구에 비해 2~3배 높고, 또 주거비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송다영, 김유나 2008). 최근의 경제 불안과 고물가로 인해 식료품비와 조세 공과비에 대한 부담 또한 큰 실정(신희정, 2008).

3) 서울시 빈곤여성 실태

- 서울시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알아본 결과, 4인 가구 평균소득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114만원~169만원 이하와 170만원 이상은 각각 13.0%, 19.8%로 약 32.8%정도이며, 약 67.2%는 평균소득의 중위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4인 가구의 절대빈곤선인 113만원 이하임. 근로빈곤계층이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실은 절대 빈곤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 참조).

표 1-5 서울/서울 외 지역의 근로빈곤층 여성가장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비교

(자료: 송다영 외, 2007)

(단위 : 가구, %)

지 역	없다	50만원 이하	51~67 만원이하	68~91 만원이하	92~113 만원이하	114~160 만원이하	170~190 만원이하	200만원 이상	전 체
서울	14 (7.3)	17 (8.9)	30 (15.6)	44 (22.9)	24 (12.5)	25 (13.0)	2 (1.0)	36 (18.8)	192 (100.0)
비 서울	9 (1.1)	43 (5.4)	190 (24.0)	182 (23.0)	120 (15.1)	198 (25.0)	28 (3.5)	23 (2.9)	793 (100.0)

($\chi^2 = 111.340$, $p < 0.001$)

- 생계비가 부족할 때 충당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친지 등의 사적 관계망이 41.1%로 매우 높아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및 생계보조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과 같은 부채활용도 42.1%에 이르러 근로빈곤층의 생계 문제로 부채부담이 매우 크고 신용카드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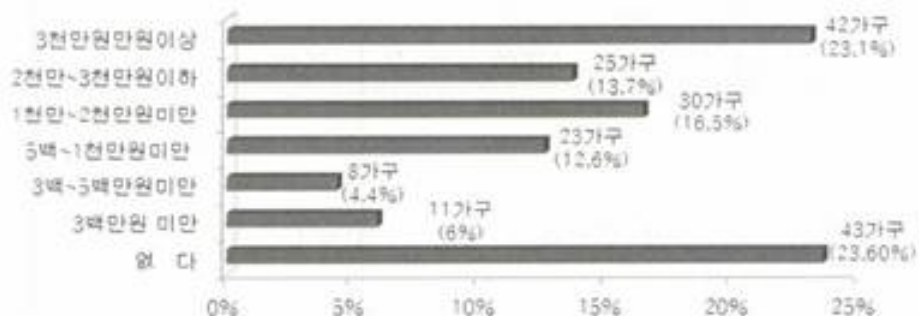


(자료 : 송다영 외, 2007)

■ 그림 1-4 ■ 서울지역의 근로빈곤층 여성가장가구 생활비 부족 시 충당방법

- 부채상황을 보면, 부채가 있는 응답자 76.4% 중 가장 많은 비율은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23.1%에 이르며, 그 다음 1천만~2천만원 미만(16.5%), 2천만~3천만원 미만(13.7%)의 순으로 나타남. 부채가 없는 경우가 23.6%에 이르는 하나, 70%이상이 부채를 갖고 있어 지출이 소득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부채상황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그림 1-5 참조).



(자료: 송다영 외, 2007)

■ 그림 1-5 ■ 서울 지역의 근로빈곤층 여성가장가구 부채액

- 큰 부채를 갖게 된 이유를 보면 주거비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31.0%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사업실패와 자녀교육 및 생활비부담으로 인한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중 사업실패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로써 이들의 소득에 대한 지원 혹은 다양한 형태의 소액금융 대출지원이 절실함(표 1-6 참조).

표 1-6 서울/서울외 지역의 근로빈곤층 여성가장가구 부채 발생요인 비교

(자료: 송다영 외, 2007)

(단위: 가구, %)

지 역	주거비 마련	자녀 교육비	가족 의료비	생활비	사업실패	기 타	전 체
서울	48 (31.0)	15 (9.7)	7 (4.5)	27 (17.4)	40 (25.8)	18 (11.6)	155 (100.0)
비 서울	126 (20.0)	125 (19.8)	42 (6.7)	113 (17.9)	175 (27.8)	49 (7.8)	630 (100.0)

($\chi^2 = 17.217$, $p < 0.01$)

제4절 여성고객중심 마이크로크레딧 국내외 현황

1.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 사례

-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농촌 빈민층을 지원했던 그라민뱅크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빈민층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싼 이자로 급전을 빌려줌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음. 특히 가난한 농촌 여성들을 주요한 수혜 대상으로 함.
- 1980년 초 대출자의 39%가 여성이었던데 비해 1998년 말에는 여성비율이 97%에 이를 정도인데, 이는 이 프로젝트가 빈곤여성들에게 개방적임을 증명하는 것. 이와 같이 신용과 담보가 부실한 여성들에게 대출을 허용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 개발 즉, 생활 수준의 개선, 빈곤제거, 불평등의 감소 등과 같은 목적에 대한 접근도 여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믿음

과 여성이 기존 은행권에서 차별을 당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 여성을 돕는 것이 결국 아동을 돕는 것이라는 기본 관점을 견지했기 때문(Crouwdhury, 2000).

- 마이크로 크레딧의 빈곤 감소의 효과에 대해서 Hoque(2004)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이용한 이후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 대출의 54.7%만이 소규모의 상업이나 농사일 등의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쓰여 졌고, 나머지 45.3%는 결혼비용, 지참금, 장례비, 의료비, 주거비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목적에 쓰여지기도 하는 등 유연하게 사용 가능함.

2. 나이지리아 “소액서민금융사업” 사례

- Lzugbara(2004:72~82)는 나이지리아에서 소액금융사업이 여성의 월 소득 향상과 경제적 독립,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가정도 늘어났고, 여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도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 소액금융사업이 여성의 빈곤완화와 임파워먼트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로서 많은 개발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가난한 인구 집단을 대표하고 있으며 여성가장가구는 남성가장가구에 비해 더 빈곤해지고 있고 따라서 즉각적인 경제적 욕구와 주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성과 관련한 질병이나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제시함.

3. 한국여성재단 “긴급지원 캐쉬SOS사업” 사례

- 2008년부터 한국여성재단은 창업 이외의 생계비와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출을 지원함.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은 일인당 500만원의 대출한도 범위에서 본인 및 자녀학비(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포함), 의료비, 주거비, 창업비, 기타 등을 위한 대출을 수행함. 대출 조건은 연이율 2%이며, 상환조건은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이후 최대 3년까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함.

- 대출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정서적 교육프로그램과 행사 및 자조모임에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지, 빈곤의 원인 이해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의 측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음.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융통성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한계가 있어 많은 대출 대상자가 참여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음(성정현, 김지혜 2009: 198).

제5절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1.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정책방향

1) 성 인지적관점의 소액금융사업 추진

-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소액대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안적 금융이라 정의(Schreiner & Morduch 2002)할 때,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빈곤층의 한 그룹인 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탈 빈곤 정책 목표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성인지적 관점에서 소액금융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빈곤여성들의 관점에서 탈 빈곤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숙제가 무엇인지에 기초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임. 금융소의 계층인 빈곤 여성가장들에게 탈 빈곤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주거안정” 32.8%, “생계비 지원” 27.7%, “일자리 제공” 26.1%로 나타남. 빈곤 여성의 필요와 욕구에 근거한 여성을 위한 제도권 소액금융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상품개발이 요구됨.

2) 성 인지적관점의 포괄적 금융지원시스템 개발

- 빈곤여성들은 빈곤 남성들에 비해 저학력이며 미숙련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 즉, 빈곤 여성들에게 창업만을 위한 소액금융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재 빈곤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에 대한 개방성이 요구됨.
- 여성을 위한 창업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소액금융재단은 “종합여성창업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창업 컨설팅, 직업·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금융지원 시스템 수립”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써 서울여성소액금융재단(가칭) 설립을 제안함.

2. 서울여성소액금융재단 설립 방안

1) 설립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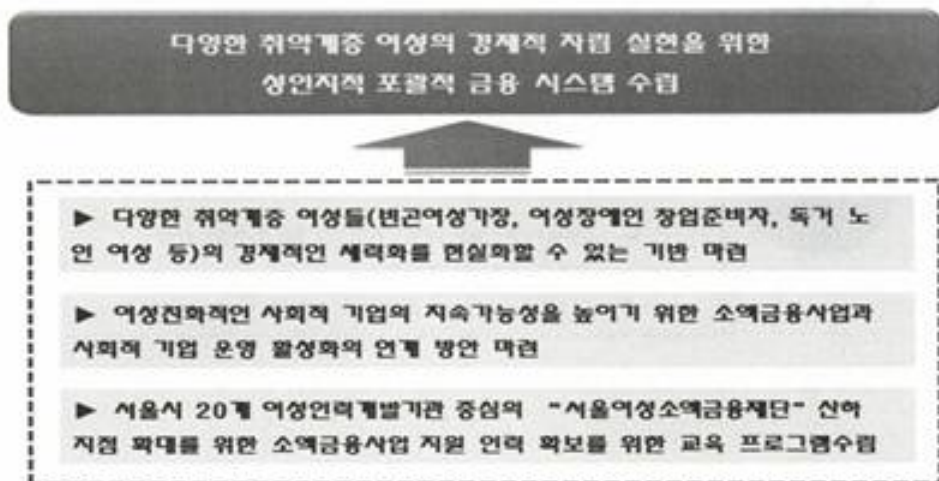


그림 | -6 | 서울여성소액금융재단 설립 목표

2)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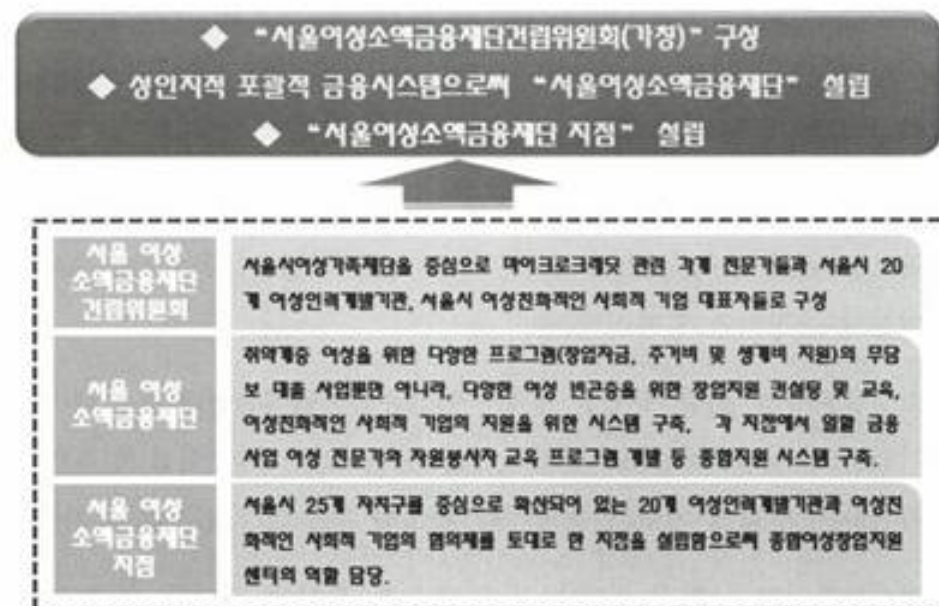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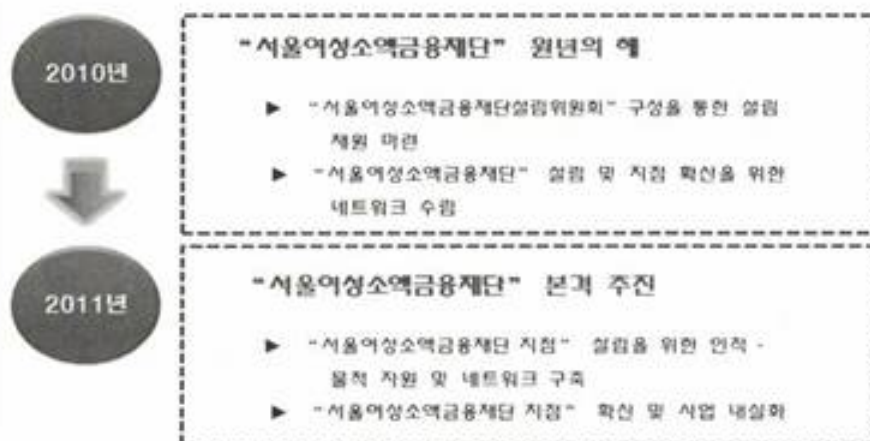


그림 | -7 | 서울여성소액금융재단 추진 전략

3) 추진시기 및 단계별 로드맵



【그림 1-8】 서울여성소액금융재단 추진시기 및 단계별 로드맵

제6절 소결

성인지적 포괄적 금융지원시스템 수립을 통한 기대 효과

- 특화된 빈곤 여성 그룹에 대한 맞춤형 소액 금융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탈 빈곤에 구체적으로 기여.
- 성인지적 포괄적 금융지원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시스템 운영, 금융 전문가 발굴 등의 사업수행을 통한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소액금융사업 지점 설립을 통한 “여성종합창업지원센터”의 예비 사회적 기업의 운영 자금 확보 용이. 이를 통한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활성화 등으로 자립자활에 기여.
- 여성친화적인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Patient Fund의 기반 확보를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기여.

〈참고문헌〉

- 노대명, 정영순 외(2003),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각국의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현(2006), "포괄적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한국형 소액금융의 과제", 2006년 송년 대안금융 포럼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확대발전 방안" 자료집, 2006년 12월 1일
- 성정현, 김지혜(2009), "빈곤여성가장 대상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의 효과: 생활자금을 지원한 한국여성재단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의 사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 21, pp173~201.
- 송다영, 김유나(2008),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 빈곤 정책", 한국가족복지학, Vol.22.
- 이성수(2006), "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 조합'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도시과 빈곤』, 통권 80호
- Robert Rugimbana and Anita Spring(2009), "Marketing Micro-finance to Women: Integrating global with local",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4: 149~154



II

서울시 여성정치의 현황과 지역정치정착을 위한 과제

문은영(정책개발실 연구위원)
김보람(정책개발실 위촉연구원)

II 서울시 여성정치의 현황과 지역정치정착을 위한 과제

제1절 배경과 목적

- 최근 지역정치의 키워드가 삶의 질 향상, 복지, 환경 등 생활정치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정치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정치적 활약상은 지역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즉 지역은 생활정치의 현장이고,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자원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음.
- 지방자치제 실시와 정당법개정 및 비례대표여성할당제 등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여성의 정책결정과 정치참여가 확대되어 왔음. 일정부분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담보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제 양적측면과 더불어 질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그 제약과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이슈분석에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서울시 여성의 정치적/행정적 대표성(시의회의원, 공무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 진단해보고 지역정치정착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제2절 서울시 여성정치의 현황

1. 서울시 광역/기초 여성의원 현황

- 광역/기초 여성의원은 2006년(민선4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등으로 처음으로 두 자리를 넘는 성과를 거둬,
-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광역의회 여성비율은 전국평균 12.0%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은 12.3%로 평균 수치를 약간 웃돌고 있음.
 -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서울 12.3%, 부산 12.8%, 울산 21.1%, 인천, 경북 9.1% 등 전국평균 12.0%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 2006년 서울시 기초의원 비율은 19.6%로 전국대비 15.1%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남.¹⁾
- 표 II-2의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기초의회여성의원 비율은 5.7%에서 2006년 19.6%로 급증함.
 - 이는 정당법개정과 함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구 여성공천할당 권고 등의 결과로 전국수준에서의 증가와 유사함(표 II-1 참조, 2002년 2.2%에서 2006년 15.1%).

1) 표 II-1 | 역대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의 여성의원 당선율

		1995	1998	2002	2006
광역의원	전체	970	690	682	733
	여성	13	14	14	32
	여성(비율)	(5.7)	(5.9)	(9.2)	(12.1)
기초의원	전체	4,541	3,489	3,485	2,888
	여성	72	56	77	110
	여성(비율)	(1.6)	(1.6)	(2.2)	(15.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6)

표 II-2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명, %)

		1995(민선1기)	1998(민선2기)	2002(민선3기)	2006(민선4기)
광역의원	전체	147	104	102	106 [10]
	여성	14	11	8	13 [6]
	(비율)	(9.5)	(10.6)	(7.8)	(12.3)
기초의원	전체	806	520	513	419 [53]
	여성	35	26	29	82 [49]
	(비율)	(4.3)	(5.0)	(5.7)	(19.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창연 외(2009)서울시 성인지표 측정 및 개선방안연구 재구성

* 민선4기 는 비례대표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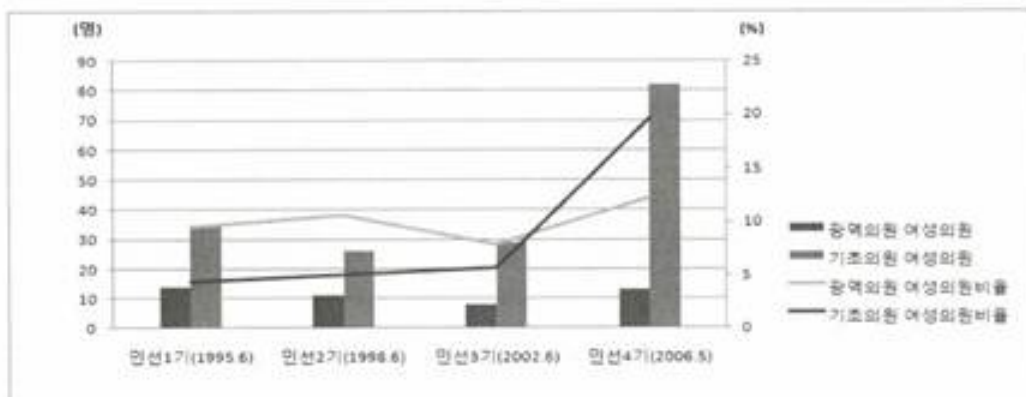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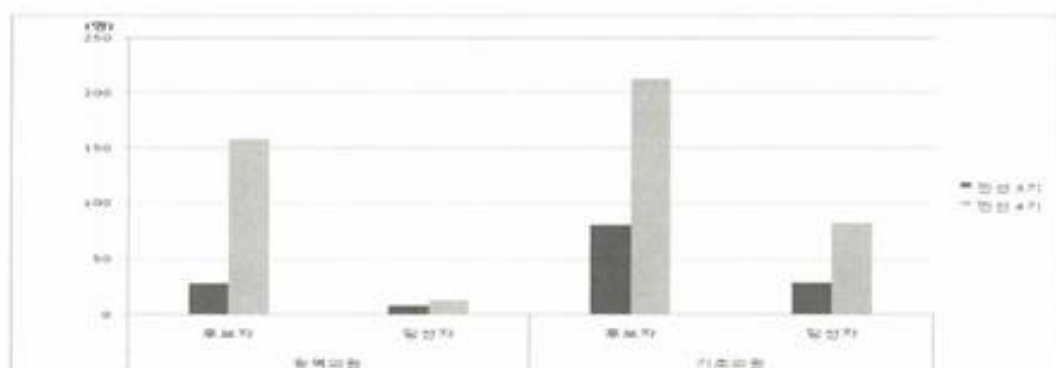
그림 II-1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표 II-3 서울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여성후보자와 당선자 현황을 살펴 보면, 민선3기에서 민선4기 당선자수와 비례하여 후보자수도 팔목할만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민선3기 10.8%에서 민선4기 30.1% 증가했으며, 기초의원후보자는 6.1%에서 16.9%로 증가했음.

표 II-3 서울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여성 후보자, 당선자 현황

(단위: 명, %)

	민선3기		민선4기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광역의원	28(10.8)	8(7.8)	158(30.1)	13(12.3)
기초의원	80(6.1)	29(5.7)	213(16.9)	82(19.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2010년 2월

그림 II-2 서울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여성 후보자, 당선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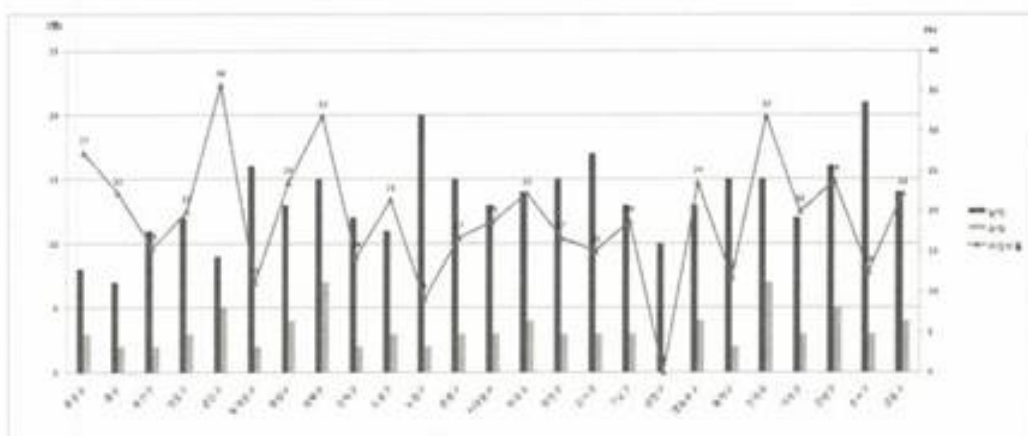
- 민선4기 서울시 기초의회 전체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9.6%이며 여성의원의 대부분은 비례대표에서 선출된 경우가 많았음.
-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광진구(35.7%), 성북구(31.8%), 관악구(31.8%)이고 여성의원이 없는 구는 금천구였음.
- 여성의원이 있는 구 중에서 용산구, 동대문구, 노원구, 동작구, 송파구의 경우, 지역구 여성의원은 전무하며, 여성의원이 모두 비례의원으로 구성 되어있음.
-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의원 82명중 49명이 비례의원으로 전체여성의원의 59.7%를 차지함. 따라서 비례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비율은 9.0%에 불과함.

표 II-4 민선4기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

	총의원수		여성의원총수		여성의원 비율
계	419	(53)	82	(49)	19.6
종로구	11	(2)	3	(2)	27.3
중구	9	(1)	2	(1)	22.2
용산구	13	(2)	2	(2)	15.4
성동구	15	(2)	3	(2)	20.0
광진구	14	(2)	5	(2)	35.7
동대문구	18	(2)	2	(2)	11.1
종랑구	17	(2)	4	(2)	23.5
성북구	22	(3)	7	(3)	31.8
강북구	14	(2)	2	(1)	14.3
도봉구	14	(2)	3	(2)	21.4
노원구	22	(3)	2	(2)	9.1
은평구	18	(2)	3	(2)	16.7
서대문구	16	(2)	3	(2)	18.8
마포구	18	(2)	4	(2)	22.2
양천구	18	(2)	3	(2)	16.7
강서구	20	(2)	3	(2)	15.0
구로구	16	(2)	3	(2)	18.8
금천구	10	(1)	0	(0)	0.0
영등포구	17	(2)	4	(2)	23.5
동작구	17	(2)	2	(2)	11.8
관악구	22	(3)	7	(3)	31.8
서초구	15	(2)	3	(2)	20.0
강남구	21	(3)	5	(2)	23.8
송파구	24	(3)	3	(3)	12.5
강동구	18	(2)	4	(2)	22.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6),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명부

※ ()는 비례의원수



■ 그림 II-3 ■ 서울시 기초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

2. 서울시의회여성의원 활동현황

- 시의회에서의 여성의원인 증가하면서 의정활동에서의 여성의 활약상도 증가 추세에 있음.
- 표 II-5의 민선3기와 민선4기 여성의원인 의정활동 중 조례안 발의현황을 살펴보면, 민선3기에는 2건에 불과했고, 민선4기에 33건의 조례안을 처리함.

■ 표 II-5 ■ 민선3기,4기 서울시의원 조례안 처리현황

(단위: 명, %)

구분		기간	성 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조 례 안	의 원	민선	여	2(8.7)			1(33.3)		1(11.1)		
		3	남	21(91.3)	21(100)	11(100)	2(66.7)		8(88.9)		
		민선	여	33(13.4)	24(13.5)	21(14.3)			3(10.3)		9(13.2)
		4	남	213(86.6)	154(86.5)	126(85.7)			26(89.7)	2(100)	59(86.8)

자료: 서울시의회 의안현황 자료를 재구성, 서울시의회(www.smc.seoul.kr), 2010.2.

- 표 II-6의 여성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2.5건으로 남성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2.3건과 비교해 약간 높음. 여성의원 의원 비율이 남성의원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원 의원 의회 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표 II-6 】 민선4기 서울시의회 조례안 성별 발의 건수(2006~2009년)

(단위: 명, 건)

구분	여성	남성	계
의원수	13	93	106
발의법안	33	213	246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수	2.5	2.3	2.3

자료: 서울시의회 의안현황 자료를 재구성, 서울시의회(www.smc.seoul.kr), 2010년 2월(2009년 기준)

- 민선4기 서울시 여성의원 의원 조례안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1건, 2007년 5건, 2008년 13건, 2009년 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조례안 처리 건수(처리율)의 경우, 2006년 0건(0%), 2007년 4건(80%), 2008년 9건(69%), 2009년 11건(78%)으로 처리율이 증가하였음.

【 표 II-7 】 연도별(민선4기) 조례안 처리 현황

(단위: 명, %)

구분	년도	성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조 례 안 의 원	2006	여	1(3.0)							1(11.1)
		남	12(5.6)	8(5.2)	6(4.8)			2(7.7)		4(6.7)
	2007	여	5(15.2)	4(16.7)	3(14.3)			1(33.3)		1(11.1)
		남	41(19.2)	23(14.9)	17(13.5)			5(19.2)	1(50.0)	18(30.5)
	2008	여	13(39.4)	9(37.5)	8(38.1)			1(33.3)		4(44.5)
		남	54(25.4)	46(29.9)	38(30.2)			7(26.9)	1(50.0)	8(13.6)
	2009	여	14(42.4)	11(45.8)	10(47.6)			1(33.3)		3(33.3)
		남	106(49.8)	77(50.0)	65(51.5)			12(46.2)		29(49.2)

구분	년도	성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계		여	33(100)	24(100)	21(100)			3(100)		9(100)
		남	213(100)	154(100)	126(100)			26(100)	2(100)	59(100)

자료: 서울시의회 의안현황 자료를 재구성, 서울시의회(www.smc.seoul.kr), 2010.2.

- 서울시의회 위원회 소속 여성의원 수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남. 각 위원회 중 여성의원 발의 비율이 높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29%, 교육문화위원회 22%로 발의 비율이 높았으나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발의 안건은 없었고 건설위원회 9%, 도시관리위원회 2%로 발의 비율이 낮았음.

표 II-8 서울시의회 위원회별 여성의원 소속 현황(7대)

위원회 명	소속의원 수	여성의원수 (비율)	발의건수 (여성/전체)	여성의원발의비율 (%)
운영위원회	14	0(0)	4/20	20
행정자치위원회	11	1(9)	0/24	0
재정경제위원회	13	3(23)	5/38	13
환경수자원위원회	12	2(17)	4/30	13
교육문화위원회	15	2(13)	4/18	22
보건복지위원회	11	2(18)	8/27	29
건설위원회	12	1(8)	1/11	9
도시관리위원회	12	2(17)	1/38	2
교통위원회	12	1(8)	5/33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3	4(12)		

자료: 서울시의회(www.smc.seoul.kr), 2010년 2월

- 표 II-9의 서울시 여성의원 발의된 발의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에서의 발의건수 8건으로 총 발의건수 27건 중 29.6%에 해당되며,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9)과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이 눈길을 끄.

- 또한 여성의원들은 교육문화분야에도 관심을 나타냈으며, “서울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재정경제 분야에서도 활약을 보임.

표 II-9 | 민선 4기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발의 조례안 내용

위원회 명	발의 조례안 내용
운영	서울시의회의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조례안(2006)/서울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7)/시의회입법·법률 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8)/서울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
보건복지	서울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8)/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전부개정조례안(2008)/서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2008)/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2008)/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9)/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2009)/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9)/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9)
환경수자원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서울시 에너지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
도시관리	서울시 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
재정경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관리기본조례안(2007)/서울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조례안(2008)/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8)/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2009)/서울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
교육문화	서울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2007)/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2008)/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서울시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9)
건설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8)
교통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2007)/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08)/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08)/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09)

자료: 서울시의회(www.smc.seoul.kr), 2010년 2월.

3. 서울시 여성공무원 현황

- 행정적 대표성을 상징하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계획 등에 힘있어 6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주요부서에서의 여성비율도 확대되어옴. 그럼에도, 고위직책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은 저조하며, 선거에 의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의 여성 진출도 현재까지는 희박한 상황임.
- 표 II-10의 2009년도 전체공무원중 전직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34.2%이며,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 10.6%에서 2009년 11.9%로 증가됨.

표 II-10 서울시 성별 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여성	12,834(31.4)	15,058(37.1)	14,121(34.2)
	남성	27,985(68.6)	25,481(62.9)	27,187(65.8)
5급	여성	297(10.6)	312(10.9)	340(11.9)
	남성	2,513(89.4)	2,544(89.1)	2,509(88.1)

자료: 서울시 인사과 자료, 2010년 2월

- 표 II-11의 직급별 여성공무원현황을 보면, 여성공무원은 주로 5급 이하 직급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9급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5급, 4급 순으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낮아지는 유리천장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서울시 1급 공무원의 경우, 8명중 1명이 여성으로 12.5%를 나타내고 있음. 시장과 부시장급에 해당되는 정무직의 경우는 여성이 전무한 상황임.

표 II-11 2009년 서울시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및 비율

	구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본청	전체	10,367	4	8	18	36	208	955	2,855	3,182	2,821	277	3
	여성	2,643	0	1	0	3	17	129	626	860	909	98	0
	비율	(25.5)	(0.0)	(12.5)	(0.0)	(8.3)	(8.2)	(13.5)	(21.9)	(27.0)	(32.2)	(35.4)	(0.0)
자치구 평균	전체	1238	1	0	0	1	7	56	207	446	329	184	6
	여성	459	0.04	0	0	0	1	7	39	174	141	96	1
	비율	(37.1)	(4.3)	(0.0)	(0.0)	(0.0)	(12.1)	(12.0)	(19.1)	(38.9)	(42.8)	(52.3)	(21.5)

자료: 서울시 인사과 자료, 2010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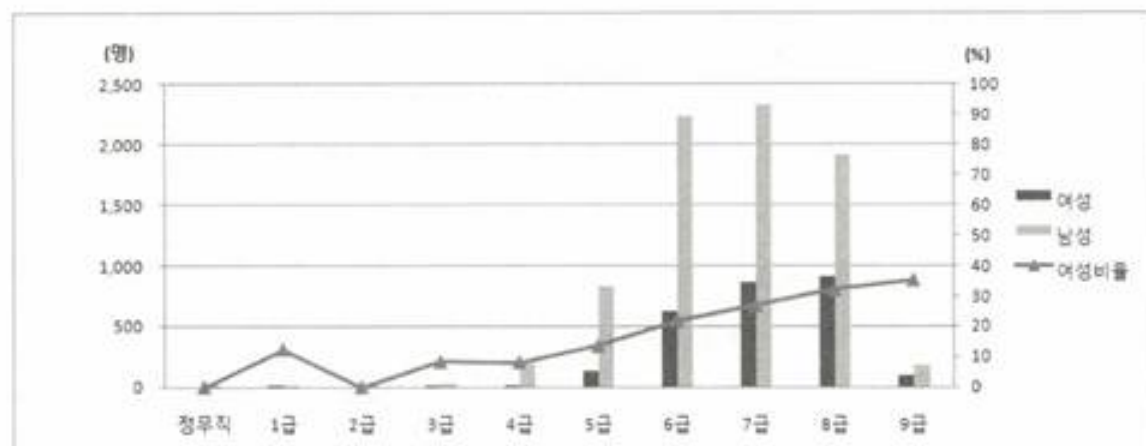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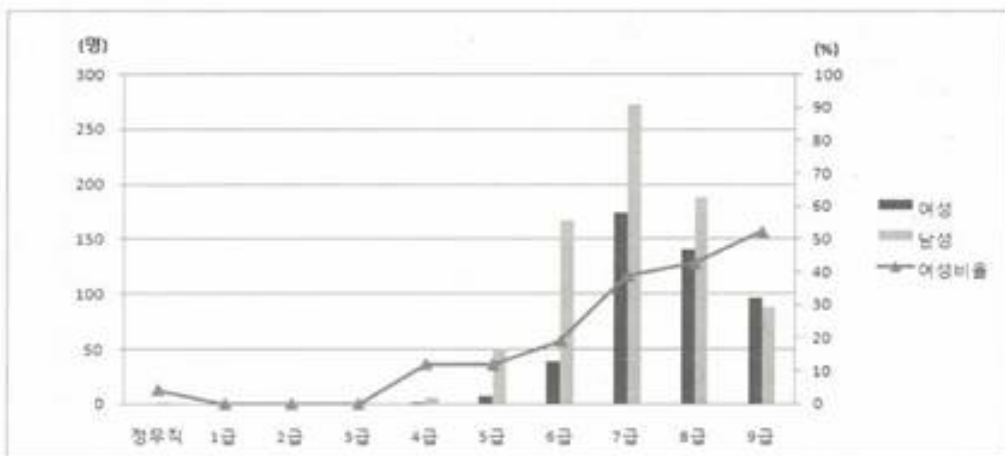


그림 II-4 2009년 서울시 본청 직급별 공무원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급별 평균여성공무원 비율은 5급 이하 직책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지며, 특히 9급 공무원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음.
- 6급이상 직급에서도 5급, 4급 순으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낮아지고 1급, 2급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관장에 해당되는 정무직의 경우 25개구에서 송파구만이 여성구청장임.



【그림 II-5】 200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급별 평균 공무원 현황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5년 24.7%에서 2009년 34.2%로 증가하고 있음. 인사부서의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2009년에는 46.2%로 절반정도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부서 중 예산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다른 주요부서들과 비교하여 보면, 2005년에 비해 2009년 현재 20.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가장 낮은 여성공무원 증가율을 보인 부서는 기획부서로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3.2% 증가하였음.
-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현황은 전체직급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여성공무원의 하위직급 분포현상을 고려할 때, 주요부서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남음.

표 II-12 | 년도별 서울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부서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전체	182	187	202	155	152
	여성	45	55	80	56	52
	비율	(24.7)	(29.4)	(39.6)	(36.1)	(34.2)
기획	전체	31	32	31	30	31
	여성	8	9	9	9	9
	비율	(25.8)	(28.1)	(29.0)	(30.0)	(29.0)
예산	전체	37	40	36	33	33
	여성	7	11	13	14	13
	비율	(18.9)	(27.5)	(36.1)	(42.4)	(39.4)
인사	전체	53	51	82	43	39
	여성	21	23	45	20	18
	비율	(39.6)	(45.1)	(54.9)	(46.5)	(46.2)
감사	전체	61	64	53	49	49
	여성	9	12	13	13	12
	비율	(14.8)	(18.8)	(24.5)	(26.5)	(24.5)

자료: 서울시 인사과 자료, 2010년 2월

기준: 매년말일자, 자치구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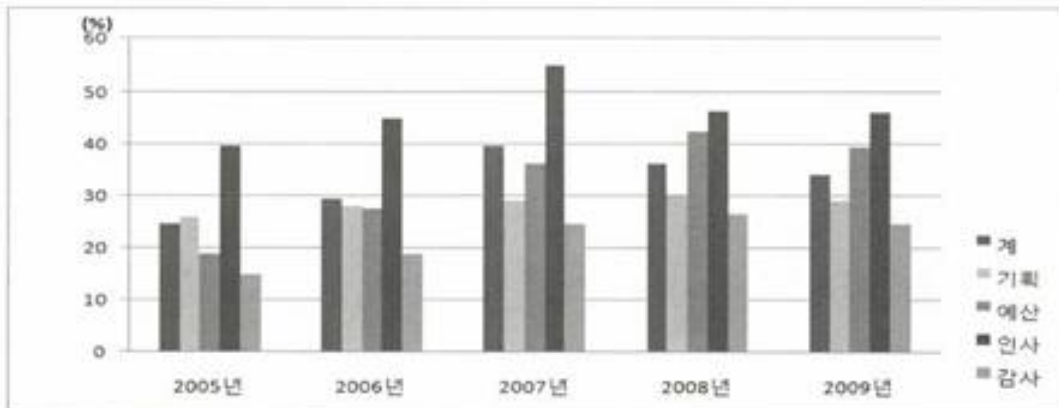


그림 II-6 | 년도별 서울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제3절 지역정치와 여성의 참여

- 본 이슈분석에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여성정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함.
- 서울시 여성정치의 현황을 서울시 의회의원, 공무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와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일정부분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책결정직에의 참여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민선4기 서울시 의회여성의원의 수적증가와 의정활동 증가, 행정부문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증가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일정부분 양적 증가와 여성의정활동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정치의 현주소는 제약과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여성 진출은 현재까지 요원한 상황이었음(광역단체장은 전무, 기초단체장은 민선4기에 25개구 중 1개구만 해당됨). 또한 시의원의 경우 전체여성의원중 비례의원을 제외한 지역구를 통한 여성의 진출은 시의회의 경우 7.2%, 기초의회는 9.0%로 한자리 수에 불과함.
-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이익과 요구가 간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의 대표성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²⁾, 여성정치의 질적수준 향상은 기본적으로 양적확대가 전제되어야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치

2)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행정적 대표성 현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참여부문에서는 남녀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9국제의회연맹(IPU)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여성의원평균비율은 18.6%인데, 현대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3.9% 수준으로 세계 86위임.

- 또한 UNDP(2009년)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26위인데 비해 여성권한 척도 순위는 61위임. 세계경제포럼(WEF, 2009)의 성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지수는 115에 속하며, 정치부분은 104위로 나타남.

에서의 여성단체장과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와 확대가 요구됨.

- 지역정치에서는 여성친화적이며 생활밀착형 이슈가 정치적 의제화되고 있어, 지역내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곧 지역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특히 여성의 자원과 역량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할 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음. 따라서 2010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참고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 인사과 제공자료(2010년 2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제공자료 www.smc.seoul.kr, 2010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공자료 www.nec.go.kr, 2010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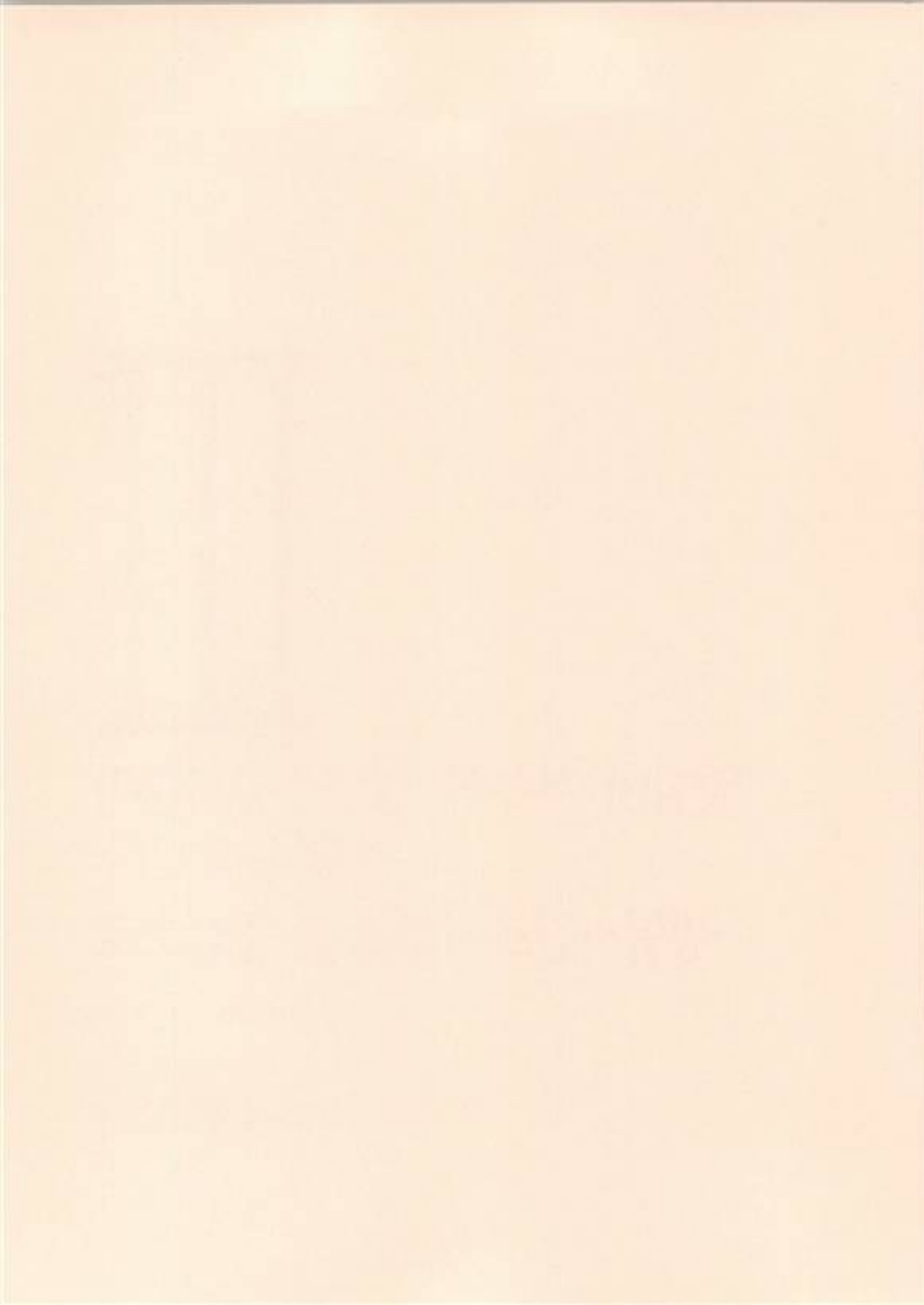
김창연 외(2009), 『서울시 성인지지도(GSI) 측정 및 개선방안연구』



III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손문금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III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는 맞벌이가족은 증가하는 반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인 홀벌이가족은 감소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주부부 중 '남편과 부인이 모두 일하였다'고 응답한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1995년 33.4%에서 2005년 35.2%로, 동기간동안 동부의 경우에는 26.7%에서 31.0%, 서울시의 경우에는 25.9%에서 30.1%로 증가하였다. 반면 가구주부부 중 '남편만 일하였다'고 응답한 남편홀벌이가구는 동기간동안 전국적으로는 55.6%에서 46.3%로, 동부의 경우 61.9%에서 49.8%로, 서울시의 경우 62.5%에서 49.2%로 감소하였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에 맞벌이가족이 어떻게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통합하고 직장내에서의 역할을 수행·갈등·조정하고 있는지 분석·이해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이수 외, 2009; 홍승아 외, 2009; 마경희, 2008; 안정옥, 2007).

본 분석은 맞벌이부부가 직장내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이나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시장노동을 부부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맞벌이부부가 가족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즉 한국의 맞벌이 부부는 남편홀벌이부부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시간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함께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해마다 우리사회에서 이혼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1980년 23,662건에서 2009년 123,999건, 서울시 2008년 7,935건에서 23,920건, 인구동태통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1998년 58.8%에서 2008년

65.7%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이는 혼인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부는 우애적이고 동반자적인 기대를 가지고 만족스러운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우애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러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식비율이 늘어나는 만큼(김현주, 2008) 그들은 부부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관심이다.

다른 한편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 행동에 소요하고 나면 또 다른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제약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시장노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맞벌이부부에게 가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분석은 맞벌이부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시장노동시간이 남편 홀벌이부부와 비교하여 어떻게 그들의 일상생활시간과 부부가 함께하는 공유시간 및 공유행동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제2절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글의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이다. 일상생활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경험과 문제들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 중의 하나가 바로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며(Robinson, 1997),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생활시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전국의 8,090가구에서 10세 이상의 가구원 40,526명의 시간일기¹⁾가 조사되었다. 이 중 20대에서 50대의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가구는 4,462가구, 8,924명, 남편 홀벌이가구는 3,464가구, 6,928명이 조사되었다. 이들은 모두 부부가 같은 요일 및 날짜에 조사되어 서로의 하루 공유시간과 공유행동을 비교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시간, 공유시간 및 공유행동의 의미

하루의 일상생활시간은 다섯 가지의 범주들-유급노동(paid work), 무급노동(unpaid work), 개인유지(personal care), 자유시간(free time), 이동(travel)-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유급노동시간은 시장에서 수입을 만드는 활동들에 할애된 시간이다. 무급노동시간은 음식준비, 청소, 세탁, 집관리, 가정경영, 아이돌보기 및 그 외 가족돌보기, 쇼핑 등을 포함한다. 개인유지 시간은 수면, 식사, 씻기, 외모관리, 옷입기, 의료적 치료받기로 구성된다. 자유시간은 나머지 범주이며, 이동시간은 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걸어서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 시간이다.²⁾ 이러한 시간 중 자유시간에는 여가로 명백히 수행된 활동들에 할애한 시간과 종교활동이나 시민활동과 같이 임의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할애한 시간 둘 다를 포함한다(Robinson & Godbey, 1997).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간구분을 따르도록 하며, 자유시간을 여가시간의 시간사용 범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한 사람의 의미는 '주행동을 아는 누군가와 함께 한 시간량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단순히 동일한 공간에 부부가 함께 있었다고 하여 공유시간과 행동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한 행동의 의미는 함께한 주행동을 의미하며, 동시행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행동(primary activity, main

1) 이하에서는 시간일기의 개수를 조사대상 인원 수(명)로 표기하고자 한다.

2) 이동시간은 연구에 따라 시장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자유시간에 포함되어 분석되기도 한다.

activity)이란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주로 행한 행동이라고 응답자가 판단한 행동이다.

그런데 200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행동을 함께한 사람, 공유행동을 함께한 사람의 의미에는 병행활동개념이 제외되었다. 공유활동에는 게임, 여행, 산책 등의 활동들처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공유활동(joint activity)과 음악감상 활동처럼 활동만이 함께 이루어지는 병행활동(parallel activity)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Othner, 1975), 통계청의 조사에서 '책임을 함께하였다는 의미'에는 병행활동이 제외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부부 두 사람이 동일한 활동에 책임을 함께하면서 참여한 행동과 시간으로 집안 또는 집밖에서 수행된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개인이 그 행동을 함께 한 행동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보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아이와 놀아주기'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부인과 함께 공유하여 책임진 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부인은 남편과 함께 공유하면서 책임진 행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함께 보낸 공유 시간량은 상이할 수 있다.

배우자와 공유한 공유행동의 시간유형은 가사노동, 가족돌보기, 교제 및 여가, 미디어이용, 식사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이 시간들은 부부가 그들의 시장노동 이외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고 어떤 행동을 함께 하는지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간들을 재분류한 것이다.³⁾ 즉 본 분석에서는 부부가 시장노동시간 이외에 이러한 각 시간유형별 행동에서 하루평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계산했다.

3) 가족공유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휴식, 의료활동은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면활동은 성격상 공유의 의미가 매우 적다.

제3절 맞벌이부부의 일상생활시간

맞벌이부부는 그들의 시장노동과 가족역할을 균형적으로 수행하는데 남편홀벌이부부에게는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남편홀벌이부부는 맞벌이부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 오직 한사람의 노동스케줄의 요구에 의해서만 시간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맞벌이부부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시장노동시간을 가진 부부는 가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는 이송미(1997)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취업여부가 가족의 공유활동시간을 제약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다.⁴⁾ 또한 미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가지고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부부의 총시장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가족돌보기 공유시간, 가사노동 공유시간, 가족과의 식사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ingston & Nock, 1987).

이에 본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인 맞벌이부부와 남편홀벌이부부의 하루생활시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맞벌이부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시장노동시간이 그들의 가족역할 수행 및 여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다음 표 III-1에서 보듯이 남편홀벌이가구의 경우 남성의 하루평균 시장노동시간은 5시간 42분이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6시간 15분으로 성역할 분담이 확실하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맞벌이가구의 경우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이 4시간 46분으로 남성의 전체평균 5시간 53분보다 적지만 무급노동시간은 맞벌이를 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루평균 3시간 27분에 이르고, 남성들은 하루평균 42분에 불과하다. 이에 맞벌이가구의 여성은 시장노동시간과 무급노

4) 이송미의 연구(1997)에서는 전업주부와 전문직·사무직·생산직의 취업주부가정 33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시간일지와 질문지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동시간을 합한 총의무생활시간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하루평균 1시간 38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맞벌이부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의 시장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의무생활시간은 6시간 57분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8시간 47분으로 남성과 1시간 50분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실태는 모든 가구에서 무급노동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고, 보살핌 가족이 있는 경우 여성에게 더욱 많은 부담이 부가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상관없이 성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부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적절한 무급노동분담에 대해 대다수인 83.9%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실제 맞벌이 가족 안에서 가족 일은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 Ⅲ-1 가구형태 및 성별 하루생활시간량

(단위: 시간:분)

구 분	맞벌이부부				남편출벌이부부			
	전체		미취학자녀 있음		전체		미취학자녀 있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시장노동시간	5:53	4:46	5:37	4:05	5:42	0:05	5:45	0:02
무급노동시간	0:42	3:27	1:20	4:42	0:44	6:15	1:11	7:54
가정관리	0:27	2:45	0:31	2:32	0:22	4:11	0:24	3:54
가족보살피기	0:15	0:42	0:49	2:10	0:22	2:04	0:47	4:00
자유시간	4:19	3:16	3:56	2:36	4:22	5:16	3:52	3:53
여가 및 레저	2:13	1:40	2:02	1:18	2:13	2:41	1:58	1:48
미디어이용	2:06	1:35	1:54	1:18	2:09	2:35	1:54	2:05
개인유지시간	10:46	10:34	10:52	10:43	10:52	10:45	10:55	10:44
이동시간	2:05	1:40	2:01	1:37	2:05	1:21	2:03	1:10
기타	0:15	0:17	0:14	0:17	0:14	0:18	0:14	0:18
소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료: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다른 나라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과 한국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을 비교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여성과 남성의 시장노동과 무급노동에서의 성별 격차와 여가시간의 실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 미국 두 나라의 유배우자 상태인 성인의 하루생활시간을 보면 한국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42분에 불과하여 2시간 27분 무급노동을 하는 미국 남성의 1/3이하 수준이다. 남녀 간 시장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의무생활시간이 한국의 전일제 취업남성의 경우 6시간 38분, 전일제 취업여성 8시간 29분으로 그 격차가 1시간 51분인 반면, 미국은 전일제 취업 남성 8시간 34분, 전일제 취업 여성 9시간 3분으로 미국은 남녀 간 격차가 31분 수준이다.

이러한 의무생활시간의 성별 격차는 여가생활시간의 성별 격차로 나타난다. 즉 한국의 경우 전일제 취업 여성은 전일제 취업 남성보다 1시간 14분 정도 더 적은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44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여성은 시장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시간제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의무노동시간은 7시간 21분으로 남성보다 43분이 길고, 전업주부는 6시간 20분으로 전일제 취업남성의 6시간 38분보다 18분 적을 뿐이다.

하지만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하루생활시간의 가장 큰 차이는 가족보살피기 시간이 전업주부의 경우 한국 2시간 5분, 미국 2시간 29분으로 거의 비슷한 반면 전일제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한국 36분 미국 1시간 13분이고, 시간제 취업여성의 경우 한국 59분, 미국 1시간 52분으로 여성이 취업한 경우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취업한 경우 가족을 보살피는 노동은 제3자에게 전가되어 수행되고 있거나 또는 가족에 대한 보살핌이 가족 안에서 부재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표 Ⅲ-2 한국과 미국 유배우자 성인의 하루생활시간

단위: 시간·분

구 분	한국(2009)			미국(2006)				
	전일제 취업여성	시간제 취업여성	전업주부	전일제 취업남성	전일제 취업여성	시간제 취업여성	전업주부	전일제 취업남성
시장노동시간	5:23	2:54	0:05	5:56	5:11	2:44	0:06	6:07
무급노동시간	3:06	4:27	6:15	0:42	3:52	5:16	6:56	2:27
가정관리	2:30	3:28	4:10	0:24	2:39	3:24	4:27	1:37
가족보살피기	0:36	0:59	2:05	0:18	1:13	1:52	2:29	0:50
자유시간	3:01	4:06	5:16	4:15	2:56	3:25	4:11	3:40
TV시청	1:28	1:57	2:35	2:04	1:28	1:40	2:13	1:58
개인유지시간	10:34	10:35	10:45	10:48	9:00	9:05	9:25	8:37
이동시간	1:40	1:42	1:21	2:05	1:23	1:24	1:10	1:28
기 타	0:16	0:17	0:18	0:14	1:38	2:06	2:11	1:40
소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료: 한국-생활시간조사(2009) 원자료 분석, 미국-www.bls.gov/tus

주 1) 한국은 20~50대의 유배우자(맞벌이부부와 남편홀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미국은 유배우자 이면서 미혼자녀를 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행동 생활시간임

2) 전일제 취업은 주당 36시간 이상, 시간제 취업은 주당 1시간~35시간의 노동시간을 가진 취업자임

제4절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 실태

먼저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량을 살펴보면 맞벌이 남편의 경우 총가족공유시간이 116.59분이고, 홀벌이부부의 남편은 134.14분으로 맞벌이부부 남성의 공유시간량이 더 적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인의 경우 114.91분으로 전업주부의 146.65분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여성은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이 남편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보다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부의 가족공유시간량을 미국부부와 비교하여 보면 미국 맞벌이 부부의 남편은 총가족공유시간이 169.7분, 부인 170.3분으로 우리나라 맞벌이부부의 총공유시간과 비교할 때 약 53분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

홀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220.4분, 부인의 경우 236.8분으로 우리나라와 약 90분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Kingston & Nock, 1987).

표 Ⅲ-3 요일별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 실태-남편

구분	N	가족돌보기		가사노동		교제 및 여가		미디어이용		식사 및 간식		총공유시간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맞벌이 남편	평일	2608	1.57	4.52	21.62	56.56	14.63	28.64	25.19	38.61	29.76	73.77	92.45
	토요일	919	2.01	4.57	27.75	60.72	28.07	37.54	35.60	42.44	44.08	137.52	95.87
	일요일	935	2.75	5.78	30.47	63.21	34.75	40.21	37.99	45.78	56.51	162.47	96.47
	전체	4462	1.90	4.80	24.73	58.81	18.74	32.90	30.02	40.90	38.32	116.59	93.99
홀벌이 남편	평일	2051	3.64	8.14	21.17	54.17	19.67	35.48	33.29	46.17	29.32	73.82	107.08
	토요일	717	6.19	11.16	27.64	58.86	37.60	45.75	41.55	48.40	50.30	85.63	163.29
	일요일	696	5.21	11.49	30.99	63.94	36.70	44.97	49.97	54.74	60.96	88.36	183.84
	전체	3464	4.49	9.44	24.48	57.10	22.56	39.52	38.35	48.35	40.02	79.19	134.14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Ⅲ-4 요일별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의 실태-부인

구분	N	가족돌보기		가사노동		교제 및 여가		미디어이용		식사 및 간식		총공유시간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맞벌이 남편	평일	2608	1.52	4.29	16.85	43.33	15.05	28.22	23.14	36.89	36.53	84.05	93.08
	토요일	919	2.40	5.66	21.60	49.40	28.04	38.41	31.90	41.68	52.61	88.68	136.56
	일요일	935	2.82	6.20	24.14	49.09	32.16	37.65	33.24	43.21	62.15	90.48	154.51
	전체	4462	1.98	4.98	19.36	45.79	18.52	32.29	27.06	39.20	45.21	86.35	114.91
홀벌이 남편	평일	2051	3.35	7.56	19.11	45.93	19.92	36.71	31.93	45.54	47.76	90.88	122.07
	토요일	717	6.21	12.86	24.11	49.51	37.88	46.44	41.16	50.77	69.61	96.23	178.97
	일요일	696	4.54	10.49	25.79	50.86	35.92	42.67	45.88	54.02	73.66	96.26	185.79
	전체	3464	4.19	9.24	21.49	47.66	22.80	39.92	36.64	48.33	57.49	93.07	146.65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부부의 가족공유행동에 대한 공유시간량과 참여자비율을 각각의 시간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부부가 함께하는 행동이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는 각기 다른 종류의 행동들은 부부의 감정적 결합정도나 개인들의 반응, 심리적인 반응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 설거지를 하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음악을 함께 듣는 시간은 각기 다르게 부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부부가 가장 적게 함께 하는 행동은 가족보살피기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2%이하,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에는 5%이하만이 함께 공유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돌보기의 공유시간은 적은 시간이지만 맞벌이부부보다는 남편홀벌이부부의 공유시간이 모든 요일에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 공유행동 중 부부가 함께하는 행동은 적은 시간이지만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보살피기 시간으로 나타난다.

가사노동행동의 부부공유시간을 보면 남편들의 경우보다는 부인들이 인식하는 공유시간이 더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유되는 시간이 약간 더 높고 참여율도 남편들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55%정도가, 그리고 휴일에는 60%가 넘게 부인과 함께 가사노동활동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여성들은 45~50% 정도만이 남편과 함께 가사노동활동을 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가사노동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가족공유행동은 대부분 음식준비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부부공유시간이 평일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부부가 교제 및 여가행동을 함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맞벌이부부의 경우 32%,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 39%수준으로 나타나고, 공유시간량도 맞벌이부부의 경우 19분,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 22분 정도에 불과하여 부부가 각자 수행하는 여가 및 레저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함께하는 교제 및 여가행동은 교제활동이 가장 많은 공유행동인 것으

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의 공유시간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참여자비율이 40%정도이고, 홀벌이부부는 48%정도로 나타나는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30분정도, 남편홀벌이 부부의 경우 37분정도의 공유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유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공유행동은 대부분 TV시청 시간이다.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 참여자비율이 가장 많은 행동은 식사시간이다. 즉 맞벌이부부의 경우 80%이상이 남편홀벌이 부인의 경우 90%이상이 하루에 한번이라도 식사를 함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시간도 평일은 36분으로 공유행동 중 가장 많이 함께하는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편과 부인이 함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에서는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행동인데 맞벌이남편은 78.22%가 식사를 함께 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맞벌이부인은 86.35%가 함께 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홀벌이 남편은 79.19%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홀벌이 부인은 93.07%가 함께 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5 행동유형별 하루평균 부부의 가족공유시간

(단위: 분)

시간유형	시간분류	맞벌이부부		남편홀벌이부부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가족 돌보기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10	0.15	0.29	0.25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1.32	1.34	3.40	3.06
	배우자보살피기	0.27	0.24	0.44	0.53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보살피기	0.21	0.25	0.36	0.35
	소계	1.90	1.98	4.49	4.19
가사노동	음식준비 및 정리	16.69	11.06	15.02	11.08
	의류관리	2.27	2.54	2.49	3.37
	청소 및 정리	0.15	0.23	0.10	0.1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0.20	0.19	0.36	0.28

시간유형	시간분류	맞벌이부부		남편홀벌이부부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집관리, 가정경영, 기타가사일	5.42	5.34	6.51	6.61
	소계	24.73	19.36	24.48	21.49
교제 및 여가	학습활동	1.98	1.81	2.68	2.64
	교제활동	9.48	9.32	9.64	9.96
	종교활동	0.19	0.22	0.54	0.50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3.04	3.17	3.43	3.54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3.32	3.27	4.76	4.75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73	0.72	1.51	1.41
	소계	18.74	18.51	22.56	22.80
미디어 이용	신문, 잡지, 비디오, DVD, DMB, PMP, 라디오, CD	0.14	0.06	0.08	0.03
	TV시청	29.87	38.29	26.98	36.58
	소계	30.02	38.35	27.06	36.64
가족과의 식사	식사, 간식, 음료 등	38.32	45.21	40.02	57.49
총가족공유시간		93.99	94.98	114.91	146.65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전체적으로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은 가족보살피기 시간이며 다음은 가사노동시간, 교제 및 여가시간, 미디어이용시간, 가족과의 식사시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공유시간보다는 남편홀벌이부부의 공유시간이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공유시간에 대한 맞벌이부부와 남편홀벌이부부의 집단간 차이는 표 III-6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6 맞벌이부부와 남편홀벌이부부의 가족공유시간 차이

단위: 분(표준편차)

구 분	총가족공유시간		가족돌보기		가사노동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맞벌이부부	116.60 (102.7)	114.91 (97.2)	1.91 (12.4)	1.98 (12.8)	24.74 (33.9)	19.36 (31.8)
홀벌이부부	134.14 (111.6)	146.65 (103.8)	4.49 (18.0)	4.18 (17.3)	24.48 (33.9)	21.49 (34.5)
Significance of T-test (one-tailed)	52.71***	195.77***	56.61***	42.58***	0.11	8.15**
구 분	교제 및 여가		미디어이용		식사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맞벌이부부	21.62 (51.9)	21.31 (51.4)	30.02 (49.3)	27.06 (44.5)	38.32 (32.9)	45.21 (32.5)
홀벌이부부	26.80 (55.9)	26.85 (55.2)	38.35 (55.8)	36.6 (52.5)	40.02 (34.1)	57.49 (33.7)
Significance of T-test (one-tailed)	18.18***	21.24***	49.59***	77.23***	5.08*	269.41***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주: * $p < .05$, ** $p < .01$, *** $p < .001$

제5절 결 론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은 가정에서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을 남편홀벌이부부의 가족공유시간보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에게 식사를 함께하고, 여가와 오락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남편홀벌이부부보다 적다는 것은 맞벌이부부는 홀벌이부부 만큼 같은 동료애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족생활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부는 특별한 공유행동들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부부생활에 가치와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분석을 통하여 맞벌이부부의 시장노동이 그들의 가족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부부가 노동자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얼마나 조화시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부부의 공유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부부 간 대화를 통해 그들 스스로의 관계를 정의하고, 가족 일을 결정하며, 상호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연구에서도 부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부부 간에 긍정적인 만족감과 혼인의 의미를 더욱 더 많이 생산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만족스러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Kalmijin & Bernasco, 2001).

또한 맞벌이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의 종류 또한 문제이다. 여가, 가사일과 같은 행동들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혼인의 만족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Kingston & Nock, 1987). 본 분석에서 맞벌이부부가 가장 많이 공유하는 행동은 식사시간과 미디어이용시간으로 나타나고, 부부가 함께 하는 가족돌보기 공유시간, 가사노동 공유시간 등도 남편홀벌이부부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맞벌이부부는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시장노동시간이 가족생활에 주는 제약(가사노동시간과 가족보살피기시간 등)을 벗어나기 위해 전체적인 부부의 공유시간은 적다고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가족보살피기 행동에서의 공유시간은 더욱 늘려서 행동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는 여가시간을 덜 포기하기 위해 가사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어떤 부부는 가족일과 여가시간을 부부가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가족 일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가족일 생활시간의 양은 너무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족이 점점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는 남성의 생계부양자역할과 여성의 주부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주어지

고, 자녀는 가계계승을 위한 도구적 지위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대화가 필요하고, 심리적으로 감사하고, 동료애를 키우는 혼인생활로 규범이 바뀌어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Ulrich Beck & Beck-Gernsheim, 1990). 하지만 현재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맞벌이부부는 그러한 정서적 유대를 가족 안에서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가족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맞벌이가 필요해지고 있지만 배우자들은 점점 서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것은 배우자 간에 친밀감과 정서적 지지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맞벌이부부가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홀벌이부부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수 외, 2009,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딜레마**, 한울
- 김현주, 2008, **부부관계, 새로 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39-178
- 마경희, 2008, **맞벌이가구 젠더체제유형과 여성의 일-삶 경험의 차이**, **가족과 문화** 20(1), 한국가족학회: 131-16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서울시 저출산관련 요인 및 정책수요조사**
- 안정옥, 2007, **시간의 정치와 생활세계: 제도의 시간, 관계의 시간, 삶의 시간**, **가족과 문화** 19(2), 한국가족학회: 171-204
- 이승미, 1997,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 학위논문
- 홍승아 외, 2009,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09, **생활시간 조사 원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회통계조사, 인구동태통계**, 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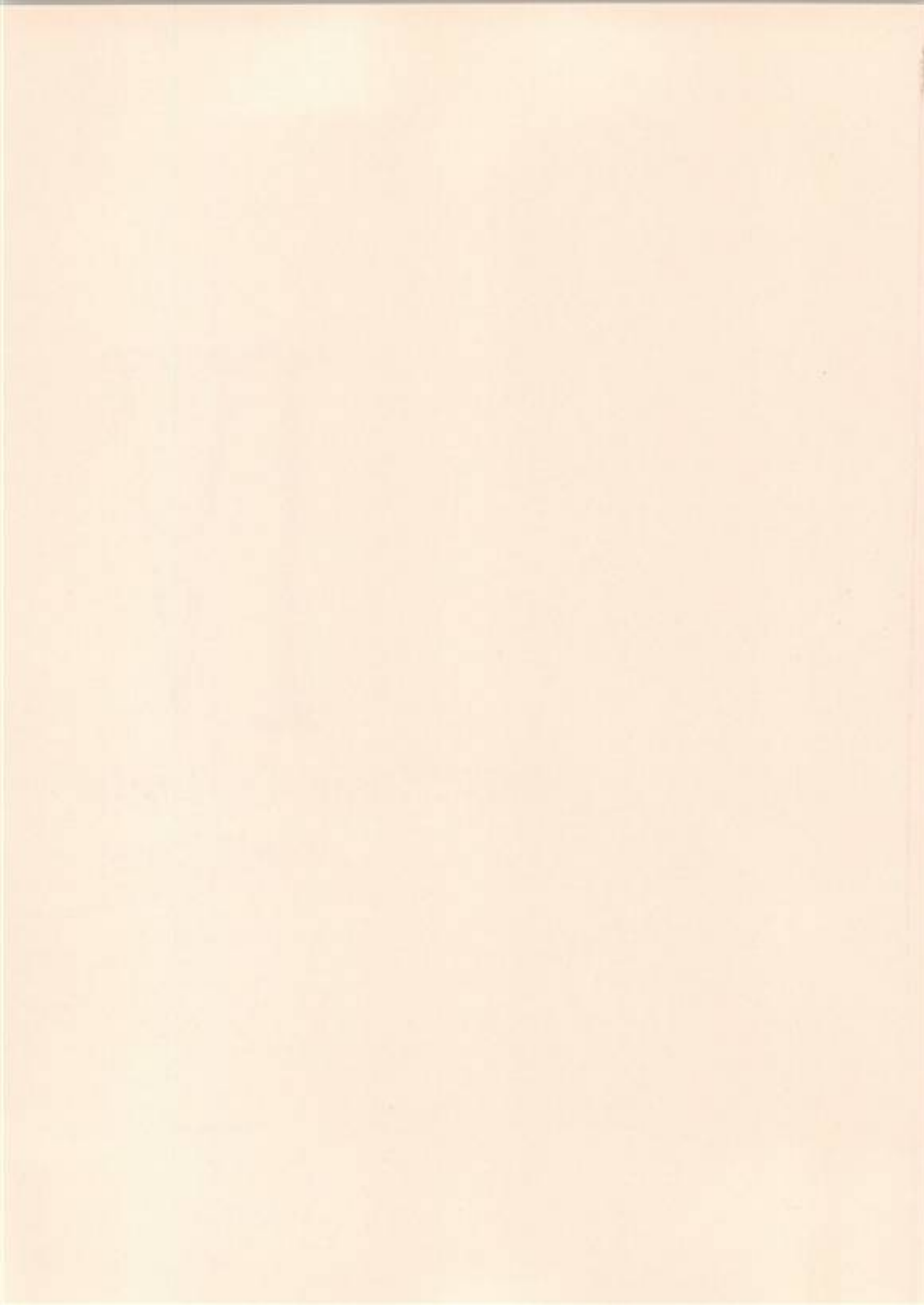
- D. K. Othner,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37: 91-102
- M. Kalmijin & W. Bernasco, 2001, Joint and Seperated Lifestyles in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3 :639-654
- P. W. Kingston & S. Nock,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2: 391-400
- Robinson, John P. & Godbey, Geoffrey,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Ulrich Beck & Beck-Gernsheim, 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옮김(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공정무역(Fair Trade)과 여성일자리

장명선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IV 공정무역(Fair Trade)과 여성일자리

우리의 일상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우리의 풍요, 우리의 소비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지구적인 불평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여 빈곤감소, 생태계파괴방지, 개도국의 생산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위한 공정무역을 범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이를 여성일자리창출로 연계함

제1절 공정무역이란?

1. 공정무역이란?

- 공정무역이란 가난한 생산자들이 만든 환경친화적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직거래하는 소비자 운동으로서 판매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난한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간접적으로 돕는 교역방식임. 즉 다국적 기업의 제3세계 노동착취를 비판하면서 정당한 대가 지불, 직거래, 친환경적 품목, 안전한 작업환경, 아동노동금지 등을 기조로 함.

-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시장경제에서 실현
- 인류사적 대 전환 :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인간과 관계를 중시하는 시대로 전환
-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 : 시민사회의 시장 진입,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 얼굴 있는 거래 : 지난 10년 간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인정받고, 가장 생태적인 상표의 상징, 인류의 존엄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전환
- 여성이 중심에 선 무역 : 생산자도 소비자도 활동가도 여성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무역

2. 기존의 무역의 폐해

- 불공정한 거래 : 세계 인구의 17%가 지구자원의 80%를 소비하고 83%의 인구가 1/5에 미치지 못하는 자원으로 연명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1kg의 커피로 생산농민이 받는 가격은 100원,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불가격은 200배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불안정한 가격 : 커피가격은 30년 전보다 더 폭락, 불안정한 가격은 농부들에게 리스크와 피해, 안정적인 삶 설계 불가능함
- 맹독성 농약 : 라틴아메리카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농민 한 사람이 살포하는 농약의 양은 65kg, 농약의 사용은 농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임
- 유전자 조작 : 21세기 들어 1000만 농부들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 및 인간신체는 치명적 손상 발생
- 여성의 빈곤화 : 무역자유화는 여성의 빈곤화를 가중시킴.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13억 인구의 70%가 여성임
- 어린이 노예노동 :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5세에서 14세의 어린이 1억 2500만 명이 위험하고도 불법적인 조건에서 노동, 10세 이하가 7300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강제 노동을 하고 노예처럼 지내며 매춘에 몰림. 전 세계 초콜릿의 절반을 생산하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플랜테이션에서 노동함

3. 공정무역의 발전사

- 1940년대 :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후진국의 공예품을 바자시장에서 판매
- 1960년대 : 급진적 학생운동, 지식인 운동과 결합하면서 반제국주의적 성격 가미

- 1980년대 : 차, 커피, 코코아, 설탕, 바나나 등 1차 생산품을 제값에 사주는 운동으로 바뀜
- ~ 현재 : 일자리창출, 환경보호, 생산자 노동권보장, 빈곤탈피, 교육훈련인프라 구축 등으로 범위 확대

4. 공정무역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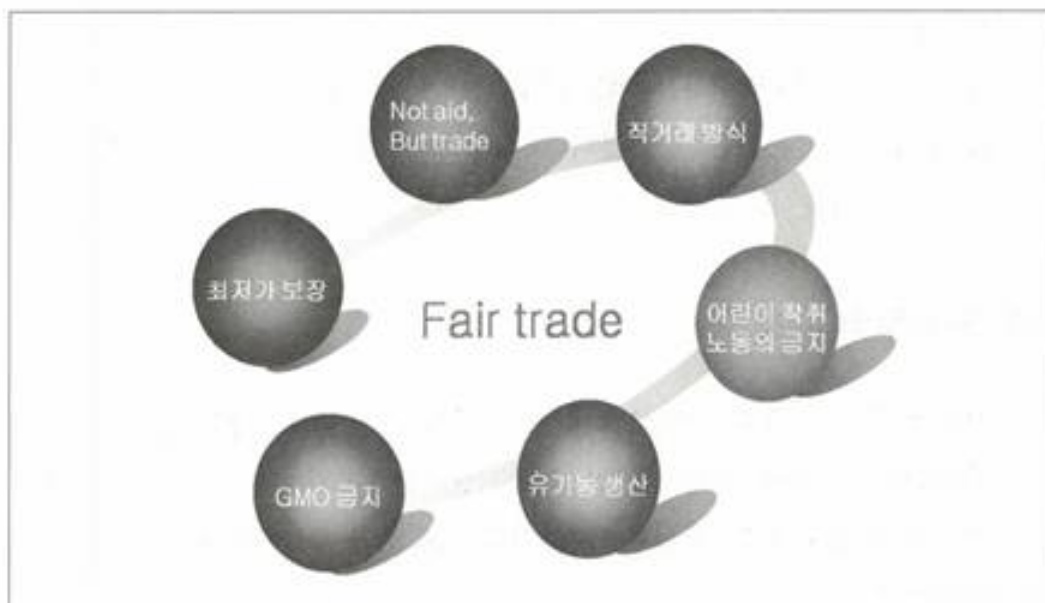
- Minimum Price 원칙: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가난한 생산자를 보호
- Social Premium 원칙: Minimum Price의 10%,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
-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 빈곤한 여성과 여아들을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도와주고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민주적인 거버넌스: 공정무역은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영세소농들의 협동조합과 거래
- 선급금제도: 굶주림이나 사채로부터 생산자들을 보호
- Long Term Solution: 농민들의 자녀교육과 안정된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거래

5. 공정무역의 효과

- 생산국에 주는 효과 : 여성의 경제력 강화, 빈곤탈피, 아동 및 여성노동력 착취방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지불, 환경파괴방지, 민주적 거버넌스, 지역적 공동체 활동 활성화, 여성직업 교육훈련인프라 구축, 공정한 거래, 가격안정, 농약, 빗 탕감 등
- 소비국에 주는 효과 : 글로벌여성주의에 참여, 친환경적 생산품 소비, 나눔 문화 확산, 공정한 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 문화적 다양성, 올바른 소비문화확산,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6. 공정무역이 갖는 여성적 함의

- 제3국 여성의 경제적 여건 및 권한 향상
- 여성의 자아존중감 고취
-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
- 여성 및 소수자 연대 촉진
- 공정무역은 생산, 소비활동 등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므로 여성일자리와 연계가능
 - 녹색성장, 녹색소비, 녹색도시 등과 연계된 환경친화적인 일자리
 - 제3세계 여성빈곤퇴치 등 글로벌 여성주의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 사회적 책임, 다양성 존중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일자리
 - 사회재투자, 나눔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자리



제2절 외국의 공정무역

1. 영국

- 영국공정무역재단은 런던을 공정무역도시로 선포(2008.10.23)
- 2001년 랭터서 주의 가스탕이 공정무역 마을 제1호로 탄생
- 자치구별로 공정무역 캠페인을 진행시킴. 2009.9. 현재 450여 마을, 100개 이상 대학, 5000개 이상 교회, 3000개 이상 학교에서 공정무역 참여
- 공정무역인증제품은 1994년 초콜릿, 커피, 홍차 3종류에서 2009년 현재 면화, 와인, 아이스크림, 화장품을 비롯해 4500여종으로 증가
- 영국 국민 70%가 공정무역 마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1999년-2008년까지 약 3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공정무역활동에 지원, 2009년부터 4년간 1200파운드 더 지원할 예정
- 공정무역관련기관
 - 영국공정무역상품연합회(BAFTS): 영국의 공정무역 소매촉진
 - 윤리적 소비자 매거진(ECRA): 각 기업을 윤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들의 생산물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수록
 - 공정무역재단: 공정무역 마크관리, 공정무역증진을 위한 행사기획 및 캠페인 개최(공정무역 포트나이트, 공정무역 마을)
 - 트레이딩 비전(Trading Visions): 교육자선단체
 - 트레이드크래프트(Tradecraft): 1979년 설립된 공정무역 제품을 제공하는 선구적인 무역회사로 식료품, 포도주, 의류, 소공예품 등 취급, 약 30개 개발도상국에 있는 100개가 넘는 생산자 집단에서 수입한 300종 가량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의 공정무역 상인이 자원봉사로 교회, 학교, 대학의 매점 또는 지역행사에서 판매
 - 트윈 트레이딩(Twin Trading): 현재 39개의 생산자집단(커피:27, 코코아:2, 설탕과 견과류:8)과 공정무역 거래

2. 일본

- 일본대안무역회사(ATJ): 1987년 일본의 시민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공동설립, 공정무역 제품을 수입하여 생협 조합원들에게 제공
- 네팔리 바자로(Nepali Bazar): 1992년 츠치야 하루요가 시작하여 네팔의 40여 생산자조직으로부터 물품 수입하여 2003년 요코하마에 직영점 개설, 240개 공정무역가게, 500여 곳의 상점에 물품 공급
- 공정무역 라벨링 재팬(Fair Trade Labeling Japan): 1993년 설립되고, 국제 공정무역기구인정기구(FLO) 정회원단체로 일본의 공정무역 마크 인증업무 담당, 2002년 스타벅스 커피에 FLO 마크 인증을 한 이후 인증품목이 확대되고, 인증마크를 붙인 상품이 3800곳 이상의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
- 공정무역회사(FTC): 1995년 사피아 미니가 글로벌 빌리지라는 환경단체를 모태로 하여 생태적 의류사업 시작, 1998년 도쿄에 본점을 열고 2000년 피플트리 브랜드 개발, 현재 일본 내 350여 상점에 제품 공급
- 공정무역학생네트워크(FTSN): 1993년 말 일본공정무역 업계의 비협력성과 폐쇄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 일본 내 4개의 지역조직,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공정무역 연구모임에서 지식과 정보 축적 및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 개최
- 일본의 공정무역은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많이 뒤져 있으며 단체들간에 공동의 이해가 다르고 워낙 생협이 발달해 있어 공정무역 상품의 잠재성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음
 - * 프랑스, 뉴질랜드, 네팔, 필리핀, 벨기에, 스위스, 스리랑카 등 많은 국가에서 공정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FLO 인증마크

○ FLO 인증마크

- 기원: 1988년 네덜란드의 '막스 하벨라르' 라는 커피상표에서 기원하여 이후 커피 외에도 여러 상품들을 위한 마크들과 다양한 기준들 개발
- 이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마크들이 사용되었다가 1997년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라는 통합기구가 설립됨
- FLO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1개의 공정무역 선도국가들의 공정무역 제품 인증의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음
- 2002년 공정무역 인증마크 제도 도입하여 FLO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부착하였으며 2009년 현재 인증상품 수는 4500여 종
- 공정무역 제품으로 인정받거나 인증된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조직들은 인증업무를 하는 국가기구 또는 단체와 계약하여야 함
 - 예) 영국은 영국공정무역재단, 스위스는 스위스 막스 하벨라르, 미국은 트랜스페어 유에스에이, 일본은 공정무역 라벨링 재팬이 담당.
- 한국은 2009년 9월 현재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정무역 제품에 FLO 인증마크를 붙이려면 독일의 FLO-CERT에 신청해야 함.
- 공정무역 마크는 다음을 보증함
 - 생산자 집단이 공정무역제품의 기준을 지켰다는 것을 보증
 - 공정무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보증
 - FLO에 등록된 무역업자들이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거래가격을 지불했는지 감독
 - 공정무역상표를 공정무역인증생산자들이 만든 제품에만 붙였다는 것을 보증

세계공정무역의날

○ 공정무역의 날

- 2002년부터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에 행사
- 세계 70개 나라 300여 단체들은 공정무역 제품 전시판매, 시식회, 아침식사, 연주회, 운동경기, 행진 등 다양한 행사 벌임
- 2002년부터 시작 2006년 'Fair Trade Organizations Now', 2007년 'Kids of Fair Trade', 2008년 'Fair Trade + Ecology'행사
- 2009년 국제공정무역연합을 '세계공정무역기구'로 개칭
'복을 두드려 빈곤을 날리고 기후변화를 날리고 경제위기를 날려버리자' 구호
1억 1000명 참여
- 현재 70여개 국가의 300여개 조직과 100만명의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에 참여

제3절 한국의 공정무역

한국의 공정무역은 이제 막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나 아름다운재단, 환경연대, YMCA 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활동전개가 기대된다. 활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커피(아름다운 가게)

- 아름다운 가게는 2003년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수공예품 수입하여 판매, 2006년 9월부터는 일본 네팔리 바자로를 통해 네팔에서 들어온 커피 '히말라야의 선물', 2008년 1월부터는 페루에서 생두로 들어온 '안데스의 선물' 판매 및 네팔의 홍차 티백제품 수입 판매, 2009년에는 우간다산 커피 수입 판매
- 현재 서울 4곳에 아름다운카페 개점(안국점, 수유점, 단국대점, 여의도점), 전국에서 아름다운 카페 캠페인에 동참하는 개인카페는 250개, 전국유통업체 8,000개에서 아름다운 커피 상품 판매
- 아름다운 커피매출 2008년 8억, 2009년 21억, 2010년 60억 예상(공정무역업체 매출액의 65%)
- 아름다운 커피는 매출액의 10%를 생산자 발전기금으로 적립
- 아름다운 커피의 생산지 지원프로그램:
 - 학교건립프로젝트(칼리카학교)
 - 일자리창출: 12명의 여성노동자 임금 50% 지원
 - 생산지차량 구입
 - 교육비지원
 - 커피묘목 보급사업
- 대학내에서 봉사/리더십/글로벌나눔을 테마로 한 동아리들과 연계공정무역 캠페인 주도

- 현재 대학내 공정무역만을 키워드로 한 동아리는 존재하지 않으나 동덕여대에 '아름다운 커피특공대' 론칭될 예정임

2. 두레생협협회

- 에이피넷이라는 무역회사를 만들어 일본의 대안무역회사인 ATJ의 협력으로 2004년부터 필리핀 마스코바도 설탕, 2006년 6월부터는 팔레스타인 올리브유를 수입하여 조합원 대상으로 판매
- 비교적 안정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음

3. YMCA 전국협회

- 2005년 11월부터 동티모르 산 생두를 볶아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평화'라는 상표로 회원 중심 판매
- 2006년 12월에 'Peace Coffee'라는 상표로 시장에 내놓고 카페 티모르라는 카페를 열어 적극적인 커피 사업 진행
-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과정개설: 청소년, 여성가장, 장기청년실업자 등
- 현재 서울에 '카페 티모르' 4개 개점(아현동, 남대문, 이대, 신림동)

4. (주)페어트레이드 코리아

- 여성환경연대가 2007년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를 설립하여 일본의 네팔리 바자로를 통해 네팔에서 생산된 의류와 생활용품 등 판매
- 인도의 유기농 면직물 수입하여 국내에서 만든 티셔츠를 '그루'라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 2008년 패션쇼 개최하면서 의류사업에 집중

5. iCOOP 한국생협연합회

- 2007년 콜롬비아의 Compania Nacional De Chocolates사에서 카카오매스와 버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초콜릿 판매, 동티모르와 콜롬비아 수입 커피 판매
- 2008년 11월부터는 필리핀 파나이 섬의 FLO 인증 생산자단체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 수입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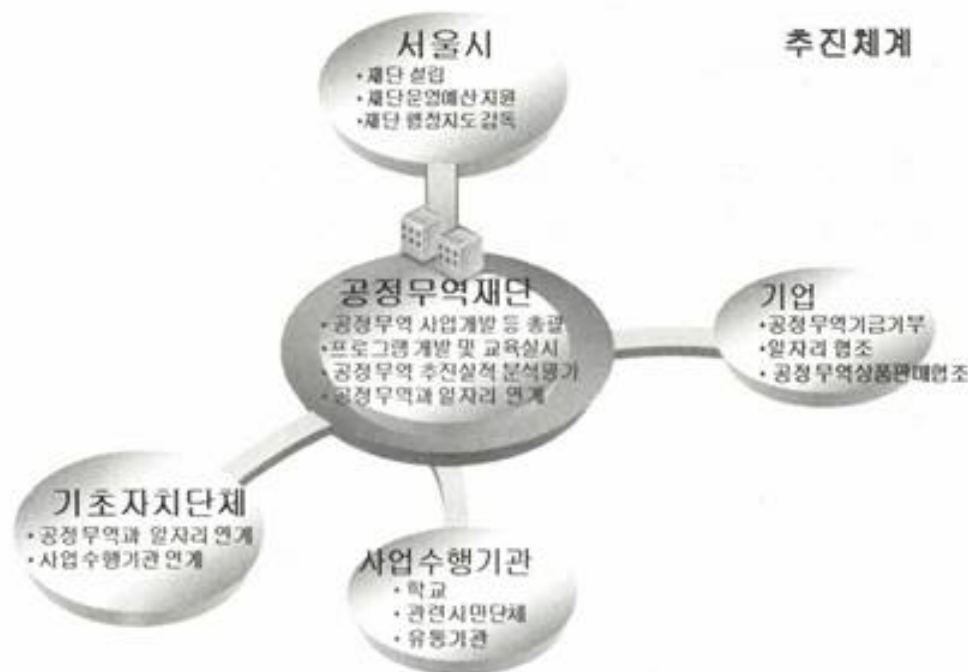
6. 공정무역 가게 올림

- 2007년 파키스탄에서 공정무역 인증 축구공 수입, 2008년 2월 스위스 클라로에서 FLO 인증 유기농 초콜릿을 수입하여 '착한 초콜릿' 캠페인 개최
- 프랑스 로보디스사의 FLO 인증 유기농 커피와 영국 트레이드크라프트에서 수입한 코코아, 지오바, 무슬리 등 판매

공정무역 인지도

- 시장조사 전문기업트렌드모니터와 엠브레인이 전국남녀 1012명 대상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제품구매 형태 조사' 결과
 -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공정무역중 인기제품은 커피(33.6%), 초콜릿(16.1%), 설탕(10%), 의류(2.8)임
 - 공정무역을 사는 이유는 근본적인 취지가 좋아서 44.5%,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45.5% 등으로 나타남
 - 공정무역을 전혀 모르거나 들어만 보았다가 응답자의 83.9%
 - 공정무역을 사지 않는 이유는 공정무역 제품이 있는 줄 몰라서가 58.5%로 나타남

제4절 공정무역 추진체계(안)



제5절 공정무역과 여성일자리 연계 사업아이템

1. 공정무역 서울재단 설립

- 공정무역재단 설립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국내외 전반적인 활동 총괄
- 국내외 홍보 및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활동
- 녹색성장이나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등과 연계해서 인식확산 활동
- 참여기업선정, 제품선정, 기금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인증마크 부착 제품출시기념행사 및 캠페인 등
- 공정무역캠페인 안내서 및 웹페이지 제작 등 홍보

- 구성원은 재단의 설립취지에 동참하는 자들로 구성하여 자원봉사수준의 일자리 창출

2. 공정무역 인증마크

- 공정무역 마크를 정해 기업과 연계해서 상품에 인증마크 부착
- 유통매장에 공정무역 상품 전시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
- 공정무역에 참가한 기업에 대한 홍보나 인센티브 제공

3. 공정무역 서울

- 서울을 공정무역 도시 선포하여 아시아권내에서 공정무역중심도시로 활동
- 서울시청 구내식당, 회의실 등에서 공정무역 인증커피, 차, 농산물 등을 이용
- 각 자치구마다 '공정무역 서울 포럼단' 구성해서 녹색성장과 연계
- '초록소비자운동' 과 연계 활동하면서 여성일자리 창출

4. 공정무역 서울시 자치구 선포

- 자치구에서 공정무역 확산
- 구청내의 구내식당 등에서 공정무역 인증커피, 차, 초콜릿, 바나나 등 상품 이용 및 판매
- 지역내 여성단체, 종교단체와 연결해 공정무역 확산
- 초록소비자 운동, 여성일자리와 연계

5. 공정무역 상품판매점 개점

- 서울시가 공정무역의 인기생산품인 커피나 초콜릿 등을 판매하는 가게 개점

(예로서 착한커피점 등을 벤치마킹함)

- 판매원은 '공정무역 서울 포럼단'을 조직해 자원봉사로 활동
- 공정무역 서울 포럼단은 자원봉사자의 노동력기부로 운영
- 일정 인력은 여성일자리와 연계 가능

6. 'Fair Trade School' 운영

- 학교내 구내식당, 매점 등에서 인증상품 판매
-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서 동아리모임, 학생회 활동을 통해 공정무역 확산
- 외국의 공정무역학교에서의 학생모임 등과 교류
- 동아리활동과 연계해서 이벤트, 학교축제, 사진컨테스트, 생산자 초청프로그램 등 운영

7. 'Fair Trade Seoul City' 관광여행

- 서울관광지와 공정무역과 연계해서 공정무역관광코스 개발
- 관광코스에서 공정무역 상품 전시해서 판매
- 여성이 공정여행가이드로 활동가능함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8. 퇴직여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50대, 60대, 70대)

-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서비스 제공: 경제, 디자인, 경영, 건강관리, 문화예술 등
- 일정 교육 후 자신의 전문지식을 어린이나 여성, 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달
-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원, 여성회관, 방과 후 교실 등에서 강의
- 공정무역과 연결하여 공정무역전도사, 경제지도사, 문화예술강사, 체육지도사,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창작지도사 등의 일자리 창출

9. 공정무역 여행코디네이터

- 공정무역국가의 여행경험을 살려 공정무역여행코디네이터 일자리 창출
- 공정무역국가 여행경비가 현지인에게 직접 전달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 환경영향 최소화, 지역산물 직접 구매하거나 공정무역 제품 구매
- 여행사업의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함
- 현지 NGO와 연계해서 함
- 사회적 기업화 가능

10. 녹색성장과 관련한 일자리(지역사회 생활용품 재활용)

- 재활용 가구,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이를 수리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저소득층에게 제공
- 저소득층은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가전제품을 쓰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됨
- 가전제품 회사나 가구회사 등의 대기업과의 연계로 사업 진행
- 재활용과정은 노동집약적이어서 일자리 창출가능

11. 지역 내 착한 반찬가게

- 국내의 공정무역으로 지역내 친환경적인 반찬가게 개설
- 농촌지역의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하거나 재래시장과 연결해 농수산물을 공수받아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 반찬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주민자치센터나 여성자치주민회가 중심이 되어 개설
- 매출의 일정비율을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이나 노인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 녹색소비,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업

-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을 도시락 제공을 반찬가게에서 담당할 수도 있음

12. 공정무역과 문화와의 만남

- 공정무역과 출판과 문화가 만날 수 있는 B·C·C(BOOK, COFFEE, CULTURE)의 장을 마련함
- 공정무역커피와 출판, 문화 등과의 연계를 통해 올바른 문화정착에 기여
- 출판업, 카페 등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가능
 - 기존의 공정무역에서 여성은 숨어있으나 생산, 소비 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므로 여성이 중심이 되는 무역임을 강조할 필요 있음
 - 공정무역과 일자리 창출은 공정무역으로 직수입한 상품들을(커피, 초콜릿, 농산물, 의류, 장식소품 등등) 판매하는 점포 내지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이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적 차원에서 실비만을 제 공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봄
 - 일자리 창출시 공정무역취지에 동참하는 지식계층과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봄
 - 공정무역은 녹색소비자운동, 녹색성장, 환경운동과 함께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여성단체, 여성운동 등과 연계 필요

제6절 기대효과

- 국제사회에서 한국내지 서울의 이미지 개선
- 공정무역과 관련된 여성일자리 창출
- 제3국 여성의 임파워먼트 및 빈곤퇴치에 기여
- 친환경적이고 로컬중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 여성 및 소수자 연대 촉진으로 삶의 질 향상
- 사회재투자, 나눔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제7절 기타

-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홍보기관을 후원기관으로 영입해 홍보강화
- 공정무역 서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네이밍 작업 필요
- '공정무역 서울 포럼단' 구성하여 활동을 활성화 도모
- 청소년층에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 필요
- 공정무역과 연계된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킴

〈참고자료〉

- 강용찬(2007), 공정무역의 규범적 정립과 윤리적 접근: 시장적 논리와 형평적 논리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8(3): 177-206.
- 김정희(2009), 『공정무역, 희망무역』, 동연(와이미디어)
- 김정희(2008) "여성중심 공정무역에 대한 연구: '네팔리 바자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2): 113-145.
- 마일즈 리트비노프·존 메달레이 저, 김병순 옮김(2007),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모티브 북
- 박창순·육정희(2009), 『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시대의 창
- 엄은희(2009),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의 세계화, 대한지리학회 2009년 연례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121

- (사)여성환경연대(2006), 자유무역을 넘어 희망의 대안을 짜는 여성들 자료집.
- 이미영(2006), 공정무역으로 새로운 미래를 일구는 여성들, 환경과 생명, 49: 156-170.
- 최현실(2007), 기획논문: 여성을 위한 국제적 대안경제: 공정무역, 소액대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17: 21-49.
- 트윈트레이딩: <http://www.twin.org.uk>
- 윤리적 소비자 매거진: www.ethicalconsumer.org
- 신문자료 및 인터넷자료

□ 공정무역 관련 단체

○ 영국

- British Association for Fair Trade Shops(BAFTS): www.bafts.org.uk
- Ethical Consumer magazine and research servies: www.ethicalconsumer.org
- Fairtrade Foundation Room 204: www.fairtrade.org.uk
- New Consumer magazine 51 Timberbush: www.newconsumer.org
- Trading Visions: www.tradingvisions.org
- Traidcraft: www.traidcraft.org
- Twin Trading: www.twin.org.uk

○ 일본

- 일본대안무역회사(ATJ): www.altertrade.co.jp
- 네팔리 바자로(Nepali Bazar): www.nbazaro.org
- 공정무역 라벨링 재팬(Fair Trade Labeling Japan):
- 공정무역회사(Fair Trade Company): www.peopletree.co.jp
- 공정무역학생네트워크(Fair Trade Student Network)

항목	내용
① 영양사 식단 사용	100인 미만 시설은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등 영양사가 작성하여 공개하는 식단을 활용하고 식단표대로 제공해야 한다. - 식단에는 급식 및 간식(2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급간식 직접 조리	시설내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직접 조리로 인정
③ 식자재 유통기한 준수	- 냉장고 및 식품보관 장소의 식자재 모두 해당됨 -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경우 식자재 보관 상태 확인
④ 위생적인 조리(또는 배식)과정	- 조리원이 위생모, 앞치마 착용(조리시와 보육시 앞치마 구분 사용), 위생장갑 사용 등 조리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위생적인 배식관리(손 씻기, 집게나 위생장갑 사용, 개인별 식기 사용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급간식 내용 공개	- 아동에게 제공한 일일 급·간식 내용을 급식보존대, 시설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게시판에 사진게시 하는 등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급식과 간식(2회) 모두 포함

- 보육시설의 청결과 위생 관리는 아래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관리함

항목	내용
① 보육실, 현관, 복도 청결	보육실, 현관, 복도 등 실내공간이 전반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② 화장실, 세면장 청결	- 세면대와 변기, 휴지통 등은 냄새가 나지 않고, 바닥에는 물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물비누를 사용하거나 비누받침대를 자주 닦아주며, 수건관리가 청결하다.(종이수건 사용하거나 마른수건으로 자주 교체해 주는 등)
③ 조리실 청결	조리실을 청결(조리대·냉장고·칼도마행주 등의 청결 및 위생적 관리, 음식물 쓰레기 반출, 환기 등)하게 유자관리하고 있다.
④ 정기적 소독	2~3개월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역 또는 소독하고 있다.
⑤ 놀잇감 청결	놀잇감(보육실, 유학실)을 자주 세척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 서울형 어린이 집의 공인 지표를 통한 평가와 점검으로 시설 및 영양과 안전관리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증가되고 있음
 - 2008년 시설 환경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77.8점(5점 만점에 3.89점의 100점 환산치)이었으나 2009년 90.4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되었음
 - 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09년 93.6(5점 만점에 4.23점의 100점 환산치)점, 위생적인 급·간식에 대한 만족도는 94.4(5점 만점에 4.72점의 100점 환산치)점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임

표 V-1 서울형 어린이 집 학부모 만족도

단위: %, 점

항목	2009				2008
	만족	보통	불만족	5점 평균	5점평균
위생적인 급·간식 제공	93.8	4.0	1.4	4.72	4.09
아동 안전관리	94.5	4.3	0.9	4.68	4.23
연령별 특성 고려한 시설환경	89.3	8.8	1.6	4.52	3.89
깨끗하고 정리정돈	96.2	3.2	0.5	4.76	3.95

자료) 서울여성가족재단, 2009보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내부자료

- 이와 같은 서울형 어린이 집 학부모 만족도는 2009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시설환경·안전관리·급간식 위생 등 모든 영역에서 만족한다는 부모의 비율이 높음
- 안전관리 만족도가 전국 평균 76점(5점 만점에 3.80점의 100점 환산치)인데 반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는 93.6점으로 월등히 높을뿐만 아니라, 급·간식 위생 역시 전국 평균이 76점(5점 만점에 3.80점의 100점 환산치)인데 반하여 서울형 어린이 집은 94.4점에 이르고 있음

표 V-2 보육시설 학부모 만족도

단위: %, 점

항목	2009			
	만족	보통	불만족	5점 평균
급간식관리	70.7	24.3	5.0	3.80
안전관리	71.9	24.9	3.2	3.80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59.2	33.2	7.6	3.61
내부 분위기	70.7	26.7	2.6	3.8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보육실태조사

2.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은 서울시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 급식 및 위생 관리, 아동 인권 분야에 대하여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음
- 안심보육 모니터링 지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항목 중 급식위생 및 시설 안전 항목 및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안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지표를 수용하고 있음
 - 부모가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은 보육 수요자가 스스로 아동의 안전과 위생 및 청결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관찰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학부모, 이용자(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육 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용자와 보육서비스 공급자인 보육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함

항목	내용
급식위생	조리실 및 조리과정(자격증, 위생복 등)
	식재료 관리(청결, 유통기한, 검수일지 등)
	급/간식 제공(정보 공개, 위생복 착용 등)
	시설청결 상태(환기와 청결)
	화장실 및 세면장 청결상태(세면대, 수건, 휴지통)
	조리실 청결 상태(소독 및 환풍기 등)
시설안전	놀잇감 및 놀이기구의 안전성(적절크기와 모양)
	실내외 시설설비의 안전성(놀이기구 적절한 관리)
	시설설비의 안전성(바닥, 문, 온열 장치 등)
	안전대피 시설 설치(위급상황 대처 등)
	안전설비 관리(소화기, 소방훈련 등)
	비상시 대처방안(구급약품 구비 및 사용방법)
	차량 안전관리(성인동반, 안전 장비 등)
아동인권	아동학대 예방(예방 및 신고 의무)
	감정수용
	예방교육
	적절한 상호작용(정보 전달 및 보육실개방)

- 2009년 시행된 안심보육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장 혹은 보육교사는 모니터링 활동이 시설 안전과 급식 위생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시설 안전성에 대해서 65.7%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급식 위생면에는 56.6%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음

표 V-3 |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서비스 개선

단위: 개(%), 점

항목	2009			
	개선됨	보통	개선되지못함	5점 평균
급식위생	56.6	39.0	5.1	3.68
시설안전	65.7	29.9	4.5	3.82

자료) 서울여성가족재단,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서비스 개선 인식 조사(2009. 5. 24 - 5. 31), 내부자료

제3절 서울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의 과제

1. 건강한 녹색 시설 환경 조성

- 건강한 녹색 보육시설이란, 영유아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실내환경과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시설설비를 갖춘 시설을 의미함. 이를 통해 자연과 가장 가까운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 시기부터 자연친화적 삶을 자연스럽게 체화시킬 수 있도록 함
 - 현재 보육시설의 실내 환경은 주로 영유아의 신체적 안전에 그 관심을 두고 있음. 안전이란 신체적 위험이 없는 상태로 협의의 안전은 신체적 손상이 없는 상태이지만 광의의 안전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따라서, 화재와 상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목적으로 했던 보육시설 안전 관리는 광의의 안전, 즉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녹색정책 추진 사업과 서울형 어린이 집 공인 사업을 연계하여 보육시설의 녹색화 추진
 - 기후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대상에 서울형 어린이 집 공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
 - 이산화탄소 절감 목표관리제 병행 추진하여 영유아에게 에너지 소중함에 대한 현장 교육 강화함
- 서울형 어린이 집 공인 지표에 녹색 환경 지표를 평가 지표화하여 지속 가능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평가 지표화할 수 있는 녹색 환경 지표는 다음과 같음

영역		내용
에너지	에너지 소비량 평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5호, 2008.1.11)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에서 취득한 점수
	신·재생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태양에너지, 지열, 연료전지 설치
	조명 에너지절약	고효율형광등 사용 건물내에는 존(zone)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스위치 설치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화장실 소비재 절약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은 자동 감지식 손 건조기(air towel) 설치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건축자재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사용
	음식물 쓰레기 저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를 위한 공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 우수 이용	환경표지 세면용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절수형 변기 우수를 살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설치
지구 온난화 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난방 부하의 일정 비율을 열병합발전의 배열을 이용하거나 사용 에너지원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
	오존층 보호	할론을 포함하지 않는 소화기, 오존층파괴물질(ODP)이 없는 단열재, 냉동기 및 공기조화기
생태 및 실내 환경	녹지 공간조성	잔디 조성, 조경, 생태학습원의 조성
	쾌적한 실내공기환경	건축물 사용전 실내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 수행 맞통풍이 가능한 창, 이용자가 직접 조절가능한 환기창 설치
	석면 포함 자재사용 억제	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간막이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
	실내 소음 완화	실내 소음도(dB(A)) 예측
	쾌적한 공간 제공	건축물내에 수공간 또는 식재공간 조성, 환경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영양	무장애공간 (Barrier-Free)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해소, 연속난간, 문과 통로 폭 확보
	유기농 식자재	유기농법 또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식자재 활용

자료) 국토해양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2008), 환경표지 대상제품 부여기준(<http://www.kela.or.kr>)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2. 지역사회 안심 보육에서 부모 모니터링

- 지역사회 안전 진단 부모 모니터링 활동은 보육시설의 안전 진단 뿐만 아니라 통학길, 놀이터, 주거지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 진단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활동임
 - 지역의 영유아 부모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할만한 곳이 없는지 파악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나, 학교배움터지킴이(일명 스쿨폴리스, 교과부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조직), 학부모클럽, 노인클럽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안전망 만들기를 확산시킬 수 있음
- 보육시설에 대한 안심보육 모니터링 활동을 해 왔던 부모와 보육 전문가들이 지역 안전 모니터링 지표를 학습하고 지역 환경을 점검함
 - 지역 안전 모니터링의 목적은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장소」에 초점을 맞춰 장소를 개선하는 것임.
 - 첫째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일반인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배치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공공장소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사람이 북적이게 함으로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전감을 주는 방법임.
 - 둘째로 사고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방치되는 공간이 없도록 하는 것임
 - 지역 안전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음

영역	내용
공원 및 건물 등	범죄발생 상황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건축물, 창문이 설계되어 있는지
	공공장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치(비상벨, 긴급전화) 설치되어 있는지
	공원, 놀이터의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한지(수목의 식재 형태 및 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은닉장소 제거)
	심야시간에는 공원 출입이 통제되는지, 안전이 관리되고 있는지
	건물의 출입구들은 주차 공간과 인도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가
	벽, 울타리, 또는 다른 조경적 요소가 출입구를 가리거나 덜 보이게 할 수 있는지
	벽, 울타리, 또는 다른 조경적 요소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나무들과 다른 조경적 요소들이 건물에 비치는 조명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고 있는지
	주출입구 근처 사무실 또는 관리실에는 방문객 주차 공간이나 출입문의 관찰이 가능하도록 유리창이 많은지
	엘리베이터에 영구 정지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지
도로 및 교통시설	엘리베이터를 주출입구 근처에 위치시키고 문이 열렸을 때 내부 전체가 보이는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밝기가 충분한지(교체 또는 높이 조절)
	보행자의 이동은 차량 교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신호등의 길이가 어린이의 이동에 충분한지
	도로나 주차장에 움푹 패인 곳이 있는지
	도로나 주차장에 단차가 높아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학부모들이 자녀를 승하차시키는 장소는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는지
외곽 감시 (surveillance)	버스 승하차 장소는 다른 차량의 진출입, 승하차 장소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지
	놀이공간에 대한 육안 감시가 가능하거나 CCTV 카메라 설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방과후 경찰순찰차 혹은 자체 경비차량의 순찰이 이루어지는지
	유리창 깨진 부분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CCTV카메라의 설치방향은 건물벽이나 나무 등에 가리거나 지장 받지 않는 각도인지
	CCTV카메라의 위치는 최대한의 감시영역을 확보하고 있는지
	CCTV 카메라 본체와 렌즈는 손괴를 방지할 수 있는 케이스를 씌웠는지

영역	내용
건물내부	출입문에, 모든 방문자는 반드시 사무실에 들어 절차를 받아달라는 안내를 고지하고 있는지
	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친지가 어린이를 데려갈 때는 신원과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을	낮 동안, 저녁과 늦은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주택) 주변에 있을 것인가
	긴급 상황에 이 장소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가
	지역주민의 활력 넘치는 환경 조성(공원, 산책로, 벤치) 조성되어 있는지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 증진으로 지역주민 간 유대가 충분한지
	주변에 버려진 건물이 있거나 관리되지 않는 건물이나 지역이 있는지

자료) 버지니아 주 Crime Prevention Unit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2000)와 보육 시설 "안전진단(Safety Audit)" 매뉴얼, www.cops.usdoj.gov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 개별 보육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안전 모니터링 한 후, 아동들과 함께 안전 지도 만들기 활동을 함께 함
 - 안전 지도 만들기 활동으로 주변 지역의 위험하거나 조심해야 할 지역을 조사하여 지도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음
 - 안전 지도는 거리나 집(건물) 등을 그리고, 찍은 사진을 붙인 후, 왜 그 곳이 위험한지 그 이유를 적어 넣은 것임. 안전지도를 완성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활동경과를 나타내는 발표회나 전시회를 할 수 있음
 - 안전 지도는 아동이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능력을 몸에 지닐 수 있게 하는 실천적인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가능 함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2008),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이경훈, 표창원, 최재필, 박현호, 민수홍, (2006)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계획
(CPTED) 시범적용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Beech, T., Dyer, K., and et al. (2007) Guidelines for Public Video
Surveillance. A Report of the Constitution Project's Liberty and Security
Committee, Washington, DC.
Ditton, J. (2000) Crime and the City : Public Attitudes to CCTV in
Glasgow,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Diane Zahm(2007), Using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 Problem-Solving, U.S. Department of Justice
환경표지 대상제품 부여기준(<http://www.kela.or.kr>)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I

고용 양극화와 여성 고용

김창연 (정책개발실 선임연구원)

VI 고용 양극화와 여성 고용

제1절 문제제기

1990년대 중반 서구의 가족친화제도가 한국사회에 소개된 이래 소위 '일-가족 양립'의 문제는 학문적·정책적인 관심의 영역이 되어 왔다. 또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일-가족 양립 이슈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꾸준히 활발해져 온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의 돌봄과 경제활동을 함께 수행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된다. 하나는 공보육 시설의 확충이나 노인 돌봄에 대한 지원과 같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남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유연화, 직장 내 각종 복리후생의 도입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일-가족 양립' 정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파트타임 근무제나 탄력근무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최숙희(2010)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활성화가 기본적인 전제라고 언급한다. 보육시설이 원활히 공급되고, 취학아동의 방과 후 수업이 다양화되어 체계를 갖추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근무 시간에 탄력성이 부여되어야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초,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의 한 방안으로 유연근무제인 '퍼플잡(purple job)'을 도입하고, 공공부문부터 시

작해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¹⁾ 한국사회가 전일제 장시간 노동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녀양육이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단시간 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례로 올해 1월 20일에 열린 「이명박 정부 여성고용정책 진단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퍼플잡에 대하여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크고, 기혼여성 4명 중 3명이 비정규적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퍼플잡은 결국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인숙, 2010).

이에 본 분석에서는 퍼플잡과 같이 일-가족 양립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형태가 여성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가 어떠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퍼플잡이 취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와 같은 고용형태와 여성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비정규직이 감소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비정규직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김유선, 2010).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고용 양극화 현실에서 여성 고용의 위치를 살펴보고, 퍼플잡과 같은 단시간 근로형태의 도입이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여성부의 ‘퍼플잡’, 무너만 보라?”,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0년 1월 25일자.

제2절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1. 남녀 비정규직의 규모

김유선(2010)에 따르면 통계청이 2010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28만 명(임금 노동자의 49.8%)이고 정규직은 833만 명(임금 노동자의 50.2%)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VI-1 비정규직 규모 (2010년 3월)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9,926	4,976	1,714	16,616	59.7	29.9	10.3	100.0
정규직 (2=1-3)		8,334			8,334	50.2			50.2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592	4,976	1,714	8,282	9.6	29.9	10.3	49.8
고용계약	임시근로	1,435	4,976	1,714	8,125	8.6	29.9	10.3	48.9
	장기임시근로 ①		3,574	1,323	4,897		21.5	8.0	29.5
	한시근로 ②	1,435	1,403	392	3,230	8.6	8.4	2.4	19.4
	(기간제근로)	1,432	804	154	2,390	8.6	4.8	0.9	14.4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67	829	628	1,524	0.4	5.0	3.8	9.2
근로제공 방식	호출근로 ④		2	854	856		0.0	5.1	5.2
	특수고용 ⑤	18	521	50	589	0.1	3.1	0.3	3.5
	파견근로 ⑥	138	61	13	212	0.8	0.4	0.1	1.3
	용역근로 ⑦	319	181	50	550	1.9	1.1	0.3	3.3
	가내근로 ⑧	3	6	57	66	0.0	0.0	0.3	0.4

※ 자료 : 김유선(2010)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남성 임금 노동자 중 39.7%가 비정규직인 반면, 여성은 여성 임금 노동자 중 63.5%가 비정규직이다. 남녀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에도 남성은 45.7%를, 여성은 54.3%를 차지하고 있

어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VI-2 】 성별 비정규직 규모 (2010년 3월)

		수(천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541	7,076	100.0	100.0	57.4	42.6
정규직		5,753	2,581	60.3	36.5	69.0	31.0
비정규직		3,788	4,495	39.7	63.5	45.7	54.3
고용계약	임시근로	3,705	4,421	38.8	62.5	45.6	54.4
	장기임시근로	2,191	2,706	23.0	38.2	44.7	55.3
	한시근로	1,514	1,715	15.9	24.2	46.9	53.1
	(기간제근로)	1,160	1,229	12.2	17.4	48.5	51.4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98	1,127	4.2	15.9	26.1	74.0
	호출근로	576	280	6.0	4.0	67.3	32.7
	특수고용	183	406	1.9	5.7	31.1	68.9
	파견근로	104	108	1.1	1.5	49.1	50.9
	용역근로	313	237	3.3	3.3	56.9	43.1
	가내근로	7	58	0.1	0.8	10.6	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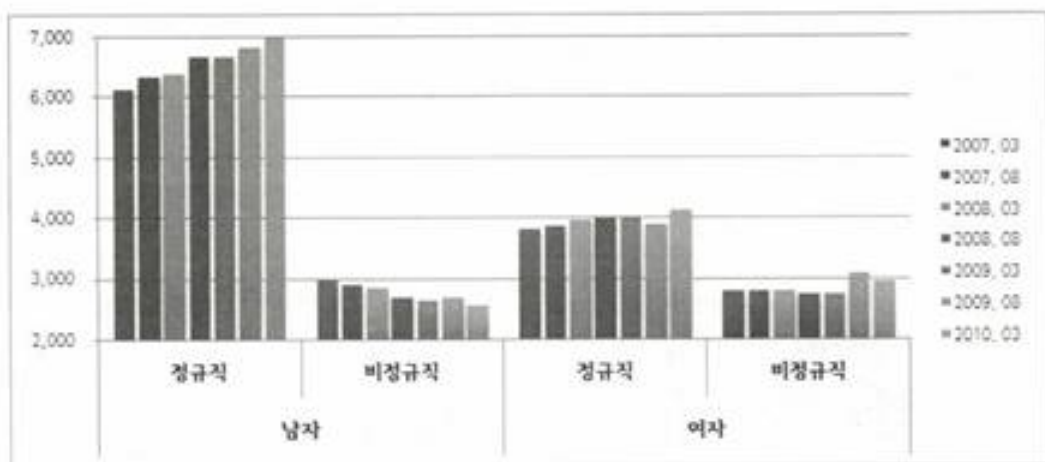
※ 자료 : 김유선(2010)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3월까지의 꾸준한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의 경우 49.8%로 2001년 8월의 55.7%에 비해 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김유선, 2010).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 규모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성별 비정규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VI-3 】 성별 비정규직 규모 변화 (2007년~2010년)

성별	항목	2007. 03	2007. 08	2008. 03	2008. 08	2009. 03	2009. 08	2010. 03
남자	정규직	6,138	6,328	6,394	6,667	6,682	6,833	6,987
	비정규직	2,968	2,907	2,843	2,699	2,626	2,681	2,554
여자	정규직	3,820	3,851	3,962	3,991	4,020	3,891	4,132
	비정규직	2,805	2,796	2,795	2,746	2,748	3,073	2,94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그림 VI-1 ■ 성별 비정규직 규모 변화 (2007~2010)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정규직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남성 비정규직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가 오히려 2007년 3월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와 그림은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성별 비정규직 및 정규직 규모의 전년 동월비 대비 증감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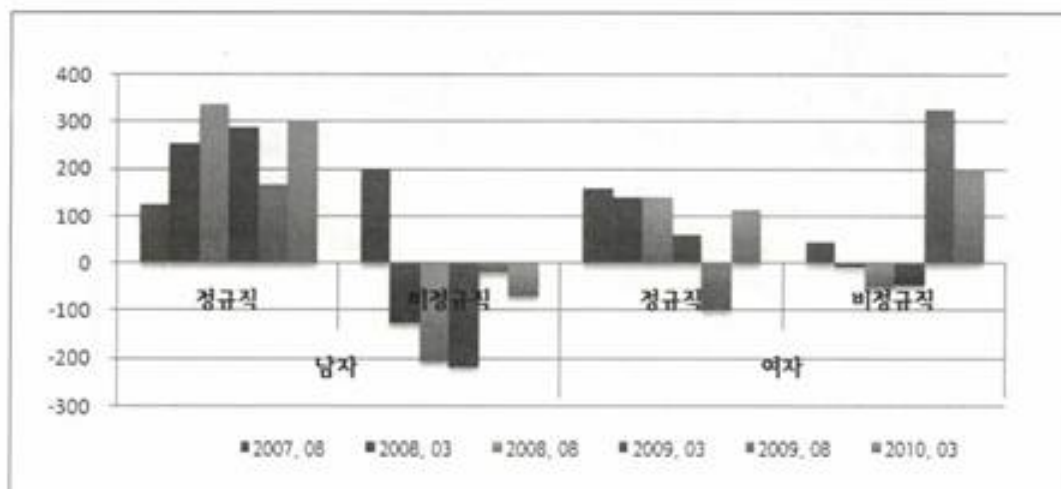
■ 표 VI-4 ■ 성별 비정규직 규모 증감 정도

성별	항목	2007. 08	2008. 03	2008. 08	2009. 03	2009. 08	2010. 03
남자	정규직	124	256	339	288	166	305
	비정규직	202	-125	-208	-217	-18	-71
여자	정규직	161	142	140	59	-100	112
	비정규직	44	-10	-50	-47	327	19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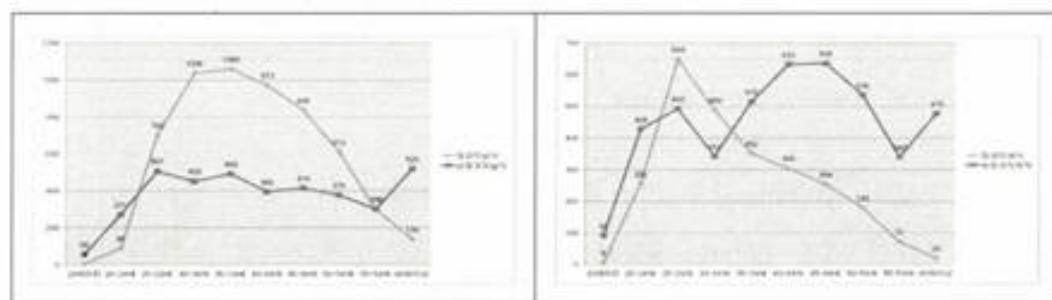
남성 근로자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 근로자 집단의 경우 2009년 8월과 2010년 3월에 비정규직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 집단에서는 2007년 3월 이래 2010년 3월 현재까지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는 반면, 여성 근로자 집단의 경

우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가장 컸던 2009년 8월에 정규직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Ⅱ 그림 VI-2 Ⅱ 성별 비정규직 규모 증감 정도

남녀 비정규직의 규모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 초반 이하의 저연령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만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 규모보다 크다. 그러나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유선, 2010). 김유선(2010)에 의하면 2010년 3월 현재 성 및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는 다음과 같다(단위는 천명임).



Ⅱ 그림 VI-3 Ⅱ 성·고용형태·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분포

혼인여부를 놓고 살펴보아도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김유선(2010)에 따르면 비정규직 828만 명 가운데 기혼여성은 336만 명(40.5%), 기혼남성은 253만 명(30.6%)으로 기혼자가 71.1%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및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성 51.5%, 기혼남성 35.7%, 미혼여성 53.3%, 기혼여성 68.0%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김유선, 2010). 미혼자의 비정규직 규모는 남녀 모두 50%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기혼자의 경우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의 약 2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간제 근로에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시간제 근로자 중 기혼남성은 3.3%이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17.8%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표 VI-5 성 및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규모 (2010년 3월)

	수(천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434	7,107	2,137	4,938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180	4,573	999	1,582	48.5	64.3	46.7	32.0
비정규직	1,254	2,534	1,138	3,356	51.5	35.7	53.3	68.0
임시근로	1,233	2,472	1,121	3,300	50.7	34.8	52.5	66.8
장기임시근로	724	1,467	619	2,086	29.7	20.6	29.0	42.2
한시근로	509	1,005	501	1,214	20.9	14.1	23.4	24.6
(기간제근로)	353	807	353	876	14.5	11.4	16.5	17.7
시간제근로	166	232	250	877	6.8	3.3	11.7	17.8
호출근로	116	460	14	267	4.8	6.5	0.7	5.4
특수고용	43	140	39	367	1.8	2.0	1.8	7.4
파견근로	36	67	24	84	1.5	0.9	1.1	1.7
용역근로	54	259	28	209	2.2	3.6	1.3	4.2
가내근로	1	6	-	58	0.0	0.1	-	1.2

※ 자료 : 김유선(2010)

지금까지 남녀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은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남성은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여성

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감소했지만, 성별로 보면 이는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여성은 2007년 3월에 비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규모가 커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저연령층과 고령층에서만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크지만, 여성은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보다 높다. 혼인여부와 교차하여 분석해보면 미혼 집단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혼 집단에서는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의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은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혼 여성에게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이 정규직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

1) 임금

노동부에서 2009년도 고용노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월 기준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 근로자가 11,537원일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7,586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대비 65.8%임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는 시간당 정액급여는 기간제 근로자(8,408원), 일일근로자(8,193원), 한시적근로자(7,323원), 단시간근로자(6,422원)순으로 나타난다.

표 VI-6 고용형태별 시간당 정액급여 (2010년 3월)

(단위: 천원, 원, %)

구분	월급여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 특별급여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	중위수			
전체	1,960	1,849	1,500	111	3,801	10,591
정규직근로자	2,199	2,063	1,700	135	4,884	11,537
비정규직근로자	1,202	1,167	1,000	35	358	7,586
(정규직 대비 비율)	(54.7)	(56.5)	(58.8)	(26.0)	(7.3)	(65.8)
파견·용역근로자	1,263	1,185	1,062	78	352	6,413
일일근로자	1,272	1,255	1,100	17	24	8,193
단시간근로자	645	638	586	7	60	6,422
기간제근로자	1,511	1,446	1,200	65	1,035	8,408
한시적근로자	1,314	1,294	1,200	20	81	7,323
재택/가내근로자	813	802	700	11	200	5,492

※ 주: ()는 정규직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급여부분 비율

※ 자료: 노동부(2010)

고용형태별 시간당 정액급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12,216원이고 여성은 7,891원으로 여성은 남성의 6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정규직 남성의 66.7%에 해당하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남성의 70.8%에 해당한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형태별 남녀간 시간당 정액급여 차이는 일일근로자(4,042원)가 가장 크고, 단시간 근로자(2,421원), 재택/가내 근로자(2,115원)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7 성 및 고용형태별 시간당 정액급여

(단위 :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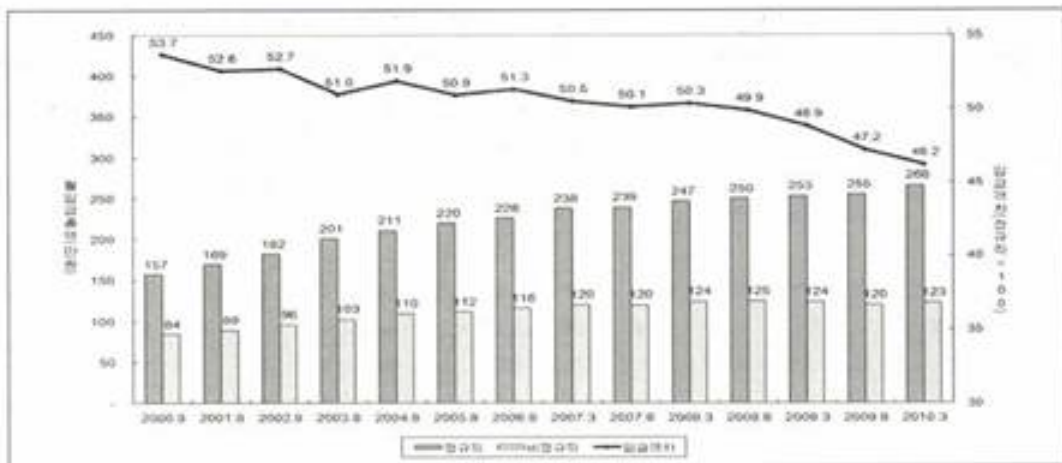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녀간 차이
전체	10,591	12,216	7,891 [64.6]	4,325
정규직근로자	11,537	12,973	8,654 [66.7]	4,319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대비 비율)	7,586 (65.8)	8,922 (68.8)	6,315 (73.0) [70.8]	2,607
파견·용역근로자	6,413	6,472	6,355 [98.2]	117
일일근로자	8,193	9,678	5,636 [58.2]	4,042
단시간근로자	6,422	8,119	5,698 [70.2]	2,421
기간제근로자	8,408	9,441	7,376 [78.1]	2,065
한시적근로자	7,323	8,085	6,757 [83.6]	1,328
재택/가내근로자	5,492	7,380	5,265 [71.3]	2,115

※ 주 : ()는 정규직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 주 : []는 남성대비 여성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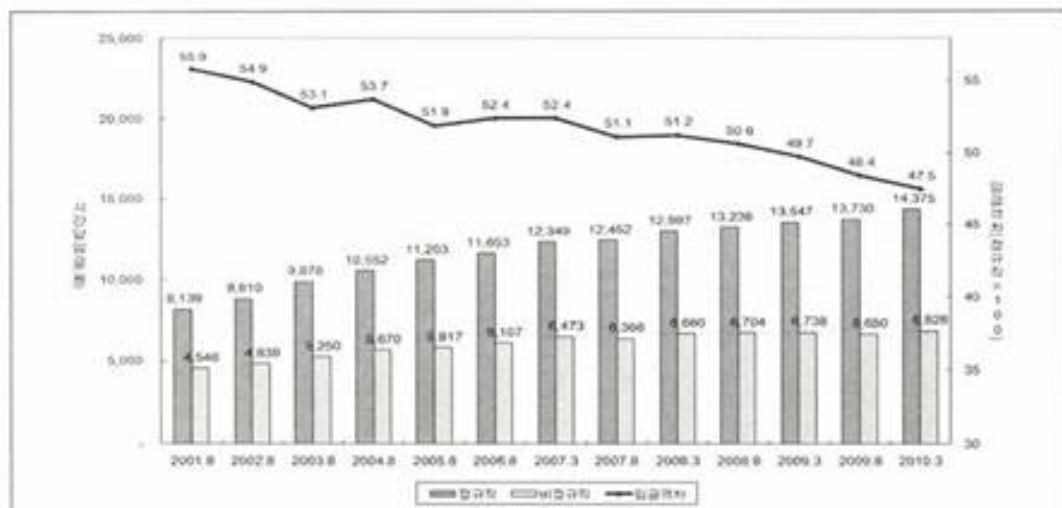
※ 자료 : 노동부(2010)

김유선(2010)의 연구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009년 3월 253만원에서 2010년 3월 266만원으로 13만원(5.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4만원에서 123만원으로 1만원(-0.6%) 하락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8.9%에서 46.2%로 확대되었다(김유선, 2010). 2000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변화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Ⅱ 그림 VI-4 Ⅱ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추이

또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2009년 3월에 비해 2010년 3월에는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규직은 6.1%가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3%만 인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년 사이에 2.2%가 확대되었다(김유선, 2010). 이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그리고 파견근로와 가내근로는 시간당 임금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Ⅱ 그림 VI-5 Ⅱ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표 VI-8 연도별·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2010년 3월)

	금액(원)							격차(%)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임금노동자	9,068	9,151	9,597	9,831	9,985	10,059	10,613	73.4	73.5	73.8	74.3	73.7	73.3	73.8
정규직	12,349	12,452	12,997	13,238	13,547	13,730	14,3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473	6,366	6,660	6,704	6,738	6,650	6,828	52.4	51.1	51.2	50.6	49.7	48.4	47.5
임시근로	6,465	6,355	6,617	6,681	6,717	6,620	6,788	52.4	51.0	50.9	50.5	49.6	48.2	47.2
청가임시근로	5,933	5,824	6,057	6,119	5,996	6,232	6,297	48.0	46.8	46.6	46.2	44.3	45.4	43.8
한시근로	7,224	7,122	7,432	7,495	7,675	7,110	7,532	58.5	57.2	57.2	56.6	56.7	51.8	52.4
(기간제근로)	7,868	7,801	8,395	8,277	8,401	7,616	8,168	63.7	62.7	64.6	62.5	62.0	55.5	56.8
시간제근로	7,332	6,802	6,839	7,138	6,753	6,533	6,721	59.4	54.6	52.6	53.9	49.9	47.6	46.8
호출근로	5,373	5,312	5,444	5,643	5,112	5,534	5,555	43.5	42.7	41.9	42.6	37.7	40.3	38.6
특수고용	8,044	8,161	9,170	8,791	8,304	8,762	9,150	65.1	65.5	70.6	66.4	61.3	63.8	63.7
파견근로	6,887	7,238	7,472	7,863	8,099	8,103	7,821	55.8	58.1	57.5	59.4	59.8	59.0	54.4
용역근로	4,883	4,944	5,470	5,411	5,409	5,567	5,923	39.5	39.7	42.1	40.9	39.9	40.5	41.2
가내근로	4,483	3,567	5,063	4,015	4,195	4,315	3,128	36.3	28.6	39.0	30.3	31.0	31.4	21.8

※ 자료 : 김유선(2010)

한편,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김유선(2010)에 따르면,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2007년 3월 64.2%에서 2010년 3월 61.6%로 2.6%p 확대되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2.4%에서 47.5%로 4.9%p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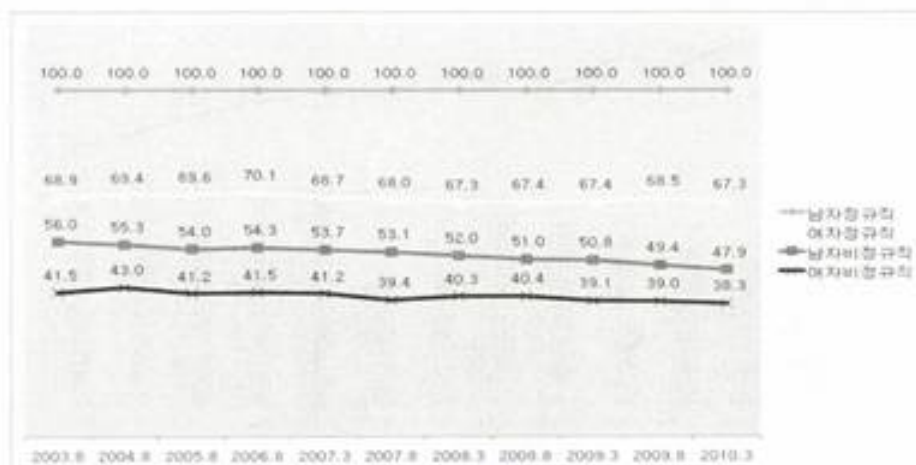


그림 VI-6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3.7%에서 47.9%로 5.8%p, 여자 정규직은 68.7%에서 67.3%로 1.4%p, 여자 비정규직은 41.2%에서 38.3%로 2.9%p 확대되었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김유선, 2010).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총급여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남성의 총급여액은 여성의 총급여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9 성별·고용형태별 총급여액

	남성	여성	계	성별차이
전체근로자	2,284	1,422	1,960	-862
정규직 근로자	2,477	1,641	2,199	-836
비정규직 근로자	1,445	971	1,202	-474
고용형태차이	1,032	670	99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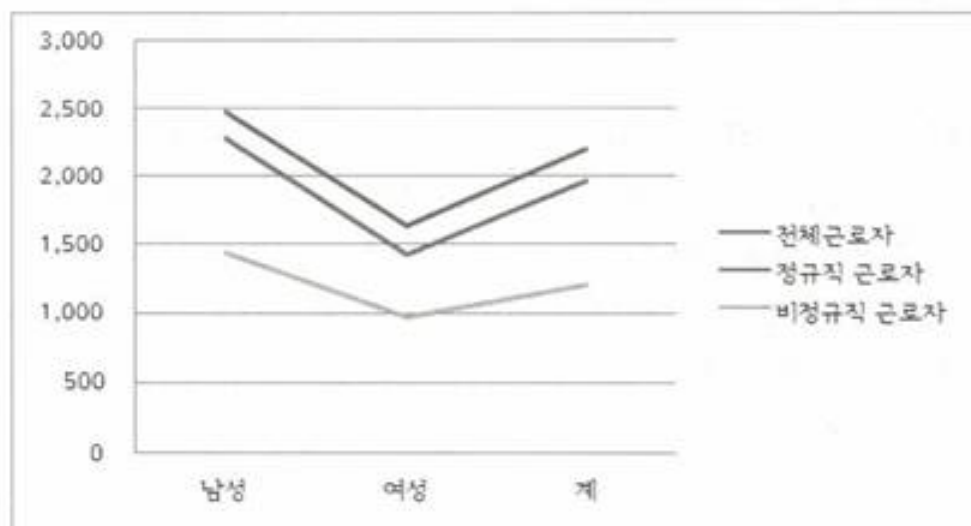


그림 VI-7 성 및 고용형태별 총급여액

2)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노동부(2010)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22.5이며,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23.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20.4일로 정규직 근로자 대비 88.5%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일일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가장 작은 18.6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10 고용형태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

구분	근로일수	월근로시간	소정실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전체	22.5	189.0	178.7	10.3
정규직근로자	23.1	195.7	183.5	12.2
비정규직근로자	20.4	167.4	163.2	4.2
(정규직 대비 비율)	(88.5)	(85.5)	(88.9)	(34.6)
파견·용역근로자	21.2	206.7	196.6	10.1
일일근로자	18.6	157.0	156.0	1.0
단시간근로자	19.6	124.4	123.3	1.1
기간제근로자	22.2	189.3	181.0	8.4
한시적근로자	22.3	193.4	190.8	2.6
재택/가내근로자	19.7	160.8	159.1	1.7

※ 주 : ()는 정규직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

※ 자료 : 노동부(2010)

고용형태별 근로시간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월근로시간의 경우 남성은 192.6시간, 여성은 182.9시간으로 나타난다.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남성 정규직의 88.6%에 해당하는 시간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여성 정규직의 83.0%에 해당하는 시간을 일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 92.1%에 해당하는 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11 성 및 고용형태별 월근로시간

(단위 : 시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녀간 차이
전체	189.0	192.6	182.9 [95.0]	9.7
정규직근로자	195.7	196.8	193.7 [98.4]	3.1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대비 비율)	167.4 (85.5)	174.4 (88.6)	160.7 (83.0) [92.1]	13.7
파견·용역근로자	206.7	234.1	179.7 [76.8]	54.4
일일근로자	157.0	155.4	159.9 [102.9]	-4.5
단시간근로자	124.4	124.4	124.4 [100.0]	0.0
기간제근로자	189.3	196.3	182.3 [92.9]	14.0
한시적근로자	193.4	191.0	195.2 [102.2]	-4.2
재택/가내근로자	160.8	203.7	155.6 [76.4]	48.1

※ 주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월근로시간 비율

※ 주 : []는 남성 대비 여성의 월근로시간 비율

※ 자료 : 노동부(2010)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2009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총 근로일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현재 전체 근로자는 22.5일 일하고 있으며 남성이 22.4일, 여성이 22.5일 일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12 성 및 고용형태별 총 근로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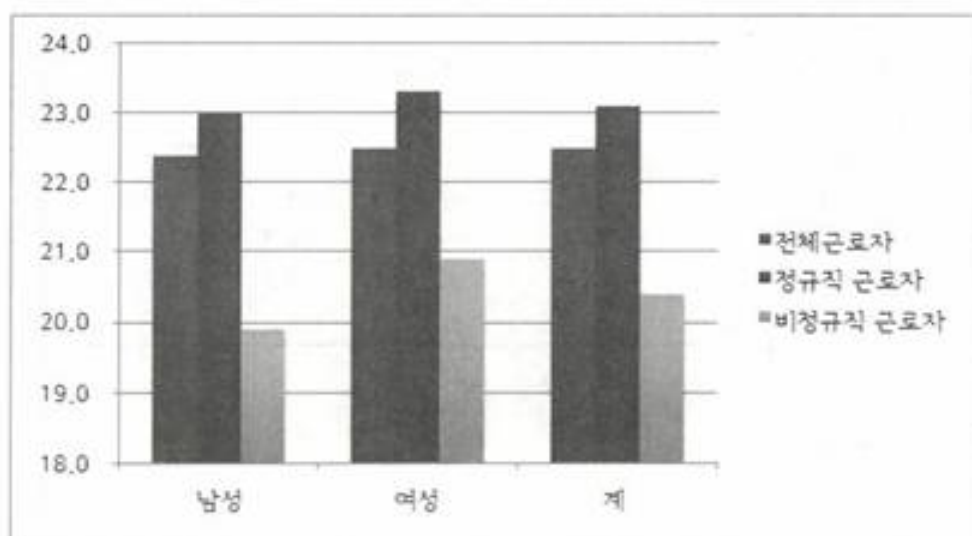
(단위 : 일)

	남성	여성	계	성별차이
전체근로자	22.4	22.5	22.5	0.1
정규직 근로자	23.0	23.3	23.1	0.3
비정규직 근로자	19.9	20.9	20.4	1.0
고용형태차이	3.1	2.4	2.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근로자 중 남성은 23.0일, 여성은 23.3일로 여성이 남성보다 0.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남성이 19.9일, 여성이

20.9일 일하고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1일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정규직이 3.1일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정규직이 2.4일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Ⅰ그림 VI-8Ⅰ 성 및 고용형태별 총 근로일수

Ⅰ표 VI-13Ⅰ 성 및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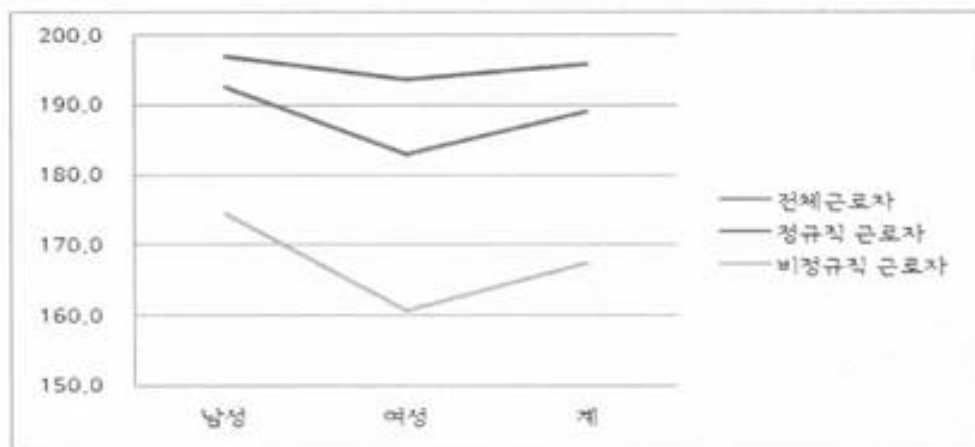
(단위 : 시간)

	남성	여성	계	성별차이
전체근로자	192.6	182.9	189.0	-9.7
정규직 근로자	196.8	193.7	195.7	-3.1
비정규직 근로자	174.4	160.7	167.4	-13.7
고용형태차이	22.4	33.0	28.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전체 근로자는 189시간 일하고 있었고, 남성이 192.6시간, 여성이 182.9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9.7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196.8시간, 여성은 193.7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1시간 더 일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남성은 174.4시간, 여성은 160.7시간으로 비정규직 남성의 근로시간이 여성보다 13.7시간 더 많았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2.4시간 더 일하고 있으며, 여성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33시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그림 VI-9 Ⅱ 성 및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

김유선(2010)은 고용형태별 노동시간에 관해 조금 다른 분석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의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둘 다 2001년 8월에 비해 2010년 3월에는 단축되었다. 그런데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과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둘 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VI-14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10년 3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07년 3월	07년 8월	08년 3월	08년 8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36 미만	36- 40	41- 44	45- 48	49- 52	53 초과
임금노동자	45.9	45.9	45.3	45.1	44.4	43.9	43.6	9.8	45.1	7.3	14.1	7.6	16.1
정규직	46.2	46.0	45.4	45.0	44.5	44.2	44.0	0.2	59.4	9.6	13.6	6.7	10.5
비정규직	45.8	45.8	45.2	45.2	44.2	43.5	43.2	19.4	30.7	5.1	14.5	8.5	21.8
임시근로	45.7	45.7	45.2	45.2	44.2	43.5	43.1	19.6	30.4	5.1	14.6	8.5	21.8
장기임시근로	46.2	46.6	45.4	46.0	45.0	44.6	44.2	19.6	24.7	4.5	16.5	10.2	24.5
한시근로	45.0	44.5	44.8	44.0	43.2	42.0	41.5	19.6	39.1	6.1	11.7	5.9	17.6
(기간제근로)	44.5	44.1	44.2	43.8	42.9	41.5	40.9	17.4	45.9	7.0	11.0	4.7	14.0
시간제근로	21.2	21.7	21.8	21.5	21.2	21.3	21.0	99.9	0.1				
호출근로	39.2	40.9	40.2	41.6	40.2	39.9	39.6	32.9	24.4	1.3	12.6	15.3	13.4
특수고용	40.4	41.3	41.9	41.6	40.8	40.8	40.7	15.8	52.0	2.9	12.7	8.1	8.5
파견근로	46.4	46.0	47.2	44.2	42.8	41.3	43.7	11.3	48.6	3.8	12.7	4.7	18.9
용역근로	50.7	51.0	51.2	49.6	49.0	49.0	48.3	7.1	40.5	5.4	12.0	4.5	30.5
가내근로	32.7	35.8	36.1	30.5	31.4	32.9	30.6	58.5	24.6	3.1	7.7	3.1	3.1

※ 자료 : 김유선(2010)

3)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부(2010)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해 모두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재보험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가장 작고 국민연금이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크다.

표 VI-1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고용보험 ¹⁾	건강보험 ²⁾	국민연금 ³⁾	산재보험 ⁴⁾
전체	85.9	87.4	87.1	96.2
정규직근로자	95.6	96.6	96.4	97.0
비정규직근로자	51.9	49.7	46.8	92.3
파견·용역근로자	90.4	90.3	88.8	95.0
일일근로자	36.8	14.8	12.5	92.3
단시간근로자	27.1	25.4	24.7	82.9
기간제근로자	81.5	84.3	81.2	96.3
한시적근로자	25.1	17.5	17.7	84.2
재택/가내근로자	15.2	18.3	21.0	73.5

※ 주 : 1)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2)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3)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4)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 자료 : 노동부(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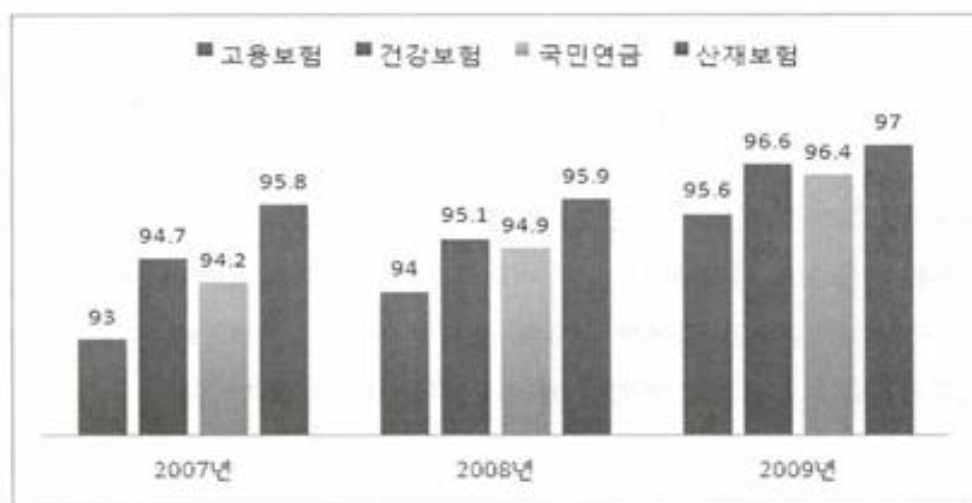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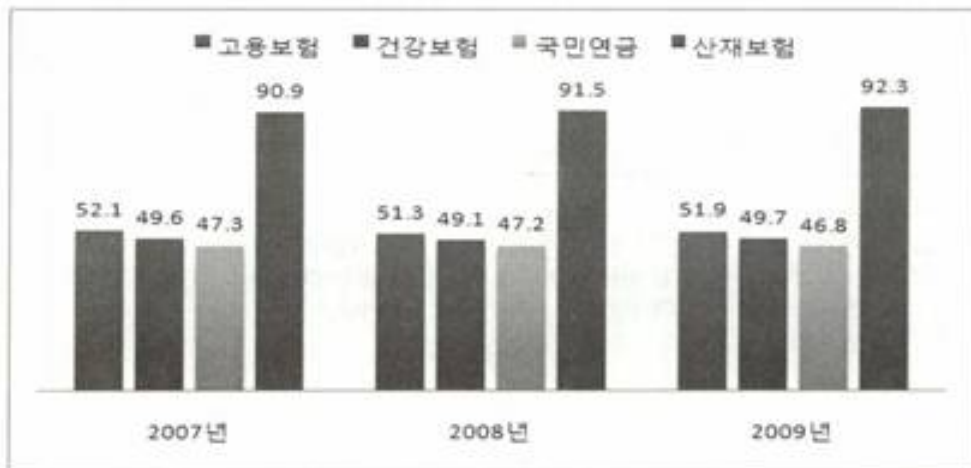


그림 VI-10 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전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의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고용형태

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해마다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그림 VI-11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김유선(2010)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최근 들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하고 있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서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로는 근본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4) 상여금·퇴직금 적용 및 노동조합 가입률

노동부(2010)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및 퇴직금 적용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고 노동조합 가입률 또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여금과 퇴직금 적용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일일근로자의

적용률이 가장 낮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상여금 적용률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 가입률은 단시간 근로자와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으며, 재택/가내 근로자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I-16 고용형태별 상여금·퇴직금 적용률 및 노조 가입률

(단위 : %)

구분	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전체	64.4	76.0	13.2
정규직근로자	77.9	88.0	16.8
비정규직근로자	21.5	38.0	2.0
파견·용역근로자	33.9	83.0	3.4
일일근로자	5.0	8.5	1.2
단시간근로자	7.8	22.8	0.7
기간제근로자	47.6	71.5	3.7
한시적근로자	12.8	12.3	0.6
재택/가내근로자	13.3	16.9	0.3

※ 주 : 노동부(2010)

노조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는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률은 최근 3년간(2007~2009년) 그 격차가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정규직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6.8% 이지만, 비정규직은 2%로 고용형태에 따라 노조가입률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7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률 비교

(단위 : %)

	2007년	2008년	2009년
정규근로자	14.8	15.6	16.8
비정규근로자	2.5	2.9	2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이	12.3	12.7	14.8

※ 주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수고용형태는 제외함

※ 자료 :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그림 VI-12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 현황 그림 VI-13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 차이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임금의 경우 임금 총액이 아닌 시간당 정액급여로 비교해 보아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남성의 임금보다 여성의 임금이 낮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에 있어 가장 낮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가 더 열악해 질 우려가 있다.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더 적은 시간 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성별 차이는 유효하게 나타나는데,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더 적은 시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과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비중에서 둘 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이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해마다 상승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적용률이 훨씬 낮으며, 노조 가입률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규모가 이미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또한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여성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인다.

제3절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과 여성고용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시간제 근로형태 제도화 및 확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퍼플잡(Purple Job 혹은 Purple Collar Job)'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새로운 근무형태는 "거시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미시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근로자의 일과 삶(가정)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확산하고자 하는 일자리 형태"이다(김태홍 외, 2009).

김태홍 외(2009)에 따르면 퍼플잡은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고용계약기간이 다양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퍼플잡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

시간제도 및 유연한 근무형태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논의된다. 여기에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에는 시간제 근로형태와 단시간 정사원제도가 포함된다. 시간제 근로형태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기업별로 유연근로 및 근무형태별 적합 직무 및 대상 근로자집단, 관리제도 등을 개발 혹은 발굴하고 이러한 제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단시간 정사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에 단시간 정사원제도 도입이 미비하므로 정부 및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양질의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 확산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고 있다.

단지 퍼플잡이 아니더라도 단시간 근로는 여성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주장되어 온 바 있다. 이주희 외(2006)는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부분근무제와 같은 유연한 고용형태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한 외(2007) 역시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 병행'을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므로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 양질의 단시간 근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전제하는 현재의 성별 구조 하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근무형태 중 하나로 단시간 근로를 제안한다. 단시간 근로형태를 통해 일터를 떠난 여성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 동시에,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여성들에게 절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일-가족 양립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단시간 근로형태는 그 시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일-가족 양립이 여성들의 노동시간을 희생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여성들에게 단시간 근로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족 양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에는 사적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할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이러한 전제는 성역할 통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성별을 떠나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국미에 외 옮김, 2010). 여성들이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주된 사유가 '육아와 가사 병행'이라는 점(김정한 외, 2007)은 여성들이 단시간 근로를 가족적 사유로 인해 '선호'하거나 '스스로 선택'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별 분업에 의해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경제 및 사회활동, 돌봄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배타적으로 부과되었을 때부터 일-가족 갈등의 문제는 제기된다. 이러한 전제에 도전하지 않을 때, 일-가족 갈등의 해결책은 누군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도출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 도전하지 않는 사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 사람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국미에 외 옮김, 2010).

이러한 맥락에서 퍼플잡이 여성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퍼플잡 도입으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여성노동력의 지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숙희(2010)는 퍼플잡의 목적이 남녀 근로자 모두의 일·생활 조화를 지원하는 것임에 주목하면서, 퍼플잡의 활성화를 통해 장시간 근무의 근로문화를 개선하여 남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퍼플잡 확산을 통해 여성 근로자가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경력단절과 이에 따른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퍼플잡의 확산이 명시적으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게서 모두 확산될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남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가족 양립 지원책인 육아휴직도 사용자 중 여성 비

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²⁾을 상기할 때, 퍼플잡 역시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돌봄 노동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통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념에 도전하지 않는 한, 퍼플잡 또한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³⁾ 특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에 있어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의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퍼플잡이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될 경우 여성 근로자의 지위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비정규직 상태에서 살펴 본 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현재에도 여성이 압도적(남성 26.1%, 여성 74.0%)인 상황이며 특히 기혼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김유선(2010)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약간이나마 상승하는 와중에도 시간제 근로의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재택/가내 근로자 다음으로 낮다. 시간제 근로자들은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률도 낮게 나타난다. 또한 상여금 및 퇴직금 적용률, 노조 가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혹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업무나 핵심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승진 등 경력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단시간 근로형태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직장 내 존재하는 유리벽에 의해 주요 업무 및 핵심 업무는 현재 남성들이 주로 맡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들을 단시간 근로형태로 전환하기 어려운 바, 여성 노동력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주변 업무나 단순 업무를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2) 서울시의 경우 2007년도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875명인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10명으로 여성의 1.49%에 불과하였다.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에도 2007년도 육아휴직 신청자 중 여성은 449명이고 남성은 1명(6개월 미만)이었다(김유나 외, 2009).

3) 관련하여 이주희(2010)는 퍼플잡이 남녀 모두를 위한 일자리라 하여도 보육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여성 일자리화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공보육 시설의 지속적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에서 그러하다.

또한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퍼플잡이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퍼플잡은 현재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고(최숙희, 2010),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단시간 정사원제도로써 추진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김태홍 외, 2009). 하지만 퍼플잡이 단시간 '정사원' 제도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단시간 근로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심재옥, 2010). 그럴 경우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퍼플잡의 도입을 주장할 때 해외사례로써 흔히 언급되는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최숙희(2010)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파트타임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높다. 90% 이상의 기업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업들 중 50% 이상은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다른 고용형태 근로자보다 높은 기업이다. 1990년대에 합계출산률이 급락했던 네덜란드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제를 고려했고, 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경험은 퍼플잡과 같은 단시간 근로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험을 다르게 읽을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례로 Jacobs & Gerson(2004)은 네덜란드가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짧아 가족친화적인 국가로 인식되지만, 그 이면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2차 노동자로 절하되는 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지적한다.

퍼플잡의 도입은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돌봄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과 관행에서 우리 사회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성별분업과 고용양극화를 둘러싼 통념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제의 도입은 여성고용을 주변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 김유나 외(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유선(20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 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미간행.
- 김인숙(2010), "여성부의 퍼플잡(purple job), 누구를 위한 일-가정 양립인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진보신당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광정숙의원실 주최, 「이명박 정부 여성고용정책 진단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김정한 외(2007), 『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근로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 김태홍 외(2009), 『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연구』, 여성부.
- 노동부(2010), 『20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노동부.
- 심재옥(2010), "여성고용정책, 유연근무제(퍼플잡)에 대한 의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진보신당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광정숙의원실 주최, 「이명박 정부 여성고용정책 진단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이주희 외(2006), 『경력단절 여성 취업촉진 방안』, 여성가족부.
- 이주희(2010), "이명박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진보신당 여성위원회·민주노동당 광정숙의원실 주최, 「이명박

- 정부 여성고용정책 진단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최숙희(2010), "퍼플잡 추진을 위한 과제", 『젠더리뷰』 제1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Jerry A. Jacobs & Kathleen Gerson(2004),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국미애 외 옮김(2010), 『시간을 묻다 - 노동사회와 젠더』, 한울아카데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I

서울시 경제활동상태의 성별 추이분석(2000~2009)

조연숙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VII 서울시 경제활동상태의 성별 추이분석(2000~2009)

제1절 서론

2008년도 우리나라 15~64세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54.7%로 OECD 평균인 61.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이다(OECD, Employment Outlook, 2009). 2002년 53.5%에서 2008년 54.7%로 6년 동안 약 1.2%p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 특히 대한민국 도시의 대표격으로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 그와 같은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추이분석을 통해서 서울시 여성 취업 지원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

본 분석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중 서울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추이분석을 통해서 성별 경제활동상태의 특징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경제활동상태의 특성과 실태분석 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여성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추이분석

1. 경제활동인구¹⁾

서울시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현재 5,064천 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이 42.1%, 남성이 57.9%로 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15.8%p가 높다. 2000년의 성별 경제활동인구의 차이는 18.29%p였으나 그동안 2.49%p의 차이가 좁혀진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남성도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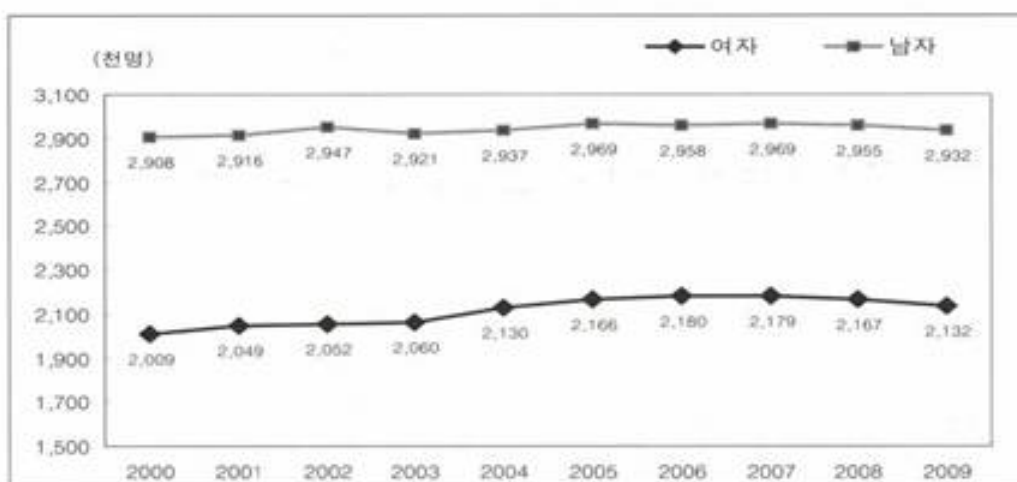
표 VII-1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추이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917	4,965	4,999	4,981	5,067	5,135	5,138	5,148	5,122	5,064
여자	2,009	2,049	2,052	2,060	2,130	2,166	2,180	2,179	2,167	2,132
남자	2,908	2,916	2,947	2,921	2,937	2,969	2,958	2,969	2,955	2,9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1)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통계청, 웹 DB).



Ⅱ 그림 VII-1 Ⅱ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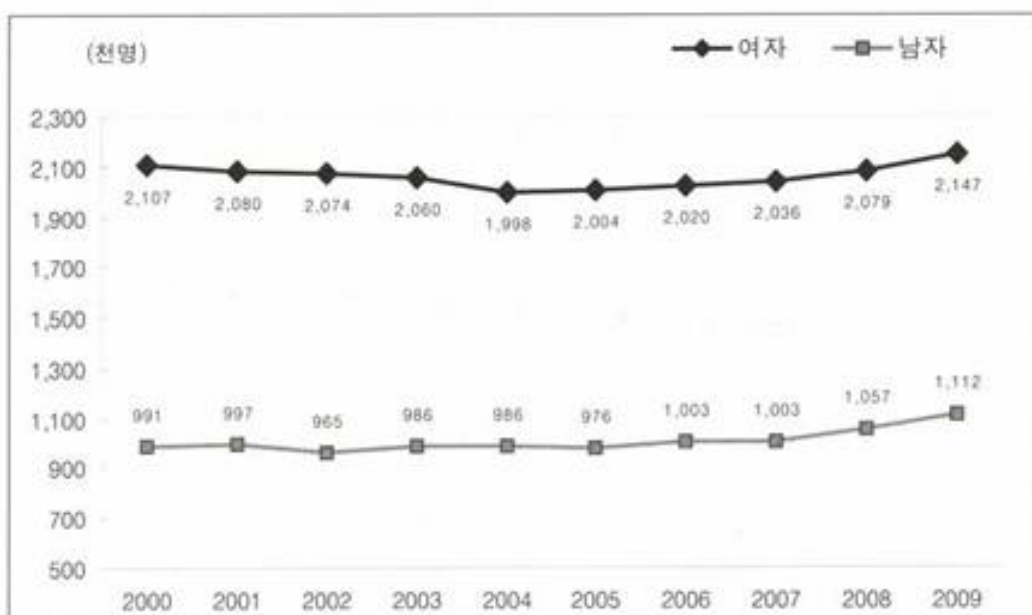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9년 3,259천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5.87%, 남성 34.13%를 차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31.77%p 더 높은 수치이다. 이는 10년전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서 약 4.2%p 좁아진 것이다. 이것은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21천명 증가한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40천명이 증가하여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성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Ⅱ 표 VII-2 Ⅱ 서울시 비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3,098	3,077	3,039	3,046	2,984	2,980	3,023	3,039	3,136	3,259
여자	2,107	2,080	2,074	2,060	1,998	2,004	2,020	2,036	2,079	2,147
남자	991	997	965	986	986	976	1,003	1,003	1,057	1,1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Ⅱ 그림 VII-2 Ⅱ 서울시 비경제활동 인구

2. 경제활동참가율

서울시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1.3%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을 정점으로 하여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62.9%에서 2008년 62%, 2009년 60.8%로 2008년에 비해 1.2%p나 낮아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비슷하게 2005년 52%로 정점에 있었으나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09년에는 50%에도 채 못 미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차이는 2000년 25.8%p에서 매해 조금씩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며, 2009년 남녀차이는 22.7%로 좁혀져서 10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3.1%p 좁혀졌다.

표 VII-3 서울시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61.3	61.7	62.2	62.1	63.0	63.3	63.0	62.9	62.0	60.8
여자	48.8	49.6	49.7	50.0	51.6	52.0	51.9	51.7	51.0	49.8
남자	74.6	74.5	75.3	74.8	75.1	75.3	74.7	74.7	73.7	72.5
남녀차이	25.8	24.9	25.6	24.8	23.5	23.3	22.8	23	22.7	2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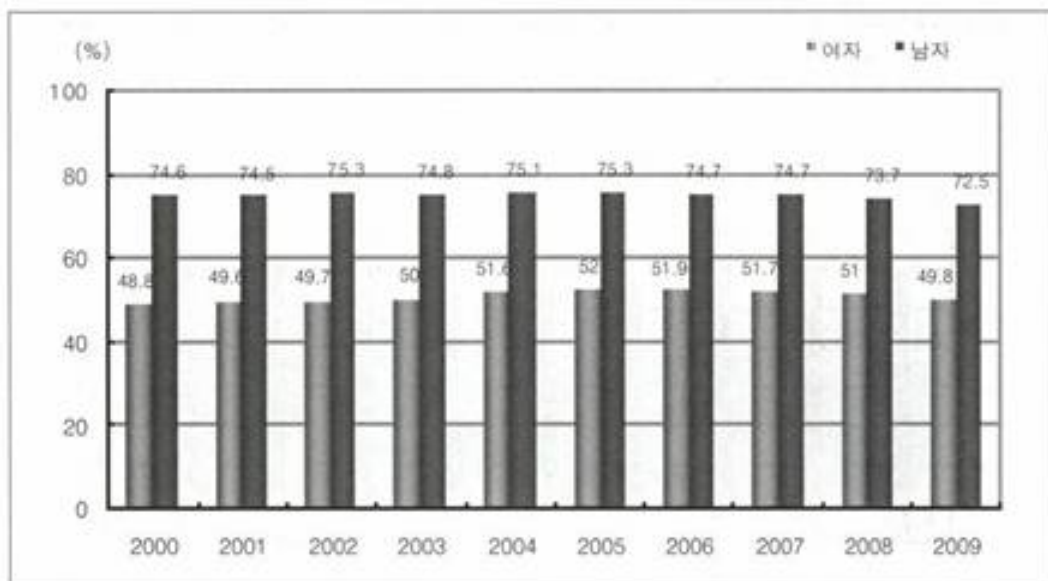


그림 VII-3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3. 고용률

고용률은 15세 이상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09년 서울시 전체 고용률은 58.1%로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0.1%p 낮아졌다. 성별로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46.7%였으나 매해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7년 50%로 정점을 찍었으나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48.1%로 낮아졌고, 이는 10년 전에 비해 1.4%p상승한 수치이다.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2000

년 70.4%에서 매해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2005년 71.5%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 68.7%로 10년 전에 비해 1.7%p 낮아졌다.

표 VII-4 서울시 고용률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58.2	58.8	59.5	59.2	60.1	60.3	60.1	60.3	59.6	58.1
여자	46.7	47.5	47.9	47.9	49.4	49.6	49.8	50.0	49.3	48.1
남자	70.4	70.6	71.7	71.2	71.4	71.5	71.1	71.3	70.5	6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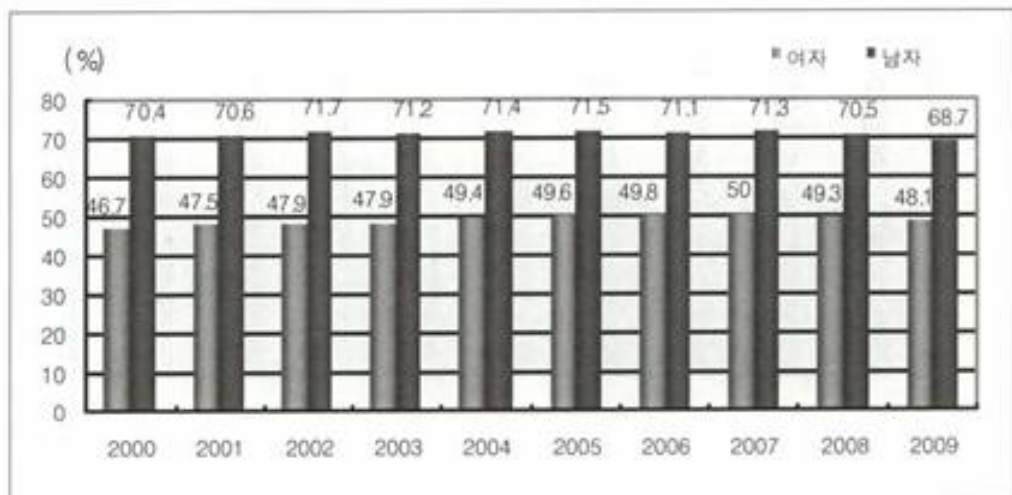


그림 VII-4 서울지역 성별 고용률 추이

4.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2009년 전체 실업률은 4.5%로 10년 전 5.1%에 비해 0.6%p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 2000년 4.2%에서 2002년에 3.6%로 낮아졌다가 2005년 4.6%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3.3%로 다시 감소되어 상승과 감소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의 실업률은 2000년 5.7%에서 2009년 5.2%로 0.5%p 감소되고 있다.

표 VII-5 서울시 실업률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5.1	4.8	4.3	4.6	4.7	4.8	4.5	4.0	3.9	4.5
여자	4.2	4.1	3.6	4.3	4.3	4.6	4.1	3.3	3.3	3.5
남자	5.7	5.2	4.9	4.8	5.0	4.9	4.8	4.6	4.3	5.2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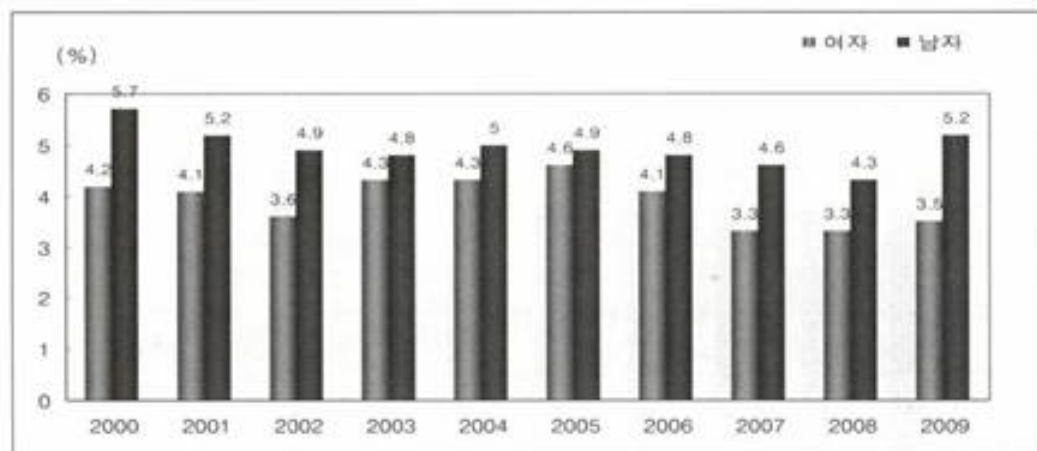


그림 VII-5 서울지역 성별 실업률

제3절 취업자의 성별 특성 분석

1. 서울시 성별 취업자 수

2009년 서울시의 전체 취업자 수는 4,835천명이며 이는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169천명 많아진 것이다. 여성의 경우, 2003년 약간 감소가 있었지만 2000년 1,924천명에서 2009년에는 2,057천명으로 133천명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2000년 2,743천명이었으나 2009년 2,779천명으로 10년 기간 동안 36천명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표 VII-6 서울시 성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668	4,727	4,783	4,753	4,831	4,890	4,906	4,940	4,922	4,835
여자	1,924	1,963	1,978	1,972	2,039	2,068	2,091	2,107	2,095	2,057
남자	2,743	2,764	2,804	2,781	2,792	2,822	2,815	2,834	2,827	2,7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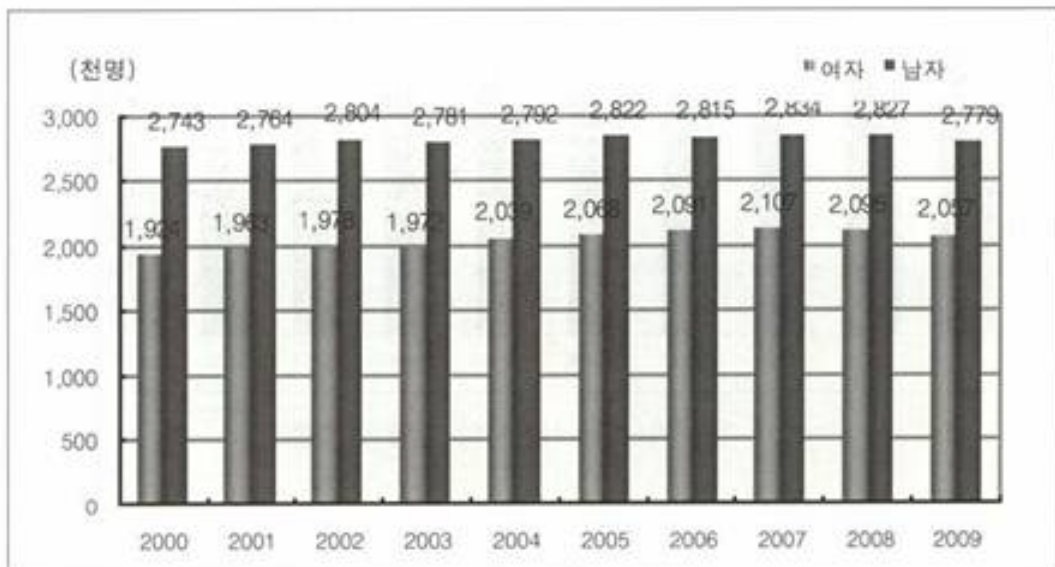


그림 VII-6 서울시 성별 취업자 수 추이

2.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추이

취업자 중 서울시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29세 사이의 청년 취업자 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39세는 감소와 증가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세 이후의 취업자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40~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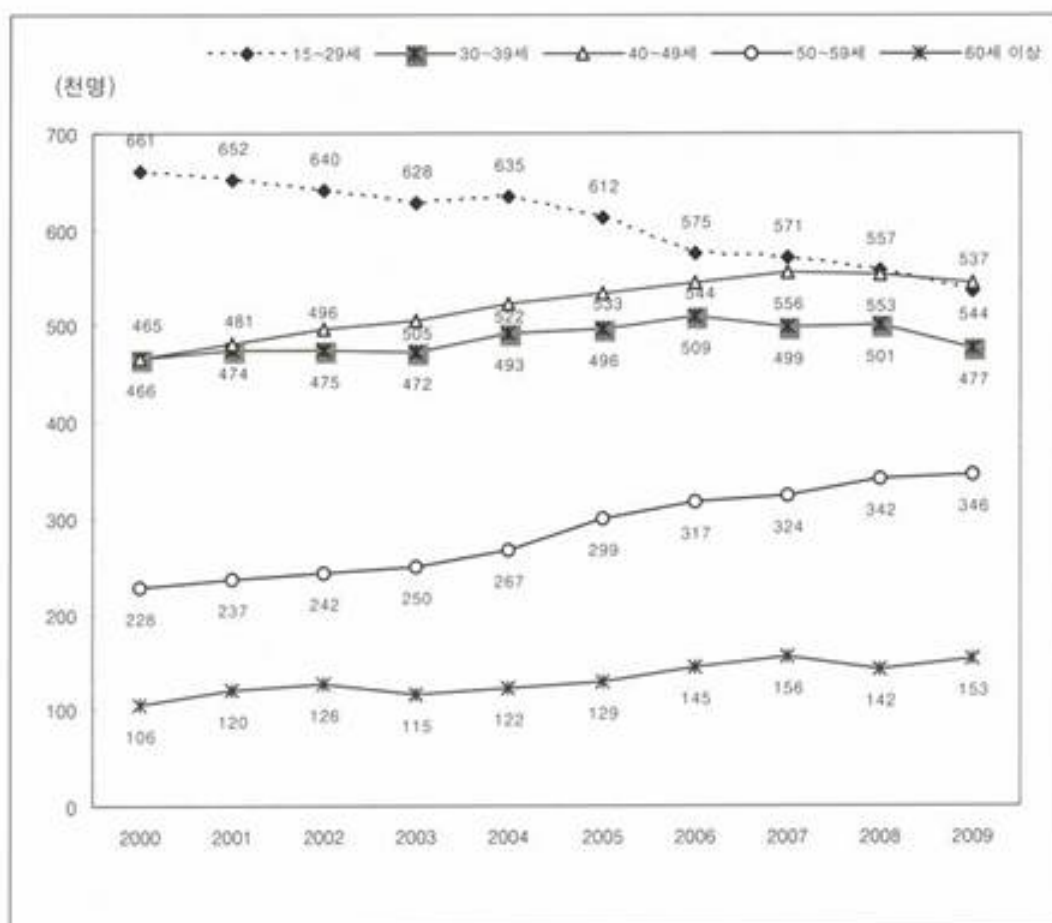
여성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 2009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0~59세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의 폭도 비교적 큰 편이어서 2000년 기준으로 34.1%가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40대 이후 여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노후에 대한 준비와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준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직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7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29세	661	652	640	628	635	612	575	571	557	537
30~39세	466	474	475	472	493	496	509	499	501	477
40~49세	465	481	496	505	522	533	544	556	553	544
50~59세	228	237	242	250	267	299	317	324	342	346
60세 이상	106	120	126	115	122	129	145	156	142	153
전체	1,924	1,963	1,978	1,972	2,039	2,068	2,091	2,107	2,095	2,0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Ⅱ 그림 Ⅶ-7 Ⅱ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3. 여성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추이

서울시 여성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정도에 따른 취업자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학력 여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학력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대졸여성 취업자 수가 고졸여성 취업자 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VII-8 서울지역 여성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1,924	1,963	1,978	1,972	2,039	2,068	2,091	2,107	2,095	2,057
초등학교졸	273	269	251	216	225	227	221	215	200	186
중졸	314	306	308	249	248	251	240	216	209	201
고졸	855	854	856	868	870	861	853	842	817	789
대졸이상	482	535	564	639	695	729	776	835	868	8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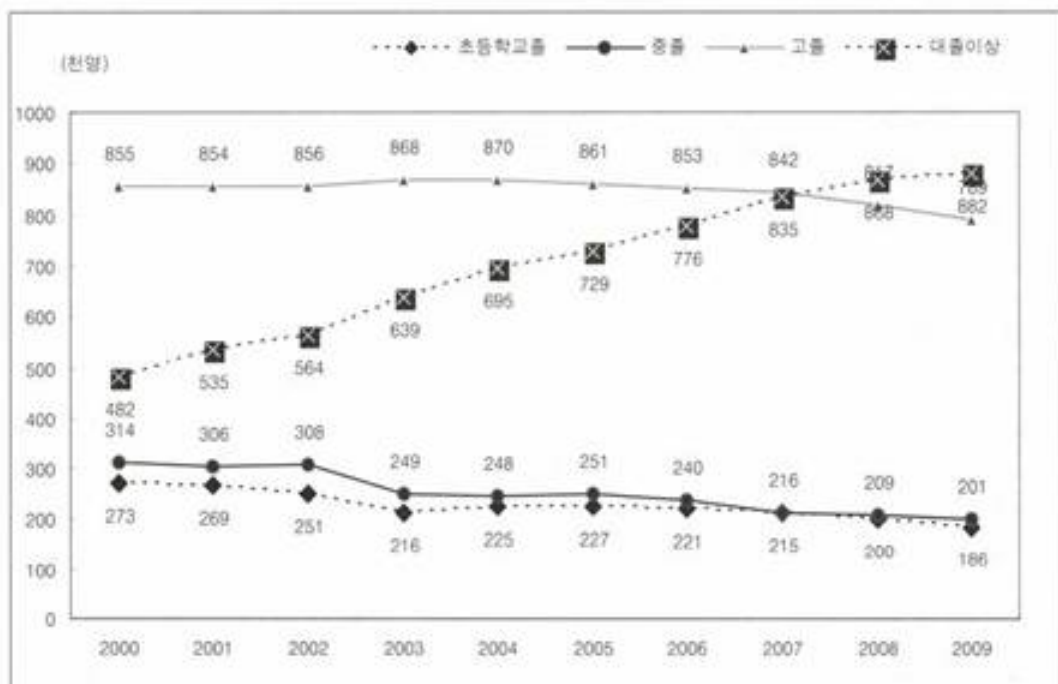


그림 VII-8 서울지역 여성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4.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

서울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 따른 산업별 여성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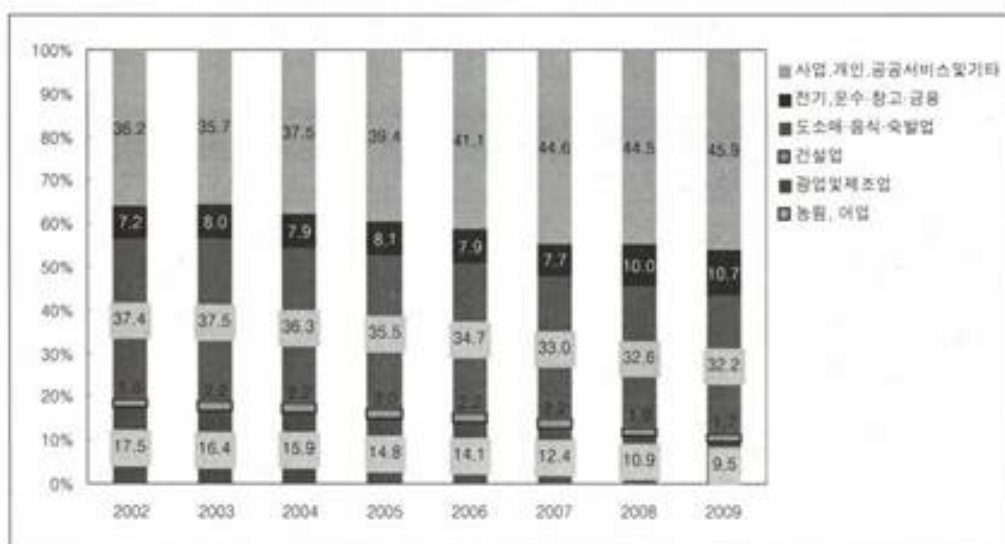
여 2002년 여성취업자 중 17.5%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 9.5%에 불과하여 8%p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2002년 여성 취업자 중 36.2%에서 2009년 45.9%로 10년간 9.7%p 증가하였다. 이것은 서울시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요구되는 산업의 인력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이다. 한편, 그동안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2002년 37.4%에서 2009년 32.2%로 5.2%p 감소하였다.

표 VII-9 서울지역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1,924	1,963	1,978	1,972	2,039	2,068	2,091	2,107	2,095	2,057
농림, 어업 합계	3	4	4	4	3	2	3	3	1	1
광업 및 제조업	...	...	347	323	325	307	294	261	229	195
건설업	...	...	29	44	45	42	45	46	40	34
도소매·음식·숙박업	...	...	741	740	740	735	725	695	682	662
전기·운수·창고·금융	...	...	142	157	161	167	165	162	210	2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	...	716	703	765	816	859	941	933	943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8)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조사 각년도



Ⅱ 그림 VII-9 Ⅱ 서울지역 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조성분포²⁾

5.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

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2001년 0.7%에서 2009년 역시 0.7%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19.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24.5%로 해당기간 동안 5.2%p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나 중간 관리자 수준에서 여성취업자 비율이 약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비중은 2001년 22.1%였으나 2009년 16.4%로 감소하여 해당기간 동안 5.7%p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2001년 9.0%에서 2009년 14.1%로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02년 이전 조사는 동일한 업종군으로 조사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하여 2002년부터 결과를 비교하였음

표 VII-10 서울지역 여성의 직종별 취업자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1,883	1,903	1,978	1,972	2,039	2,068	2,091	2,107	2,095	2,057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8	14	12	13	14	12	10	16	15	1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50	367	387	414	427	442	467	496	525	504
사무종사자	353	367	405	440	455	450	458	477	465	452
서비스종사자	703	420	436	390	431	453	455	442	437	338
판매종사자	0	339	345	329	312	310	301	292	294	333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종사자	2	2	2	2	1	1	2	3	1	1
기능원 및 관련기 능종사자	240	199	183	168	161	144	122	118	112	9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25	25	21	24	26	34	27	29	27
단순노무종사자	226	171	182	195	215	229	240	237	217	29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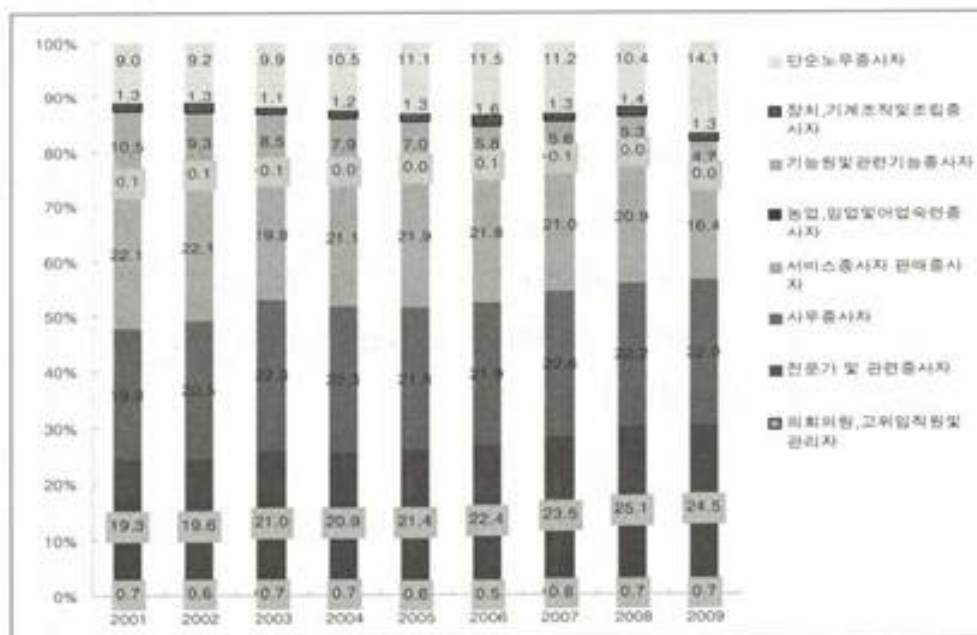


그림 VII-10 서울지역 여성의 직종별 취업자

6.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서울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먼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영업의 경우 2000년 15.4%에서 2009년 11.0%로 10년동안 4.4%p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도 2000년 12.6%에서 2009년 7.3%로 5.3%p 감소되었다.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0년 70.5%에서 2009년 77.7%로 10년 동안 7.2%p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 비중이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지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11 서울지역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1,924	1,963	1,978	1,972	2,039	2,068	2,091	2,107	2,095	2,057
자영업주	326	346	342	314	322	329	319	315	314	308
무급가족종사자	242	231	220	220	191	188	186	171	158	151
임금근로자(계)	1,356	1,387	1,417	1,438	1,526	1,551	1,586	1,621	1,624	1,598
상용	369	408	430	510	551	557	618	681	687	691
임시	691	705	693	694	713	731	712	691	692	681
일용	297	275	294	234	262	262	256	248	246	22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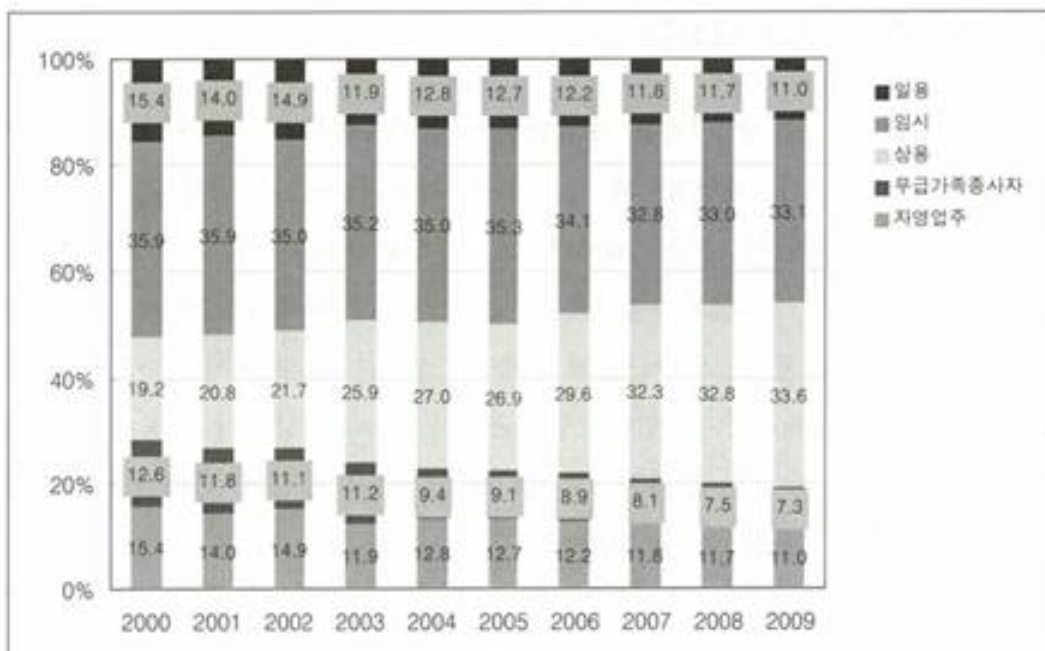


그림 VII-11 서울지역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성별 추이분석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0년 전에 비해 겨우 1.0%p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한계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요인이 됨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획기적인 정책의 마련이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내 역할분담 뿐 아니라, 기업문화의 혁신, 보육 및 돌봄

의 공공성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상태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율의 증가폭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실업율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취업자의 여성 종사상 지위에 대한 추이분석을 통해서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주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임금근로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 중 사용근로자 비율은 10년전에 비해 약 1.7배 상승하였다. 이는 여성의 근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분석에서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직업의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낮은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으로 이들 직업 분야에 대한 할당제의 강화 등 정책적인 개입을 통한 획기적인 개선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연령별 경제활동상태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15~29세의 청년층의 참가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한편, 40대 이후의 참가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어 청년층 실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특히 50대 이후 준고령층 취업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취업자의 학력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 여성의 고학력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직종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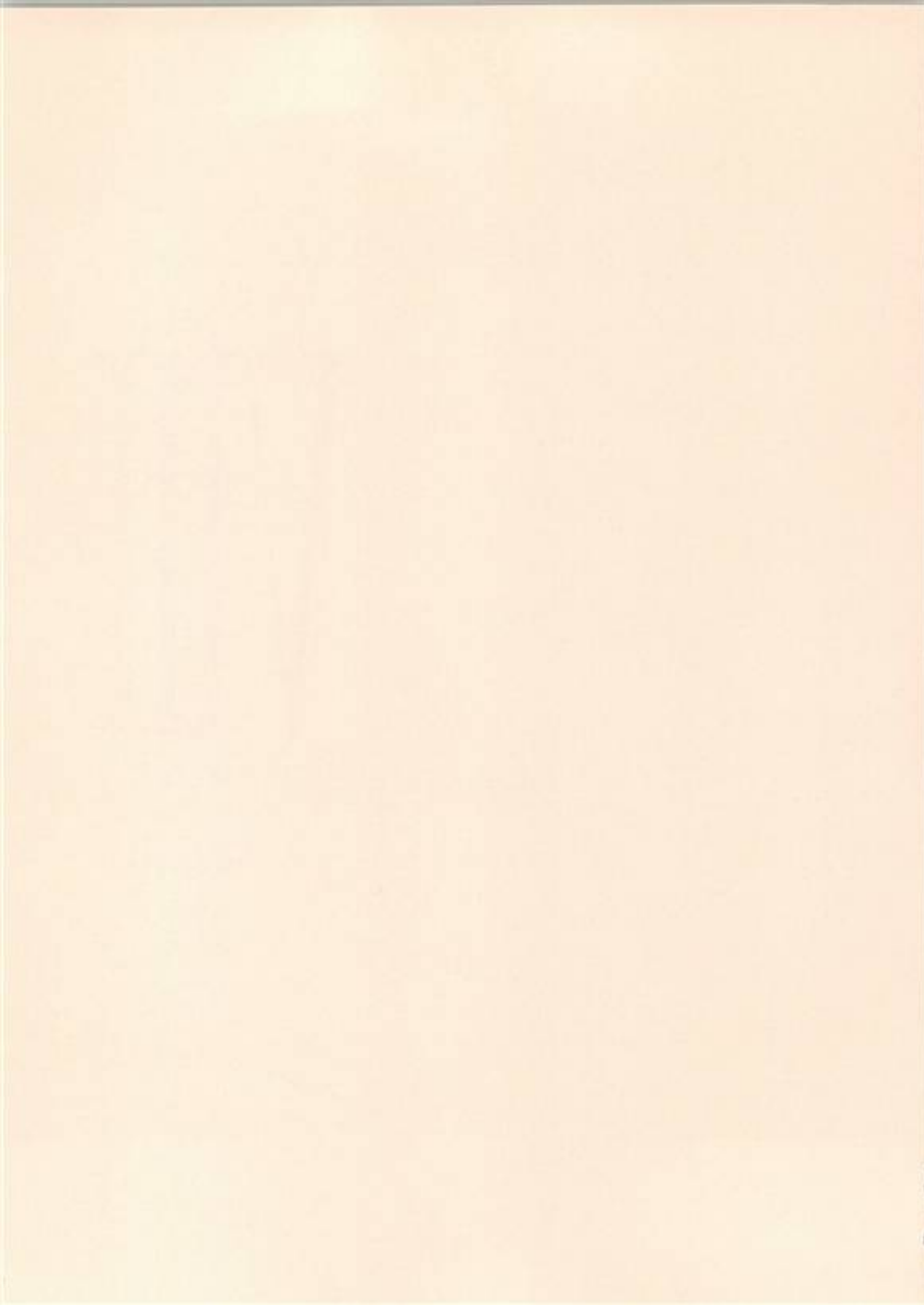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노동부(2009), 여성과 취업.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III

서울시 보육정책 전망

안현미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VIII

서울시 보육정책 전망

제1절 문제 제기

□ 한국은 보육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부문의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기능이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대기아동 과잉', '질 낮은 시설의 과잉공급',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년) 등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음¹⁾.

□ 그러나 총량적으로는 보육시설이 과잉공급²⁾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지 미흡, 민간보육시설의 반대 등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하여 과중한 보육료 부담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재 문제는 지속되어옴. 이에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늘리는 계획(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무상보육 지원대상

-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수를 10%에서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2배로 확충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를 2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 정원을 90% 이상 충족하는 보육시설이 드물. 2009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보육시설 아동정원이 1,429,105명인 것에 반하여 현원은 1,135,502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 정원 대비 현원아동의 비율이 79.5%임. 이 현상은 보육시설의 질이 낮아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현상기도 하나 해당 지역에 보육시설이 과잉 공급되어서 나타나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함.

확대를 핵심 보육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육비용에 대한 규제와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무상보육을 확대한다고 해도 부모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 질을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 실시, 양자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보육정책의 오랜 과제였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무상보육지원 계획 사이에서 보육정책의 핵심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과 무상보육 실시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 보육공급 실태와 특징을 분석함. 둘째, 외국의 보육정책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대한 함의를 살펴봄. 셋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무상보육 실시방안의 필요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분석·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임.

제2절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1. 낮은 국공립보육시설 수

- 서울시의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은 670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5,684개소

(전국 35,550개소)의 11.7%(전국 9.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 동마다 분포의 차이는 있으나 497개동으로 나누면 서울시의 경우 1개동 당 평균 1.26개소의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도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19만 3,723명(전국 117만 5,000명) 중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5만 1,702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26.7%(전국 20.6%)을 차지함.

표 VII-1 서울시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이용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

		전체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국	보육시설 수	35,550	3,187	14,368	17,359	66	370
	이용 아동 수 (현원)	1,175,049	241,994	675,714	236,892	1,655	18,794
서울	보육시설 수	5,684 (100.0)	670 (11.7)	2,497 (43.9)	2,404 (42.3)	66 (1.2)	370 (6.5)
	이용 아동 수 (현원)	193,723 (100.0)	51,702 (26.7)	103,965 (53.7)	32,578 (16.8)	460 (0.2)	5,018 (2.6%)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2009.

- 서울시의 경우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09년 기준 전체 만 0세~5세 아동의 30.9%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49,338명으로 전체 아동의 8.2%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표 VII-2 서울시 아동(만0세~만5세)의 보육시설 이용률 현황

(단위: 명, 개소, %)

연령구분	서울시 아동 수 (F)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G)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률 (G/F*100)
만0~만2세	346,331	90,873	26.2
만3~만5세	254,262	94,795	37.3
총계	600,593	185,668	30.9

주: 1) 인구 수(만0~만5세)는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통계 인구 수임.

2)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만0~만5세 2009년 12월 보육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9;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9.

2. 국공립보육시설의 높은 대기아동 수

- 이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많은 대기아동들이 존재하고 있음.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e-보육포털'을 통해 파악한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아동 수는 6만 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한 아동이 여러 개의 보육시설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된 수치임. 2010년 (재)한국보육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복등록을 제외한 실제 대기아동 수는 등록아동 38.7%로 26,316명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붙임 2> 참조). 표 V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일본의 대기아동 19,550명(전체 보육시설 대기 아동 수)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표 VIII-3 한국, 일본 대기 아동 수

(단위: 명)

	한국(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10년 기준)	일본('08년 기준) ¹⁾
대기 아동 수	26,316	19,550

주 1) 일본은 대기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대기아동 제로작전'을 추진, 2001년 35,144명에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증가가 반복된 결과, 2008년에는 19,550명으로 추산됨. 이에 '신 대기아동제로작전(2008년~2010년)'을 통해 취업 여성의 보육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함(内閣府, 2008: 46~48).

출처: 한국보육진흥원(2010), 内閣府(2008).

3. 취약계층 중심의 아동별 지원

- 민간위주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전략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이었음.
- 한국의 공보육서비스 지출 수준은 GDP대비 0.1%로 OECD 24개국 평균인 0.2%에도 못 미침³⁾. 아래의 표 VIII-4를 보면 한국의 보육료 지원방식은 소득하위 50~70%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아동별 지원방식임. 보육료 지원제도로는 차등보육료지원제도, 기본보육료지원제도,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제도, 맞벌이 부부 자녀 보육료지원제도 등이 있음.

3) 2005년 공보육서비스와 조기교육(취학전교육)을 포함한 공적 재정 지출은 한국의 경우 GDP 대비 0.2%, OECD 평균 0.6%로 한국은 매우 낮은 보육·교육 재정 지출이 이루어짐. 물론 2005년 OECD 자료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이후 막대한 보육재정 지출 증가를 감안한다면 다른 평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됨.

구분	스웨덴	프랑스	호주	독일	네덜란드	영국	한국
보육·교육비/GDP(%)	1.67	0.80	0.30	0.55	0.31	0.350	0.27
정부부담률(%)	88	73	66	91	78	70	32

출처: OECD(2006)

표 VII-4 취약계층 지원 내용⁴⁾과 지원 아동 수(명)

대상		보육료 지원 아동 수		지원기준
		전국	서울	
0~4세아 차등 보육료	영유아법정 100	32,448	4,772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차등적 (보육료 100%, 60%, 30%)으로 지급
	영유아 100	434,670	55,247	
	영유아 60	74,401	9,341	
	영유아 30	54,570	7,136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두 자녀 60	35,283	3,905	소득하위 60%~70% 이하로 차등 보육료 대상가구에게 차등적(보육 료 60%, 30%)으로 지급
	두 자녀 30	25,421	2,806	
만5세아 보육료		107,951	15,451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
장애아보육료		15,083	2,230	보육시설 이용 중인 장애아동 보 육료 100% 지급
방과후 및 기타		15,294	4,325	
계		795,121	105,213	

□ 한편 서울시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의 54.3%(전국 67.7%)인 10만 5,213명이며,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는 아동은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의 32.1%(전국 41.0%)에 불과함.

□ 즉, 이와 같은 취약계층 중심의 아동별 지원방식은 일부계층에게는 과중한 보육비용 부담을 야기함으로써 아동의 보편적 보육서비스 접근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4) 우리나라 보육지원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이외에 영아를 위한 기본보육료지원제도가 있음. 0세~2세 아동의 표준보육비용 중 정부가 고시한 보육료 이외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과거 기본보조금제도로 구분 지원하였지만 2010년부터는 기본보육료로 지원되고 있음. 2009년 기준 기본보조금 지원 아동 수는 전국 432,583명, 서울시 65,652명이 지원 받음.

제3절 서울시 보육정책 대안 논의와 그 가능성

- 서울시에서는 낮은 국공립보육시설 수, 높은 대기 아동 수, 높은 부모보육 비용 부담 등의 보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상보육 방안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논쟁을 시작함. 본 장에서는 무상보육 방안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 소요예산,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1. 무상보육 실시 방안

1) 필요성

- 무상보육이 제기된 것에는 '부모들의 과중한 보육부담'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부모들이 양육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며, 양육부담의 주된 요인이 과중한 보육비 지출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가구당 월 평균 보육·교육 총비용 332,300원이며, 이는 가구소득의 12.9%를 차지하는 금액임. 보육료 상한제를 통해 보육비 부담을 가구소득대비 3%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스웨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보육비용은 보육료와 기타비용(보육료 이외 입소료, 특기활동비, 현장학습비, 기타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보육료와 기타비용으로 나누어 그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별 보육료는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이상 172천원임. 이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436만원(4인 가족 기준)의 8.8%~4.0% 수준임.
 - 보육료 이외 특별활동비는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

지만, 대략 7만원~23만원, 현장학습비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이 역시 부모들의 비용부담을 과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부모들의 보육료 외에 상당한 금액의 기타비용을 포함한 보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현재의 보육비 지원은 기타 비용을 제외한 보육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기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을 통해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부모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체감도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현재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이하의 가구의 아동들에게만 차등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전체의 32.1%(전국 41.0%)에 불과함. 즉 현재의 선별적인 보육료 지원제도 만으로는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평가가 잇따름에 따라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실시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2) 무상보육 소요예산

- 2010년 현 보육료 지원액은 국비 1,155억원, 시비 1,938억으로 총 3,094억원임. 만약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193,723명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7,558억원(영유아보육법 기준 상 6세 미만까지만 무상보육 실시할 경우 7,391억 6,552만원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이 중 국고부담 1,154억원을 제외한 서울시 분담은 6,403억으로, 약 4,464억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현행 아동별 지원 방식						무상보육	
아동별 보육료 지원 2010년 예산총액 309,378,442천원						예산 755,791,044천원	
중앙정부 115,540,495천원			서울시 193,837,947천원			중앙정부 115,540,495천원	서울시 640,250,549천원
초등 보육료 163,904,240 천원	민5세아 22,163,860 천원	장애아 보육료 9,244,476 천원	두자녀 보육료 12,819,244 천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1,722,069 천원	7분보육료 99,524,553 천원	예산: 서울시 보육시설 아동 수 193,723명 X (연령별)표준보육비용 X 12개월	

출처: 서울시 의회·보건복지전문위원실 회의자료(2010)

Ⅰ 그림 VIII-1 Ⅰ 무상보육 소요예산1

-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 만약 서울시 총 아동 50%이상(연령별)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측해 본다면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조 1,148억 8,385만원임⁵⁾. 2010년 국비기준 1,155억원을 제외한 9,993억원이 서울시 부담이 됨.

Ⅰ 표 VIII-5 Ⅰ 무상보육 소요예산 2(월)

(단위: 명, 천원)

연령	서울시 총 아동 수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표준보육비용 (= 정부지원단가 + 기본보육료)	연간 소요예산	서울시 아동 50%이상 이용시 연간 소요예산
0세	82,951	15,998	383+350=733	140,718,408	364,818,498
1세	88,987	31,587	337+169=506	191,796,264	270,164,532
2세	91,573	43,288	278+112=390	202,587,840	214,280,820
3세	82,820	36,869	191	84,503,748	94,911,720
4세	78,875	32,276	172	66,617,664	81,399,000
5세	86,540	25,650	172	52,941,600	89,309,280
합계	511,746	185,668		739,165,524	1,114,883,850

- 5) 영유아보육법(제2조) 상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는데 현재 서울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6세 아동 수는 8,055명으로 서울시 총 아동 수 88,847명의 9.1%에 해당함. 그래서 6세를 포함한 무상보육 소요예산 추계는 한계가 있어 제외함. 만약 6세를 포함하는 경우 1조 2,065억 7,396만원임.

3) 기대효과

- 무상보육은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만큼의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보육료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최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제시된 무상보육(안)에서는 보육료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 이외 비용, 특히 특기활동비(자치구별 7만원~23만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부모 부담으로 남아있게 됨. 이 경우, 보육비용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무상보육의 실시가 보육료 외의 기타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무상보육의 경우 이용아동 수 대비 보육료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보할 수 없음. 특히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보육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음.
- 한편, 앞서서도 제시했듯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보육시설 이용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보육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서비스 질 개선과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없이 무상보육을 도입하는 것은 보육시설 '과밀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비용 및 보육서비스 질 등, 보육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이 전제되어야 함.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1) 필요성

- 공적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보육권의 보장은 보육정책의 오랜 목표 중 하나였음.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법인보육시설까지를 포함하여 공적보육시설의 비율은 추산하였을 때, 서울시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11.7%에 불과함. 2006년 사회협약에서 규정한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대비 30%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비용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바, 현 대기아동 대기 아동 26,316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100인 시설 규모로 261개소(79인 규모로 333개소)가 추가적으로 요구됨.

2) 소요예산

-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설치 예산지원방식은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시 중앙정부가 일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시와 자치구가 각각 25%의 비율로 충당하는 '매칭펀드'방식임. 단, 국비지원 최고액은 2억 3천⁶⁾임.

6)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396㎡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원단가는 1,201,300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2009년 기준)이며 국비 최대 지원액은 237,857천원임.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액을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 237,857천원까지 지원하고 있음(보건복지가족부, 2009).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는 방법은 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② 민간보육시설 매입, ③ 공동주택 관리동의 국공립보육시설 전환이 있음.
-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자치구별 지역 건축비 편차가 커서 일반화하기 어려움. 표 VIII-6에서 볼 수 있듯이 개소당 설비비 28억, 연간운영비 7억 68백만원으로 총 35억 68백만원 소요됨.
- 둘째,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경우⁷⁾ 개소당 건물 및 지대 매입비용 41억, 연간 운영비용 7억 5천만원으로 총 48억 5천만원 소요됨.
- 셋째, 공동주택 관리동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건물 및 지대 매입비용은 자치구 무상임대(유효기간 있음)로 0원, 내부 수리비 1천만원, 운영설비비 4천 9백만원, 연간운영비 1억 7천만원으로 총 2억 2900만원이 소요됨.

표 VIII-6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매입/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단위: 천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사례	민간보육시설 매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사례
설비비	지대 및 건축비	2,600,000	2,650,000	0
			1,000,395 ³⁾	10,000
	운영설비비	200,000	447,000 ³⁾	49,000
	소계	2,800,000	4,097,395	59,000
지출	연간 운영비	인건비	750,000	133,641
		관리운영비		36,032
		소계	750,000	169,673
수입	(보육료, 정부보조금, 수익자 부담금)			

주: 1)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용은 영등포구 소재 신축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m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보육 정원 138인 시설, 연면적 1,040m(보육 아동 1인당 7.54m/인)에 의거 추계함.

2)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경우 송파구 소재 보육시설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보육시설로서 정원 106인(현원 106인) 시설, 88,63평, 평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추계함.

3)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송파구 소재 30인 시설, 146.36 m² 규모의 경우, 지대는 자치구 10년간 무상임대로 이루어짐.

4) 구체적인 보육시설 연간운영비는 <붙임 2>참조.

- 7) 정부가 민간보육시설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함. 2005년 - 2007년 매입건수는 총 24건, 서울은 1건임(서문희 외, 2007).

-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추가 국공립보육시설 최소 수 261개소(100인 시설 기준)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261개소 × 28억 = 7,308억이 필요함. 이러한 보육시설 확충 재정 부담은 국비의 경우 최대지원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약 621억, 나머지 서울시(구비포함) 재정 부담은 6,687억 원임.

3) 기대효과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부모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수가 기존 670개소에서 931개소로 확충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대기 아동 수가 축소됨.
- 둘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접근성과 보육공공성 수준 높아짐.
- 셋째, 보육시설 간 경쟁에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노력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결론: 무상보육 방안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기대효과 비교

- 서울시 보육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낮은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높은 대기아동 수, 과중한 보육료 부담 등의 문제가 존재함. 그리고 이를

8) 건축비는 설계, 인입, 기반시설금, 건설비로 222.31평×450만원(/평)=10억 395천원 책정함.

9) 추가시설비는 옥상, 마당, 조경, 영어교실, 불박이장, 부엌, 쉼터 등 4천7백만원, 집기는 교재교구, 비품, 버스, 보험 등 4억으로 책정함.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 확대가 모두 필요함.

- 그러나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안을 축소하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육서비스 구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
-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지배적인 한국 보육체계 안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먼저 보육료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만 보육료 외에 특기활동비에 대한 부모부담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음. 따라서 무상보육은 보육비용에 대한 규제, 보육시설 모니터링 및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실시된다면 그 효과를 모두 달성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무상보육이 실시되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믿고 맡길만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아동들의 기본권인 보편적 보육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임. 이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높은 대기 아동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표 VII-7 무상보육 방안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의 기대효과

	무상보육 기대효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부모 보육료 부담 완화	최대 효과	최소 효과
보육서비스 질	최소 효과	최대 효과
대기 아동 수	최소/최대 효과	최대 효과

주: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현 상황에선 국공립보육시설 대기 아동 문제에 대한 효과는 최소이지만 민간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대기아동 문제 효과는 최대일 수 있음.

제4절 외국의 보육정책

- 한국의 보육체계에 따른 현 무상보육 방안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른 국가들의 보육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함.

1. 스웨덴

- 스웨덴은 보육업무의 담당부서인 교육과학부에서 보육서비스 공급의 목표와 재원규칙, 교육과정을 만들면 지방정부는 그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1~5세 취학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6~12세 학령기 아동의 복지를 위한 활동으로 구성됨(Skolverket, 2005)¹⁰⁾. 2008년 현재 290개 지방정부에 총 20,253개의 보육시설이 있음. 이중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10) 취학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는 프리스콜라(förskola, pre-school)와 개방형 프리스콜라(öppna förskola, open pre-school), 가정보육시설(familie daghem, family daycare home)이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위해서는 여가활동센터(fritidshem, leisure-time center), 가정보육시설, 개방형 여가활동센터(öppna fritidshem, open leisure-time center)가 제공됨. 그리고 별도로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치학급(pre-school class)이 존재함.

은 16,305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80.5%가 공공보육시설임.

- 아동 연령별로 보육시설 이용율을 살펴보면, 1세는 48.9%, 2세는 91.3%, 3세는 94.8%, 4세는 97.9%, 5세는 97.9%임. 공보육 이용율은 1세는 40.2%, 2세는 75%, 3세는 77.6%, 4세는 79.8%, 5세는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VII-8 |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율

(단위: %)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48.9	91.3	94.8	97.4	97.9
지방정부	40.2	75.0	77.6	79.8	80.4
민간	8.7	16.3	17.2	17.5	17.5

주: 1) 스웨덴 1세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율이 낮은 이유는 육아휴직기간이 480일로 부모가 직접 양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

2) 스웨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한국의 민간보육시설 양상과 차이가 있음. 스웨덴 민간보육시설은 비영리 부모협동조합이 대부분임.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2009)

- 스웨덴은 국가, 지방정부, 부모가 분담하여 보육비용을 마련함.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보육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보육료 상한제¹¹⁾를 실시함(Skolverket, 2007). 보육료 상한제는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침. 2008년 조사결과, 총 보육비용 중 부모부담율이 전체 보육서비스는 10%, 유치원은 8%, 가정보육시설은 10% 정도 수준임.

11) 보육료 상한제를 통해 한 달 가구소득이 42,000크로나를 넘는 경우 보육료 상한제에서 규정하는 최대 금액을 지불하게 하도록 하고 월 가구소득이 42,000크로나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총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육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육료는 첫째 아이의 경우 총 가구소득의 3%를 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총 가구소득의 2%,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총 가구소득의 1%를 넘지 않아야 함. 그 외 넷째 아이 이후부터는 보육료가 무료임.

표 VIII-9 유치원(pre-school)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지출 규모

(단위: 크로나, %)

	총 지출	민간운영보육시설 에 대한 지출	정부운영보육시설 에 대한 지출	총 보육비용 중 부모부담 비율(%)
총 지출	44,616,904	6,356,899	37,934,636	8
비율(%)	100	14.2	85.8	
아동 1인당 지출	109,100	88,600	112,500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2008)

-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스웨덴은 보육시설 이용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도 매우 낮음. 이는 높은 공보육시설 비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육료 상한제를 통해 보육비용에 대한 통제 또한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한편, 보육료 상한제나 보육서비스 질 규제 등의 정부의 보육서비스에 관리·감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보육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보육시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2. 호주

- 호주는 0~2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보육시설이 거의 없음. 영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3세 이상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음. 호주의 공식적 보육서비스로는 종일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학교밖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 내 보육(In-home care), 조기교육서비스, 놀이집단이 있음.
- 호주는 보육시설 이용보조금(CCB), 특수아동보육시설 이용보조금(Special Child Care Benefit), 조부모보육시설 이용보조금(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 직업·교육·훈련시 보육비지원(Jobs, Education and Training Child Care fee assistance) 등의 제도와 아동보육비세금환급제도(CCTR)를 통해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이 제도는 부모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휴직기간 동안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료를 적정수준으로 낮춰주고 있음. 2007년 조사결과 자녀가 1명인 가구에서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시설이용 보조금제도와 보육비세금환급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부모의 실부담 보육료는 가구소득 대비 9~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FsCSIA, 2007).

- 이와 같이 민간 보육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호주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대로 보육료 지원제도를 통해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완화된 효과는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의 보육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부담하는 보육료 부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민간보육시설이 많아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무상보육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할 때에는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리책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영국

- 영국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 책임임. 중앙에서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에서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함. 영국은 보육과 조기교육서비스가 분류되어 있음. 보육서비스는 종일제보육, 기

간제보육, 방과후보육, 아동센터, 보육사가 있으며, 조기교육서비스는 유아학교, 유아학급과 예비학급 등이 있음. 서비스 공급주체를 살펴보면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73%(공식보육: 56%, 비공식보육: 41%)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0-2세 아동은 59%, 3-4세 아동은 90%, 5-7세 아동은 63%, 8-11세 아동은 64%, 12-14세 아동은 50%가 보육서비스(공식+비공식)를 이용하고 있음. 공식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0-2세는 38%, 3-4세는 86%, 5-7세는 45%, 8-11세는 42%, 12-14세는 26%로 나타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율에서도 0-2세와 3-4세 아동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 고용주, 보육지원기금(Childcare Support/Access funds) 등에서 보육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비용지원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16%에 그치고 있음. 2008년 부모부담 보육비용 조사 결과, 주간 평균비용은 £50, 시간당 평균비용은 £2.18인 것으로 나타남. 보육비용에 대한 조사대상의 절반이상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그러나 가구유형별로 가구소득별로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양부모가구보다는 한부모 가구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가구가 보육료 지불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비해 영국은 90년대 후반부터 보육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임. 영국이 주로 취하고 있는 정책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키는 것임.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무상보육 역시 대상의 제한(3-4세 아동의 우선 실시)과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4. 일본

- 일본의 보육시설은 크게 인가보육시설과 인가외보육시설로 구분됨. 인가보육시설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로 정부 지원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설립주체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됨. 공립은 주로 지자체, 즉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기타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의미하고 인가-사립은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기타(학교법인, 종교법인, NPO,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의미함. 반면 인가 외 보육시설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리보육시설임.
- 일본 보육시설 이용율을 살펴본 결과, 0~5세 아동 인구 676만 명(2006년 기준)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29.7%, 유치원 이용아동이 25.5%, 가정(친족 등 돌봄 포함)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아동이 44.8%임(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2007: 21). 아래 표 VIII-10을 살펴보면, 인가보육시설 중 공립보육시설이 50.7%를 차지함. 하지만 이용 아동 수는 사립보육시설 비율이 53.7%로 공립보다 다소 높음.

표 VII-10 일본 인가·인가 외 보육시설 현황(2006년)

(단위: 개소, 천명, %)

유형		인간보육시설			인간외보육시설		
주체		공립	사립	전체	베이비호 텔	기타	전체
수	시설 수 (비율)	11,510 (50.7)	11,210 (49.3)	22,720 (100.0)	1,525 (26.8)	4,162 (73.2)	5,687 (100.0)
	아동 수 (비율)	980 (46.3)	1,138 (53.7)	2,118 (100.0)	38 (23.6)	123 (76.4)	161 (100.0)

주: 인가와·기타 보육시설로는 개인, 기업, 공동육아 등 공급자가 다양하고 주로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자신의 집이나 소규모 또는 일시, 시간제 보육이 이루어짐.

자료: 후생노동성 보육소 통계자료(e-stat).

- 일본 인가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함. 보육료는 소득계층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중앙정부 기준안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준을 기초로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임.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중앙정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등 삼자부담으로 각각 50%, 25%, 25%씩 부담함. 정부 예산 기준으로 볼 경우 정부의 보육비 분담 비율은 평균 55.2%(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부담율의 합계)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국가가 정한 보육료 기준보다 낮게 보육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률은 높아짐. 그 결과 보육비용에 대한 부모부담은 평균 31.7%임(안현미, 2010).

☞ 일본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아동 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임. 대기 아동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육시스템의 다양화·탄력화'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보육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 그리고 보육의 최저기준의 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 입소 정원의 탄력화 등의 조치 취함(二宮厚美, 2003: 80~88). 한 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혼합형태인 제3의 민간보육시설로 '인정어린이집(認定保育園)'¹²⁾을 확대함. 하지만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

제5절 대응전략: 서울형어린이집 활성화

-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막대한 재정부담과 보육서비스 질적 문제가 제기됨.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이 상대적으로 무상보육보다 실효성이 있지만 막대한 시간 소요, 서울시 부지선정 어려움과 자치구 간 설비비 격차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3의 보육체계'인 '서울형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것임.
- 서울형어린이집은 한국의 지배적인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해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보육시설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임. 구체적으로 우수한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건비지원과 자율장학, 취사부지원을 통한 급·간식 안전성, 주치의제를 통한 아동건강 증진 등을 지원, 실시함으로써 포괄적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의 장벽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

12) 인정어린이집은 정부지원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제도권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육아 지원 시설임.

됨. 문제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 국공립보육교사 1호봉기준으로 지원되는 급여체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 보육교사 급여는 1, 2, 3급과 상관없이 1호봉에서 시작되고 있음.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도 1호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2010년에는 2호봉으로 지원이 확대됨. 이러한 보육교사 급여체계는 4년제 아동 혹은 보육관련학과 졸업생들이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취득학생)을 선호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우수보육교사 부족문제와 서비스 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그렇다면 보육교사 1, 2, 3급과 급여체계, 보육교사 직무분담 등이 연동될 수 있게 재규정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¹³⁾

둘째, 서울형어린이집 정책지원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 통합체계 구축 필요함. 서울형어린이집은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시스템인 '안심보육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이 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아동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함. 그리고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함. 즉, 지원, 모니터링, 컨설팅 및 교육이 통합된 체계에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그래서 '보육품질관리센터'구축을 통한 총체적 질적 관리 체계가 요구됨.

셋째, 서울형어린이집 목적과 보육지원체계의 상향조정 요구됨.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항목별 지원방식 체계임. 예를 들면 아동건강-주치의제,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율장학 등임. 이는 보육의 근간이 되는 '표준보육과정' 이외 추가적인 보육서비스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별 지원을 통합한 '표준보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함.

13) 이러한 학력, 직급별에 따른 호봉체계는 간호사, 유치원교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기활동'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함. 특기활동의 내용을 보면 체육, 음악, 예절, 영어 등 표준보육과정 내용과 중첩됨. 만약 현 표준보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여 이러한 특기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재논의와 개선이 필요함. 특히 특기활동비가 자치구별 7만원~23만원으로 보육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무상보육(안)을 실시할 경우 특기활동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무상보육 취지를 상실케 할 수 있음.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건데, 현 항목별 지원 방식의 서울형어린이집을 넘어선 '서울형 표준보육서비스' 개발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이 재구축되어야 함.

표 VII-붙임-1 자치구별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과 보육시설 유형별 아동 수

자치구	전체 아동 수 (A)	보육시설용 아동 수			보육시설 유형별 아동 수												합계							
		현행 아동 수 (B)	정액 아동 수 (B1)	[B]/A %100 (B2)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현행 (G)	정액 (G1)	[G]/A %100 (G2)					
					현행 (C1)	정액 (C2)	[C]/A %100 (C3)	현행 (D1)	정액 (D2)	[D]/A %100 (D3)	현행 (E1)	정액 (E2)	[E]/A %100 (E3)	현행 (F1)	정액 (F2)	[F]/A %100 (F3)								
종로	7,676	3,534	4,232	46.04	1,644	1,799	21.42	46.52	167	242	2.18	4.73	1,055	1,479	13.74	20.85	134	155	1.62	3.51	544	637	7.09	5.39
중구	6,682	2,900	3,527	43.70	1,591	1,866	23.21	53.12					869	1,030	13.01	20.76	142	167	2.13	4.86	368	464	5.36	12.26
영산	13,682	3,886	4,646	28.38	1,282	1,376	9.22	32.48	88	94	0.64	2.26	1,987	2,402	14.51	51.13	429	519	3.13	11.04	101	235	0.74	2.60
성동	19,170	5,854	6,970	30.54	2,387	2,665	12.50	40.95					2,687	3,336	14.02	45.90	603	752	3.15	10.30	167	187	0.87	2.85
광진	20,734	7,282	8,524	35.12	1,669	1,791	8.05	22.92					4,654	5,512	22.45	63.91	780	988	3.76	10.71	107	148	0.52	1.47
동대문	19,963	7,736	9,086	38.67	1,866	2,217	9.50	28.92					3,906	4,959	19.58	53.39	1,381	1,787	6.97	19.01	123	162	0.62	1.68
중랑	23,388	9,089	10,809	38.78	2,885	2,483	9.77	26.20	96	114	0.41	1.06	5,445	6,634	23.28	60.04	1,558	1,453	4.95	12.77	85	85	0.36	0.94
성북	30,455	9,500	11,365	31.23	1,960	2,077	6.41	20.53	173	203	0.57	1.82	5,488	6,664	17.96	57.56	1,802	2,293	5.92	18.97	81	91	0.27	0.85
강북	18,355	7,807	9,381	42.53	1,578	1,658	8.60	20.21	131	153	0.71	1.68	5,069	6,267	27.62	64.93	365	1,204	5.20	12.23	48	52	0.26	0.61
도봉	20,942	8,072	10,060	38.73	1,389	1,465	6.66	17.21	32	63	0.15	0.40	4,615	5,710	22.14	57.17	1,965	2,770	9.57	24.72	41	52	0.20	0.51
노원	37,635	12,900	14,449	32.36	2,351	2,698	6.78	20.94	319	368	0.85	2.62	4,451	5,312	11.83	36.54	4,085	5,863	12.45	38.46	145	188	0.39	1.19
은평	27,504	9,954	11,764	36.19	1,172	1,273	4.26	11.77	143	161	0.52	1.44	7,581	8,999	27.56	76.16	1,068	1,319	3.66	10.13	17	33	0.06	0.17
서대문	19,460	6,377	7,688	34.51	1,611	1,785	8.72	25.26					3,770	4,577	20.19	58.51	841	1,081	4.55	13.19	194	255	1.05	3.04
마포	24,809	6,766	7,923	27.27	2,604	2,937	10.50	38.49					3,040	3,533	12.25	44.93	792	1,062	3.19	11.71	212	257	0.85	3.13
양천	28,405	9,601	11,657	33.80	2,434	2,653	8.57	25.35					5,206	6,007	18.75	55.47	1,740	2,253	6.13	18.12	87	128	0.31	0.91
강서	37,752	11,843	14,017	31.37	2,353	2,582	6.23	19.87	276	282	0.73	2.33	6,086	8,014	17.74	56.54	2,444	2,986	6.47	20.64	46	49	0.12	0.39
구로	28,765	9,404	10,875	32.76	1,983	2,136	6.91	21.09	290	311	1.01	3.08	5,037	5,301	17.55	53.96	1,987	2,376	6.92	21.13	88	112	0.31	0.94
금천	13,642	6,776	8,346	48.67	964	1,028	7.07	14.23					4,771	5,970	34.97	70.41	975	1,262	7.15	14.39	66	88	0.48	0.97
영등포	26,308	8,007	9,346	30.44	1,702	1,847	6.47	21.26	230	250	0.87	2.87	4,466	5,265	17.05	56.03	968	1,233	3.76	12.34	601	751	2.28	7.51
동작	23,391	7,063	8,376	29.62	2,527	2,683	10.54	36.59	95	103	0.40	1.34	3,332	4,236	13.94	47.04	1,071	1,269	4.48	15.12	26	39	0.11	0.37
관악	29,537	9,252	10,988	31.30	2,698	2,948	9.02	28.82	158	227	0.53	1.71	4,542	5,619	15.43	49.31	1,623	1,905	5.49	17.54	243	259	0.82	2.63
서초	25,038	5,638	6,608	22.52	1,717	1,875	6.96	30.45					2,257	2,739	9.01	40.03	870	1,088	3.47	15.43	756	913	3.02	12.41
강남	27,365	6,307	8,273	25.17	3,085	3,347	11.19	44.47					2,776	3,482	9.85	39.15	668	868	2.47	9.82	465	676	1.65	6.58
송파	41,556	10,345	11,938	24.89	2,653	2,860	6.38	26.66	79	84	0.19	0.76	5,040	5,889	12.13	48.72	2,194	2,682	5.28	21.21	379	433	0.91	3.66
강동	26,817	8,330	9,836	28.87	1,701	1,796	5.90	20.44	87	87	0.30	1.05	5,984	6,286	17.99	62.31	1,300	1,653	4.51	15.63	48	54	0.17	0.58
계	600,593	193,723	230,688	32.26	40,338	53,755	8.21	25.47	2,384	2,752	0.39	1.22	103,965	126,472	17.31	53.67	32,578	41,028	5.42	16.82	5,018	6,348	0.84	2.59
(합계)				(33.73)		(9.23)	(27.55)	(10.67)	(1.94)				(17.76)	(52.33)	(5.08)	(15.32)							(1.19)	(3.38)

표 제-붙임-2 서울시 자치구별 국공립보육시설 수와 대기 아동 수

자치구	전체 아동 수 (A)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추가 수요 및 동 당 비율	
		정원	현원 (B)	(현원/전체 아동수)* 100	현원 (C)	(현원/정원) * 100	(현원/자치구 총 아동)* 100	(C/B)* 100	대기 아동 수	대기 아동 수 38.7%	추가 수요 시설 수(100인 기준)	동 당 국공립보육 시설 수	동 당 비율
종로	7,676	4,312	3,534	46.04	1,644	91.38	0.27	0.85	706	273	3	1.26	
중구	6,682	3,527	2,920	43.70	1,551	83.12	0.26	0.80	720	279	3	1.07	
용산	13,692	4,646	3,886	28.38	1,262	91.72	0.21	0.65	1,291	500	5	0.85	
성동	19,170	6,970	5,854	30.54	2,397	88.94	0.40	1.24	2,903	1,123	11	1.60	
광진	20,734	8,524	7,282	35.12	1,669	93.19	0.28	0.86	2,360	913	10	1.40	
동대문	19,953	9,095	7,316	36.67	1,896	85.52	0.32	0.98	1,658	642	7	1.00	
중랑	23,388	10,809	9,069	38.78	2,285	92.03	0.38	1.18	2,198	851	9	1.50	
성북	30,415	11,365	9,500	31.23	1,950	93.89	0.32	1.01	2,816	1,090	13	1.35	
강북	18,355	9,381	7,807	42.53	1,578	95.17	0.26	0.81	1,261	488	5	1.35	
도봉	20,842	10,060	8,072	38.73	1,389	94.81	0.23	0.72	1,482	574	6	1.33	
노원	37,635	14,449	12,180	32.36	2,551	94.55	0.42	1.32	3,617	1,400	15	1.33	
은평	27,504	11,764	9,954	36.19	1,172	96.62	0.20	0.60	1,991	771	8	0.95	
서대문	18,480	7,698	6,377	34.51	1,611	90.25	0.27	0.83	1,984	768	8	1.14	
마포	24,809	7,923	6,766	27.27	2,604	88.66	0.43	1.34	3,488	1,350	14	1.65	
양천	28,405	11,657	9,601	33.80	2,434	91.75	0.41	1.26	2,830	1,095	12	1.30	
강서	37,752	14,017	11,843	31.37	2,353	91.13	0.39	1.21	3,799	1,470	15	1.59	
구로	28,705	10,876	9,404	32.76	1,983	92.84	0.33	1.02	2,996	1,159	12	1.47	
금천	13,642	8,348	6,776	49.67	964	93.77	0.16	0.50	852	330	4	1.40	
영등포	26,308	9,346	8,007	30.44	1,702	92.15	0.28	0.88	2,876	1,113	12	1.05	
동작	23,911	8,378	7,083	29.62	2,521	93.61	0.42	1.30	3,241	1,254	13	1.45	
관악	29,557	10,988	9,252	31.30	2,666	90.43	0.44	1.38	2,982	1,154	12	1.22	
서초	25,038	6,608	5,638	22.52	1,717	94.60	0.29	0.89	3,758	1,454	15	1.11	
강남	27,565	8,373	6,937	25.17	3,085	92.17	0.51	1.59	5,367	2,077	22	1.35	
송파	41,558	11,938	10,345	24.89	2,653	93.09	0.44	1.37	5,704	2,207	23	1.11	
강동	28,817	9,836	8,320	28.87	1,701	94.71	0.28	0.88	4,199	1,625	17	0.90	
계	600,593	230,888	193,723	32.26	49,338	91.78	8.21	25.47	62,880	24,373.7	357	1.26	

표 VII-붙임-3 보육시설 규모별 연간 운영 수치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135인	96인	30인			135인	96인	30인
입소 비용	보육료	349,794,000	227,087,500	90,222,000	인 건 비	급 여	562,979,896	190,091,800	114,170,580
	입학금	1,150,000	800,000	650,000		보상금	15,860,000	31,228,915	17,070,000(3)
	소 계	350,944,000	227,887,500	91,722,000		복리후생비	21,361,000	5,800,000	2,400,000(4)
	(정부보조 금)				관 리 운 영 비	소 계	600,200,896	227,120,715	133,640,580
	(수익자부 담금)					수용경비	34,667,720	15,000,000	4,446,000
						공공요금	18,029,818	15,000,000	4,105,680
						연료비		10,000,000	
						교재교구비	22,982,000	15,000,000	2,880,000
						업무추진비	7,200,000	20,000,000	4,800,000
						급식비	84,700,255	45,804,000	19,800,000
						소 계	167,579,793	120,804,000	36,031,680
						기능보강비	27,800,000	1,000,000	500,000
계		350,944,000	227,887,500	91,722,000		계	795,580,689	348,924,715	170,172,260
운 영 수 지							-444,636,689	-121,037,215	-78,450,260

- 주: 1) 입학금은 5만원으로 135인 시설은 매년 입학생 23명, 96인 시설은 16명, 30인 시설은 13명으로 추산함.
 2) 135인 시설은 현원 125명, 96인 시설은 현원 82명, 30인 시설은 현원 30인을 기준으로 한 2009년 지출내역임.
 3) 보상금은 기본급을 제외한 차우개선비, 제 수당, 주임수당, 당직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4) 복리 후생비는 1인 4만원*12개월=48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크기, 유형에 따라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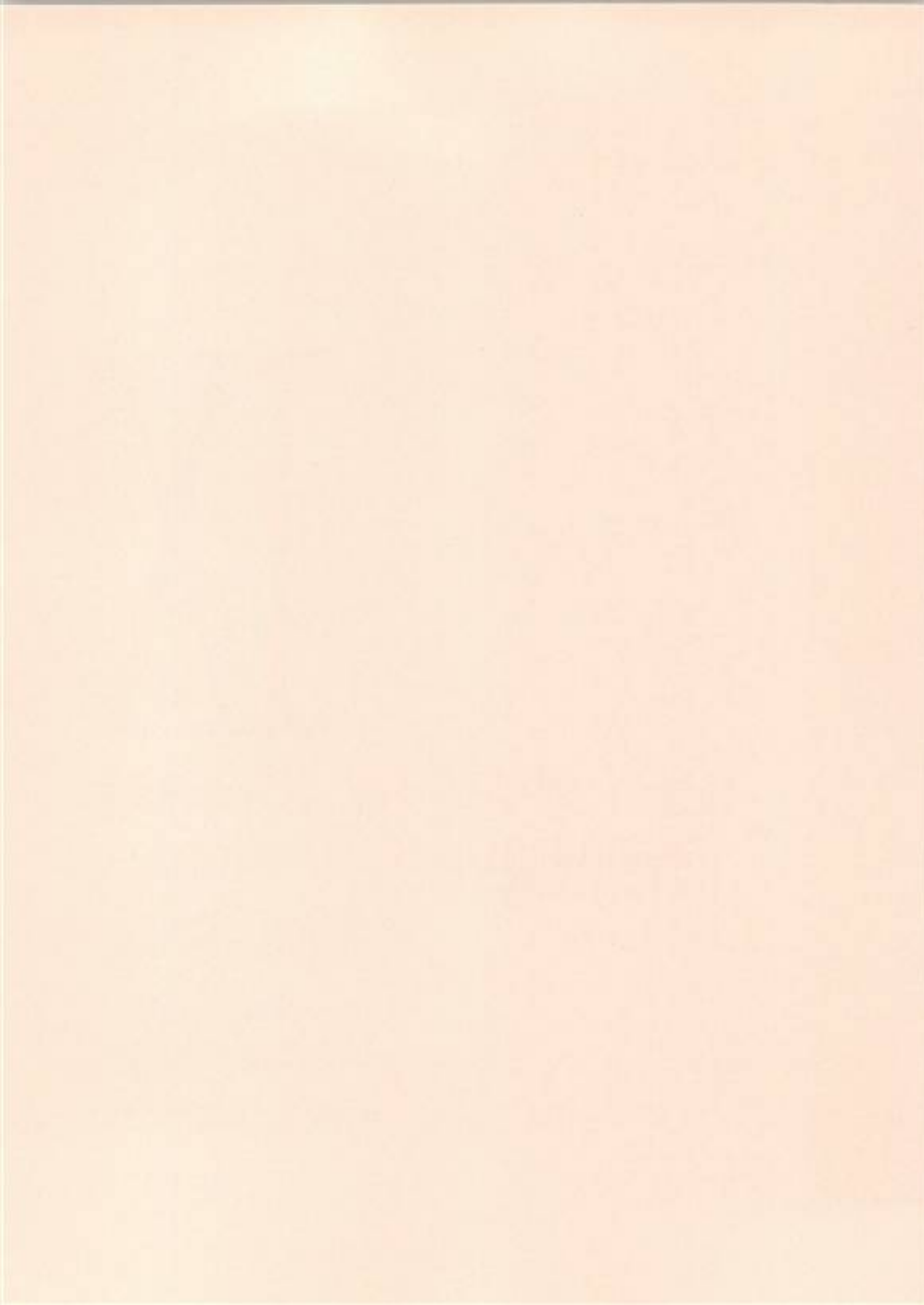


IX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부자(父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문은영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김보람 (정책개발실 위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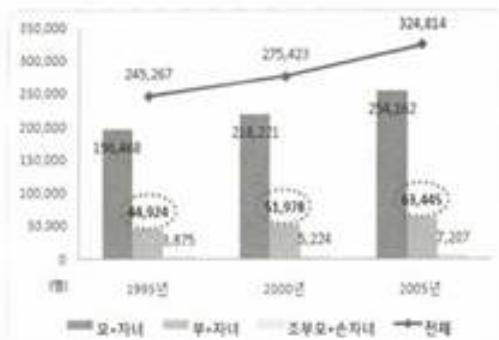
IX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부자(父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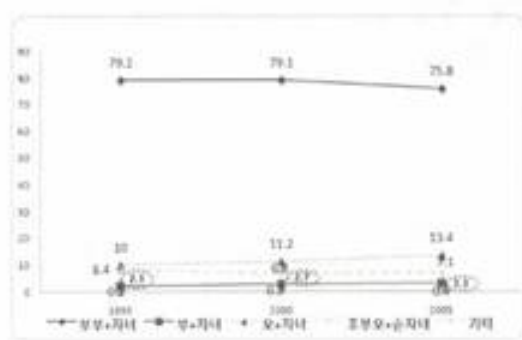
- 한부모¹⁾는 대체로 한쪽 배우자의 부재상태에서, 자녀의 양육과 생계부담의 이중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특히 여성한부모는 사회전반에 걸친 성불평등구조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충에 노출되어 있음. 그렇기에 기존의 한부모 관련 연구에서는 남성한부모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한부모의 경제문제, 양육, 사회심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수치상으로 소수에 불과한 남성한부모 혹은 부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음.
- 최근 부자가족이 모자가족에 비해 소수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음. 서울시 한부모가족 구성비율에서 남성한부모(싱글대디)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족은 20%수준이며 여성한부모(싱글맘)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족이 대체로 80%를 차지하고 있음.

1) 한부모가족은 부모가운데 일방이, 사망, 이혼, 유기, 별거를 이유로, 혹은 제도적인 혼인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혼자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한쪽의 부 또는 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함. 본 이슈분석에서는 한부모가족 중에서 아버지(父)와 자녀로 구성된 남성한부모(싱글대디)가족을 부자(父子)가족으로 어머니(母)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한부모(싱글맘)가족을 모자(母子)가족으로 명칭했고, 남성한부모와 싱글대디(혹은 여성한부모와 싱글맘)은 편의상 혼용하여 사용함.



【그림 IX-1】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2005년



【그림 IX-2】 서울시 2세대
가구형태별 분포

- 서울시한부모가족은 전체가구(3,309,890가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²⁾의 9.60%인 31만가구
- 모자가족이 1995년 대비 2005년 29%증가한데 비해 부자가족은 41%증가함으로써 모자가족에 비해 빠르게 증가중임 ⇒ 따라서 전체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족의 비율도 증가추세임(1995년 18.6%⇒ 2000년 19.2%⇒ 2005년 20%로 증가)
- 한편 취약한 부자가족 중에는 정책의 또 다른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대상층이 있어, 시급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폴리슈머로 주목되고 있음. 예컨대 재단에서 금년도에 수행한 연구실태조사에서도,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양호하고 자녀양육도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가계수입수준이 저조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성이 심각히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에 처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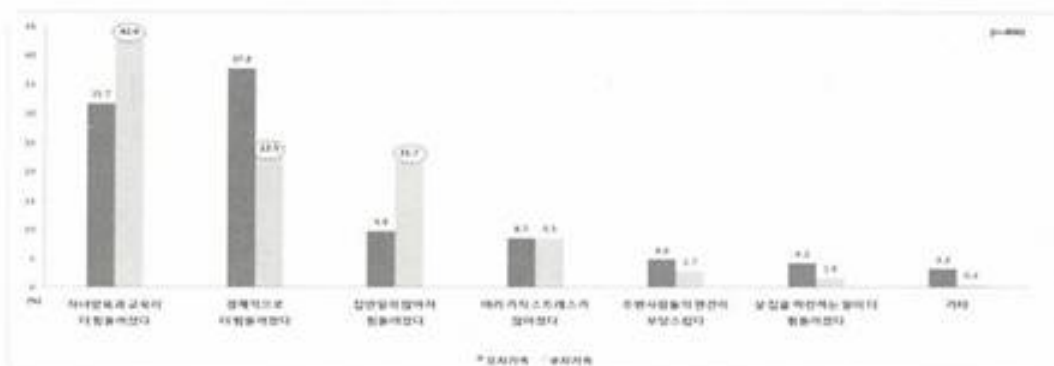
2)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아직 미발표된 관계로, 2005년 최근 자료로 분석함.

- 본 이슈분석에서는 재단의 기본과제로 수행한 서울시 한부모가족생활실태 조사결과를 재분석하여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합의를 모색해 보고자 함.

제2절 서울시 한부모가족생활실태조사³⁾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 남성한부모가 한부모 가족이 된 후 부딪치는 어려움 1순위는 '자녀양육과 교육'
 - 모자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이 된 후 부딪친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문제로 꼽는데 비해 부자가족은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를 1순위로 꼽음.
 - 자녀양육과 교육이 더 힘들어졌다 ⇒ 모자가족(31.7%) , 부자가족(42.6%)
 -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다 ⇒ 모자가족(37.8%), 부자가족(21.7%)

3) 재단에서 수행한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800가구를 대상(여성한부모 542명, 남성한부모 258명)으로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를 조사함.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한부모가족정책의 보편적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함.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서울시 5개 권역의 현장 임의 추출을 통해 이루어짐. 설문조사를 위해 서울시 권역별로 자치구 한부모가족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전교육을 받은 전문리서치 회사 조사원이 현장설문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다른 한부모가족을 소개받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도 동시에 사용함. 조사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녀양육실태, 취업실태, 가계실태, 가족건강 및 사회심리학적 상태, 복지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그림 IX-3 ■ 한부모 가족이 된 후 부딪치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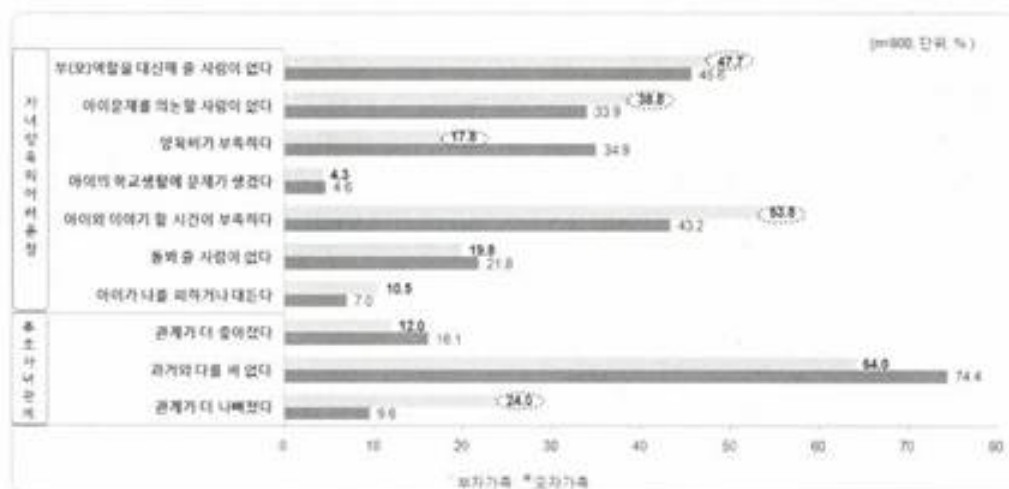
- 자신의 부모(혹은 전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남성한부모가 한부모가 된 후 과거에 비해 힘들어진 점을 소득별로 보았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40.6%)과 경제적 어려움(37.7%)을 주로 호소한 반면, 가계수입이 300만원 이상의 남성한부모의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34.9%)과 집안일이 많아져 힘들어졌다(46.5%)는 의견이 많았음.

■ 표 IX-1 ■ 부자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된 후 부딪치는 어려움

	200만원 미만	200만원대	300만원 이상	합계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다	26(37.7)	8(36.4)	3(7.0)	37(27.6)
자녀 양육과 교육이 더 힘들어졌다	28(40.6)	6(27.3)	15(34.9)	49(36.6)
집안 일이 많아져 힘들어졌다	9(13.0)	4(18.2)	20(46.5)	33(24.6)
살 집을 마련하는 일이 더 힘들어졌다	1(1.4)	1(4.5)	1(2.3)	3(2.2)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4(5.8)	1(4.5)	3(7.0)	8(6.0)
친지나 친척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	0(0.0)	1(4.5)	0(0.0)	1(0.7)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부담스럽다	1(1.4)	1(4.5)	1(2.3)	3(2.2)
합계	69(100.0)	22(100.0)	43(100.0)	134(100.0)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의 문제와 어려움

- 양육의 문제 (1) “부(모)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 “아이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다”
- 양육의 문제 (2) “아이와 이야기 할 시간이 없다”
- 양육의 문제 (3)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
 - 한부모가족의 양육문제에 있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양육을 해야 하는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에게 아래의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되고 있음.



Ⅱ 그림 IX-4 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부모-자녀 관계

- 그럼에도 남성한부모는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한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양육의 어려움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부모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 47.7%, 아이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다 38.8%, 아이와 이야기 할 시간이 부족하다 53.3%).
- 특히 부자가족은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와의 관계가 모자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모자가족 9.6%, 부자가족 24.0%).
- 소득에 상관없이 전배우자의 부모나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자가

죽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아이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다',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다'를 어려운 점으로 이야기함.

표 IX-2 부자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된 후 겪은 양육의 어려움(복수응답)

	200만원 미만	200만원대	300만원 이상	합계
아이가 나를 피하거나 대든다	8(6.0)	2(4.5)	9(11.5)	19(7.5)
돌봐 줄 사람이 없다	21(15.8)	3(6.8)	6(7.7)	30(11.8)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다	24(18.0)	11(25.0)	21(26.9)	56(22.0)
아이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2(1.5)	1(2.3)	1(1.3)	4(1.6)
양육비가 부족하다	17(12.8)	4(9.1)	7(9.0)	28(11.0)
아이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다	25(18.8)	9(20.5)	21(26.9)	55(21.6)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36(27.1)	14(31.8)	13(16.7)	63(24.7)
합계	133(100.0)	44(100.0)	78(100.0)	255(100.0)

○ 사회적 관계가 서먹해진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을 이루게 된 후 이웃, 친지나 친척들과의 관계가 '전보다 서먹해졌다'는 응답이 40%로 10명 중 4명이 한부모가족 이후 사회적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하였고,, '전보다 친해졌다'는 4.5%에 불과함.
- 부자가족의 경우 '전보다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응답이 42.2%로 모자가족의 38.9%에 비해 약간 많았음. 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의 남성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이 된 후 주변사람들과 서먹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300만원 이상의 싱글대디의 경우는 19.6%와 비교해 차이를 보임.

표 IX-3 가족유형 변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 및 소원화의 이유

(단위: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 수		800	542	258
사회적 관계	전보다 서먹해졌다	320(40.0)	211(38.9)	109(42.2)
	전과 다를 바 없다	444(55.5)	309(57.0)	135(52.3)
	전보다 친해졌다	36(4.5)	22(4.1)	14(5.4)

- 향후 생활에 대한 기대에 있어, 생활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태도를 지닌 응답자는 16.0%에 불과하였고,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8.8%, 그리고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비관적 견해도 31.9%에 달함.
- 부자가족은 과반 이상인 53.9%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나,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은 12.0%로 모자가족의 17.9%에 비해 5.9% 적었고,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은 부자가족이 28.7%로 모자가족의 33.4%에 비해 4.7% 더 적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의 태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부자가족이 현상 유지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의 남성한부모의 경우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6.0%로 같았고 200만원 이상의 싱글대디는 절반 이상이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아 소득이 적은 남성한부모의 경우 앞으로의 생활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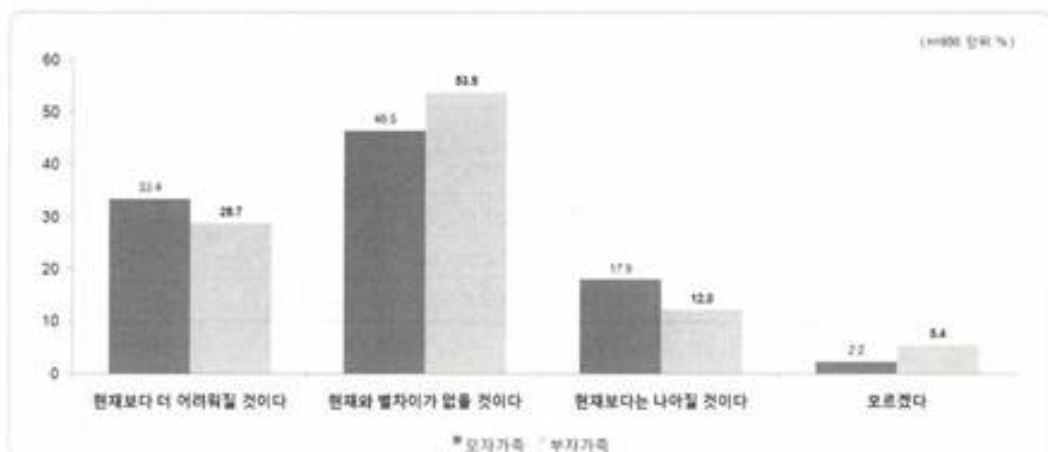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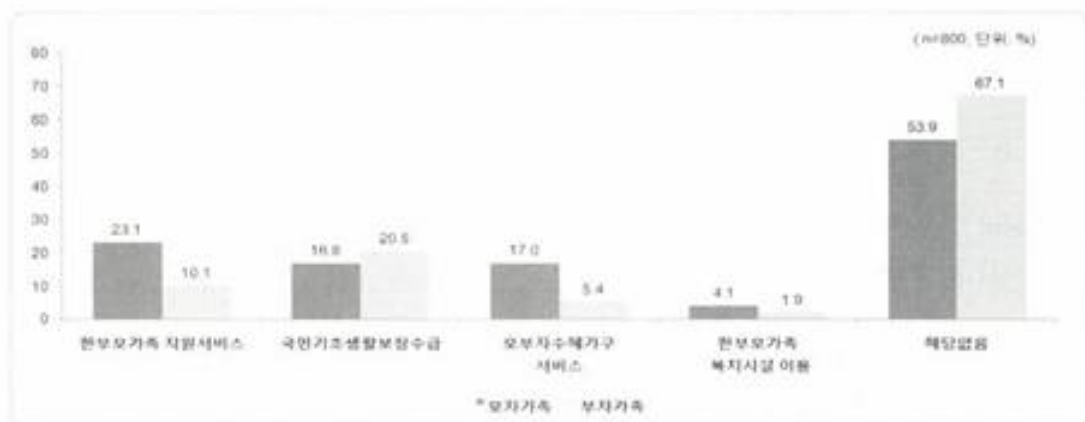
그림 IX-5 | 향후 생활에 대한 기대

제3절 정책수혜대상으로서의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용률 저조

- 한부모가족이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비스 중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로는 '서울시/자치구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18.9%)'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18.0%)'임. 한부모가족 10가구 중 6가구 정도는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공적서비스 수혜경험이 없었음(특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58.1%).
- 부자가족은 한부모가족 관련 공공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가구가 67.1%이며, 모자가족은 53.9%로 부자가족이 13.2% 비수혜 가구가 더 많았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부자가족이 20%수준으로 모자가족(16.8%)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시/자치구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는 모자가족의 경우, 23.1% 수혜경험이 있으나, 부자가족은 10.1%에 그쳐 모자가족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

-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모자가족이 4.1%에 비해 부자가족은 1.9% 수준임. 서울시에는 총 18개의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나(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 시설 등), 부자가족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인천에 1곳 설치되어 있어,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임.



■ 그림 IX-6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수혜 현황

- 대체로 부자가족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해 인지도가 낮으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한부모는 여성한부모와 비교하여 서울시의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래 서비스의 3가지 항목(자녀교육복지서비스/자녀돌봄지원서비스/영아돌봄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10%대 수준이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한부모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X-4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인지도 및 필요성

(단위:명, %)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인지도			필요성		
		전체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전체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응답자 수(명)		(800)	(542)	(258)	(800)	(542)	(258)
자녀양육 교육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복지 서비스	41.8	45.2	34.5	89.4	89.9	88.4
	부자가정 건강성향상 및 자녀돌봄 지원 서비스	28.7	29.9	26.0	82.0	81.0	84.1
심리 정서지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19.8	20.6	17.9	74.0	72.5	77.1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사업	13.9	14.2	13.2	76.4	75.7	78.0
	지역사회가족연대망 '이웃사촌 브릿지 운동'	11.1	10.7	12.0	71.1	68.9	76.0
	한부모무료양검진서비스 및 정신상담 클리닉 개설	11.1	11.3	10.9	76.2	75.7	77.1
미혼모 자립역량 강화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	20.4	22.3	16.3	69.2	68.6	70.5
	미혼모부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지원	12.0	13.2	9.3	65.0	65.7	63.6
	미혼모부 영아돌봄 서비스	21.4	22.0	20.1	67.1	69.4	62.4
	미혼모부 출산·양육 멘토링 사업	13.9	15.9	9.7	66.5	67.5	64.4
통합지원	부자가족 주거지원	17.5	18.4	15.5	72.9	72.7	73.3
체계구축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1.7	13.1	8.9	75.4	78.2	69.3

○ 한부모가족의 정책수요: 양육 및 학비보조

- 한부모 가족이 바라는 지원 서비스로는 32.4%의 응답자들이 '생계비 지원'을 가장 바라고 있었으며, '양육 및 학비 보조'가 27.8%, '임대아파트 입주 및 부양 시 우선권 부여'가 10.9%였고 기타의견으로는 '의료혜택', '난방비 지원' 등을 필요로 함.
- 모자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에 대한 희망이 36.5%로 가장 많았고, '양육 및 학비보조'가 27.7%, '분양우선권 부여'가 11.4%의 순서였으나, 부자가족의 경우에는 '양육 및 학비보조'가 27.9%로 가장 많았고, '생계비 지원'이 23.6% 그리고 '가사(비) 서비스 지원'이 11.2%로 나타남

표 IX-5 한부모가족 지원 희망 서비스 우선순위

(단위: 명, %)

		전체	모자가족	부자가족
응답자 수		800	542	258
1순위	생계비 지원	259(32.4)	198(36.5)	61(23.6)
	양육 및 학비보조	222(27.8)	150(27.7)	72(27.9)
	분양 우선권 부여	87(10.9)	62(11.4)	25(9.7)
	가사(비) 서비스 지원	47(5.9)	18(3.3)	29(11.2)
	창업자금융자	47(5.9)	28(5.2)	19(7.4)
	기타	138(17.1)	86(15.9)	52(20.2)
응답자 수		799	541	258

제4절 실태조사분석을 통한 정책적 합의

○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강화 및 가족유형별 맞춤보육서비스 지원 필요

-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특히 부자가족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은 자녀양육의 문제임. 특히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에 대해 공통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양육 및 보육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강화가 요구됨. 현재 서울시 사업 중의 자녀양육 멘토와 기존아이돌보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부자가정의 이용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부모 가족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원은 1순위 생계비 지원, 2순위 양육 및 학비 보조, 3순위 주거지원 등으로 나타남.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성한부모의 경우,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립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됨. 또한 취업연계를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단기성 교육훈련지원만으로는 안정적 일자리 연계가 어려우며 숙련된 기술습득을 위한 장기훈련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및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심리적 지원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의 한부모(싱글맘 혹은 싱글대디)뿐 아니라 그 자녀는 생활하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함. 특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상담에서 전문치료가 필요함. 모자가족의 경우 시설이용자나 관계기관 등을 통해 상담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부자가족의 이용률은 인식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본 실태조사에서도 여성한부모가족에 비해 부자가족이 한부모 가족된 후 주변사람들과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느끼는 비율도 더 높고, 소득이 적은 남성한부모가 향후 생활에 대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지원서비스지원도 필요시됨. 또한 사회전반적으로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 수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인식개선 캠페인과 홍보 등 이 요구됨.

X

서울시 아동·청소년 안전 및 건강 실태 조사

김민경 (정책개발실 선임연구원)

김유나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김신희 (정책개발실 위촉연구원)

X 서울시 아동·청소년 안전 및 건강 실태 조사¹⁾

제1절 서울시 아동·청소년 안전

1. 서울시 아동·청소년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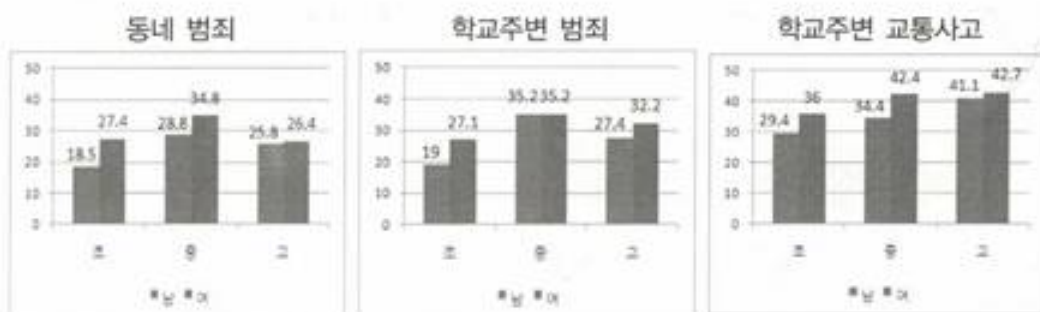
- 여학생들의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남학생보다 높음
- 중학생의 35.2%가 학교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
- 학교주변 교통사고 위험 인식은 초(32.5%)→중(38.1%)→고(41.9%)로 갈수록 높음

- 서울시 아동·청소년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인식 실태를 살펴보면,
 - “여학생들의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네 범죄, 학교주변 범죄 및 학교주변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인식 모두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
 -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의 42.7%가 학교주변 교통사고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아동·청소년 1,750 케이스를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시

- 「2009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는 총 9개 영역으로 구성: ① 한국아동·청소년 활동 문화조사 ② 한국청소년 진로·직업실태조사 ③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④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⑤ 세대간 사회의식비교조사 ⑥ 한국아동·청소년 게임중독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 ⑦ 한국아동·청소년 비만실태조사 ⑧ 한국아동·청소년 생활태도·가출실태조사 ⑨ 한국고등학생의 학업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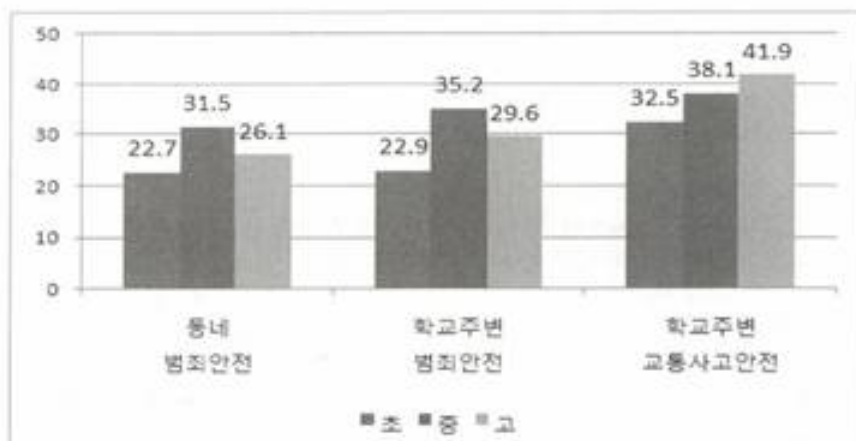
-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제주도제외) 초·중·고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총 8,533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한 전국단위의 아동·청소년 통합 데이터임



Ⅰ 그림 X-1 Ⅰ (동네 및 학교주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도 (성별비교)

○ “청소년(중고생)의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아동(초등학생)보다 높아”

- 중고생이 인식하는 학교주변의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수준이 평균 2점대로 낮게 나타나는 등 중고생이 초등학생보다 주거 및 학교주변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
- 특히, 중학생의 경우 35.2%가 학교주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31.5%가 주거 환경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안전 인식. 중학생의 주거 및 학교주변 범죄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함을 시사



Ⅰ 그림 X-2 Ⅰ (동네 및 학교주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정도 (초중고비교)

- 학교주변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초(32.5%)→중(38.1%)→고(41.9%)로 갈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지정 등으로 교통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중·고등학교 주변 별도의 교통안전 관리 부재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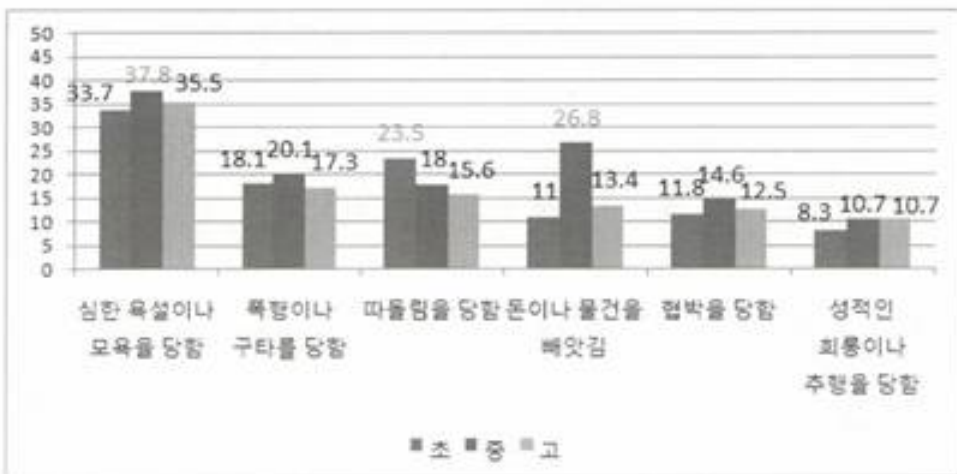
2. 서울시 아동청소년 폭력피해 실태

1) 학교폭력 피해 및 대처 실태

- 초등학생 10명 중 2명이상(23.4%)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음
- 초·중·고생 30% 이상이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하는 등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
- 중학생 26.8%가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음
- 학교폭력 후 무대응 비율이 초(27.6%)→중(35.6%)→고(45.1%)로 갈수록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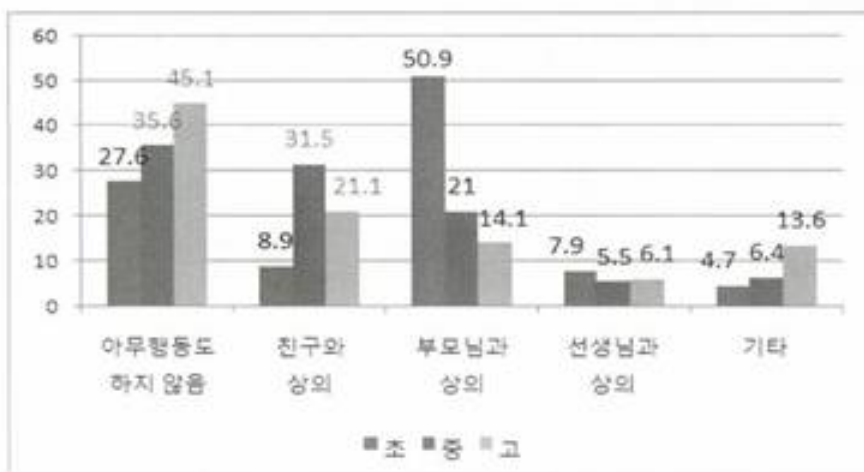
□ 서울시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및 대처 실태를 살펴보면,

- 학교폭력의 경우 심한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중학생 37.8%, 고등학생 35.5%, 초등학생 33.7% 등 다른 폭력에 비해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평균 1.5점)한 것으로 나타남
- 언어폭력 이외에, 초등학생의 경우 '따돌림을 당함'이 23.5%로 아동 10명 중 2명이상 따돌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생의 경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Ⅰ 그림 X-3 Ⅰ 학교폭력 경험률

- 학교폭력 피해 후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아무행동도 하지 않음' 비율이 초등학생 27.6%, 중학생 35.6%, 고등학생 45.1%로 피해학생의 상당수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임을 시사
- 이와 함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님 및 선생님과 상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상의'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 21.0%, 고등학생 14.1% 순으로 나타남.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대해 학교 선생님과 상의하는 비율이 초·중·고 전체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됨
- 반면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와 상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초등학생 8.9%, 중학생 31.5%, 고등학생 21.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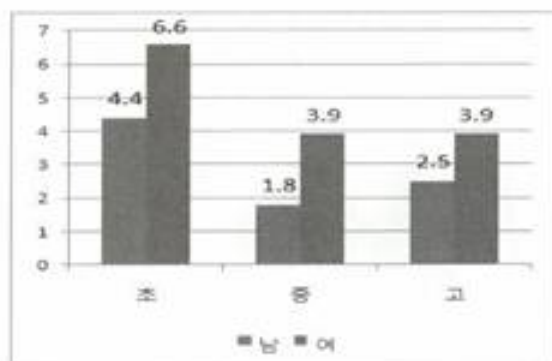


Ⅰ 그림 X-4 Ⅰ 학교폭력 후 대처방안

2)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인 피해 및 대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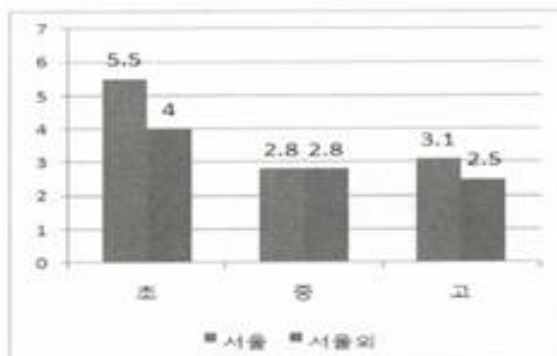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성적피해 경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성적피해 높게 나타나는 등 아동 성폭력 문제 심각
- 서울지역 아동·청소년의 성적피해 경험 비율이 서울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피해 후 '혼자서 해결'하는 비율이 75%로 대부분을 차지
- 초등학생 25.6%, 중학생 16.0%, 고등학생 21.3% 성교육 경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인 피해 및 대응 실태를 살펴보면,
 - 아동·청소년 성적피해 경험 초·중·고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 성적피해 경험에 있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2.2%p로 가장 크게 나타남. 중학생 2.1%p, 고등학생 1.4%p 여학생과 남학생 차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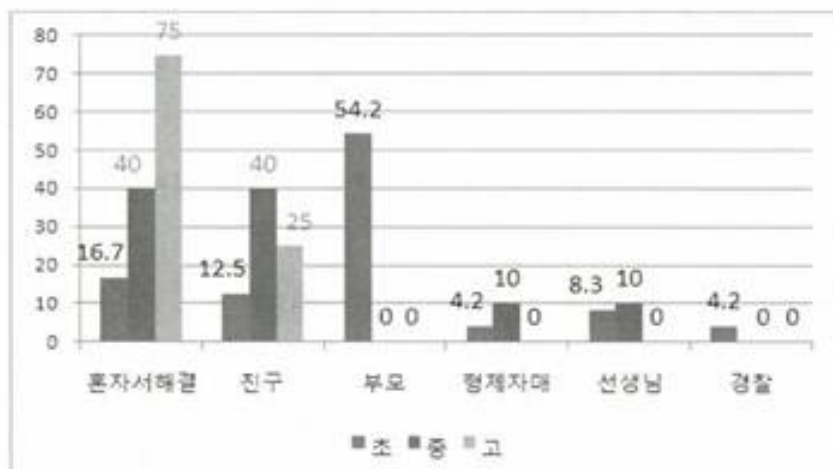
■ 그림 X-5 ■ 성적피해 경험 성별비교(서울지역)

-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성적피해 높게 나타나는 등 유아 성폭력 문제 심각
 - 성적 피해경험은 초등학생 5.5%, 고등학생 3.1%, 중학생 2.8%로 초등학생이 중·고생에 비해 성적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보다 아동의 성적피해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
- 서울지역 아동청소년의 성적피해 경험 비율이 서울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서울지역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성적피해 경험 비율이 서울외 지역 보다 높고, 중학생의 성적피해 경험 비율은 서울지역과 서울외지역이 같은 비율로 나타남



■ 그림 X-6 ■ 성적피해 경험 성별비교(서울외지역)

-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피해 후 '혼자서 해결'하는 비율이 75%로 대부분을 차지
- 초등학생의 경우 성적피해 경험 후 대처방안으로, '부모에게 알림'이 54.2%로 가장 높고, 중학생의 경우 '혼자서 해결' 및 '친구에게 알림'이 각각 40%로 높게 나타남.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성적피해 경험 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Ⅱ 그림 X-7 Ⅱ 성적피해 후 보고대상

- 초등학생 25.6%, 중학생 16.0%, 고등학생 21.3% 성교육 경험 없어
- 성교육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25.6%, 고등학생 21.3%, 중학생 16.0% 순으로 성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법정 학교 성교육 시수(연간 1회 1시간)가 제도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존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성교육 실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
- 성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 78.7%, 초등학생 74.4% 순으로 나타남

표 X-1 성교육 경험여부

구분	없음	있음	전체
초	25.6	74.4	100.0(464)
중	16.0	84.0	100.0(511)
고	21.3	78.7	100.0(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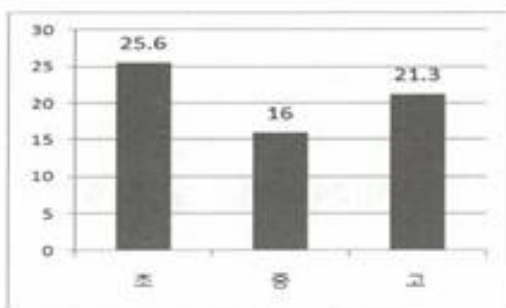


그림 X-8 성교육 무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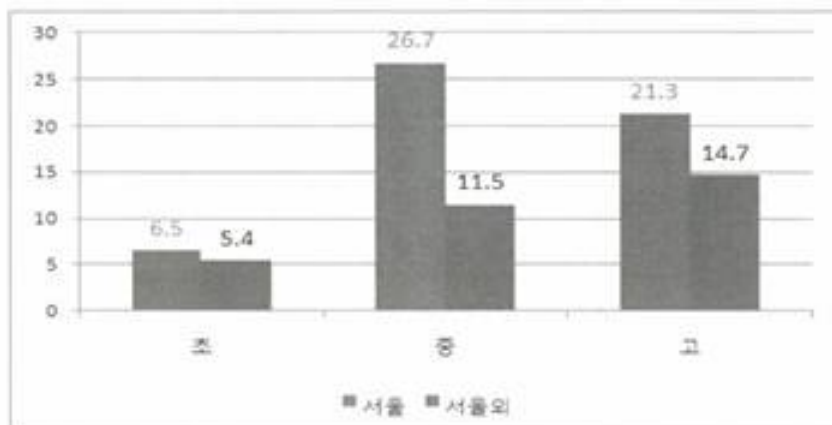
-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성교육 경험 비율이 78.7%인데 반해, 성적피해 후 '혼자서 해결(75%)'하거나 '친구(25%)'와 문제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볼 때, 현실 적용가능성을 강화하는 등 성교육 내용의 질적 제고 노력이 필요함

3. 서울시 아동·청소년 가출 및 비행 현황

- 서울지역 초·중고생 중학생 가출경험 비율은 서울외 지역의 2.3배
- 서울지역 초·중고생 가출경험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부모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 가출 청소년의 80% 이상이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이용경험 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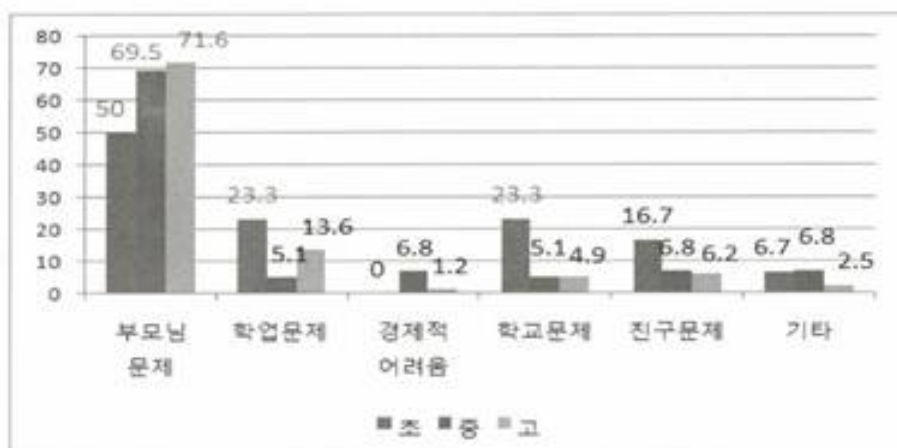
- 서울시 아동·청소년 가출 및 비행 실태를 살펴보면,
 - 서울지역 중학생 가출 경험 비율은 서울외지역의 2.3배
 - 서울지역 중학생 가출 경험 비율은 26.7%로, 서울외지역(11.5%)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생 가출 경험 비율은 서울지역이 21.3%로 서울외지역(14.7%)보다 1.4배 이상 높으며, 초등학생 가출 경험 비율도 서울지역이 6.5%로 서울외지역(5.4%)보다 높게 나타남
 - 서울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지역의 가출문제, 특히 중학생 가출 문제가 심각. 서울과 서울외지역 모두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 가

출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 가출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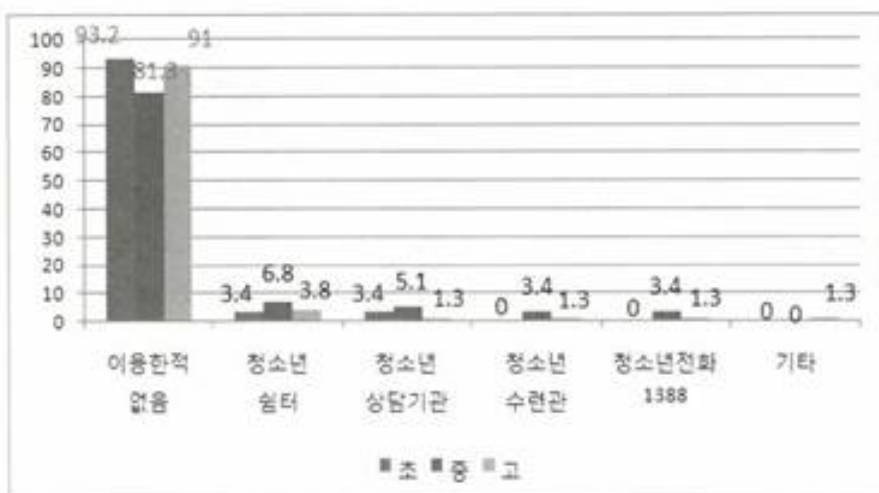
【그림 X-9】 가출경험률 비교(서울/서울외)

- 서울지역 초중고생 가출경험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부모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 가출경험의 원인으로 초·중·고등학생 모두 불화, 폭행, 간섭 등 부모님과 문제의 문제가 가장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50%), 중학생(69.5%), 고등학생(71.6%)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가출 원인에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초등학생의 경우, 불화, 폭행, 간섭 등 부모님 문제(50%) 다음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23.3%), '갈등, 폭력 등 학교문제'(23.3%),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16.7%) 순으로 가출 원인이 높게 나타남
 -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가 69.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6.8%,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6.8% 순으로 가출 원인이 높게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가 71.6%, '학업에 대한 부담감' 13.6%,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6.2% 순으로 나타남



Ⅰ 그림 X-10 Ⅰ 가출경험 원인

- 가출 청소년의 80%이상이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이용경험 無
 - 가출 후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초등학교 93.2%, 고등학교 91.0%, 중학생 8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출청소년서비스 이용률은 중학생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9%, 초등학교 6.8% 순으로 나타남
 - 낮은 가출청소년 서비스 이용률 가운데, 초등학교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기관 각각 3.4%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청소년쉼터 6.8%, 청소년상담기관 5.1%, 청소년수련관(센터) 및 청소년전화 1388이 각각 3.4%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 청소년쉼터가 3.8%, 그 외 서비스는 각각 1.3%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가출청소년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 지지체계의 확충이 요구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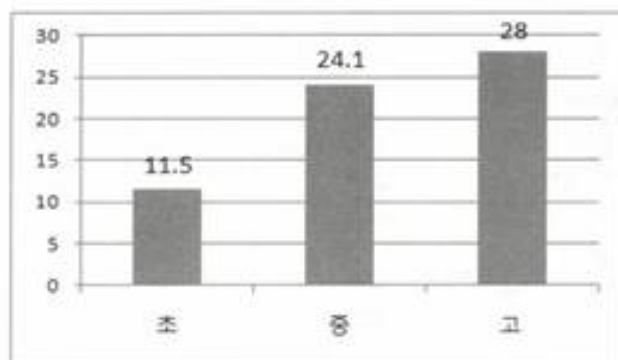


■ 그림 X-11 ■ 가출 후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이용경험

제2절 서울시 아동청소년 신체건강

- 아침식사 결식률이 초등학생(11.5%)→중학생(24.1%)→고등학생(28%)로 갈수록 증가
- 운동 안하는 비율이 초등학생(10.8%)→중학생(27.9%)→고등학생(40.8%)로 갈수록 증가
-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은 절반이상(55.3%)이 운동을 하지 않고 있어, 운동부족 심각
- 체격정도는 고등학생의 경우 '살찐 편' 이 44.5%로 중학생(43.8%)보다 높아
- 고등학생 8.3%만이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아동·청소년 아침식사 실태를 살펴보면,
 - 아침식사 결식률이 초등학생(11.5%)→중학생(24.1%)→고등학생(28%)로 갈수록 증가
 -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1/4이상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영양 및 예방적 건강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



【그림 X-12】 학교가기 전 아침식사 하지 않은 비율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주로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 등 등교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결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지, 고등학교 65.1%, 중학교 56.7%, 초등학교 51.7% 순으로 나타남
- '입맛이 없어서'는 초등학생 31.0%, 중학생 26.3%, 고등학생 24.6% 순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 그밖에 '식사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습관이 되어서'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
- 대부분 등교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침식사 결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학교 조식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정책으로 고려해볼만 하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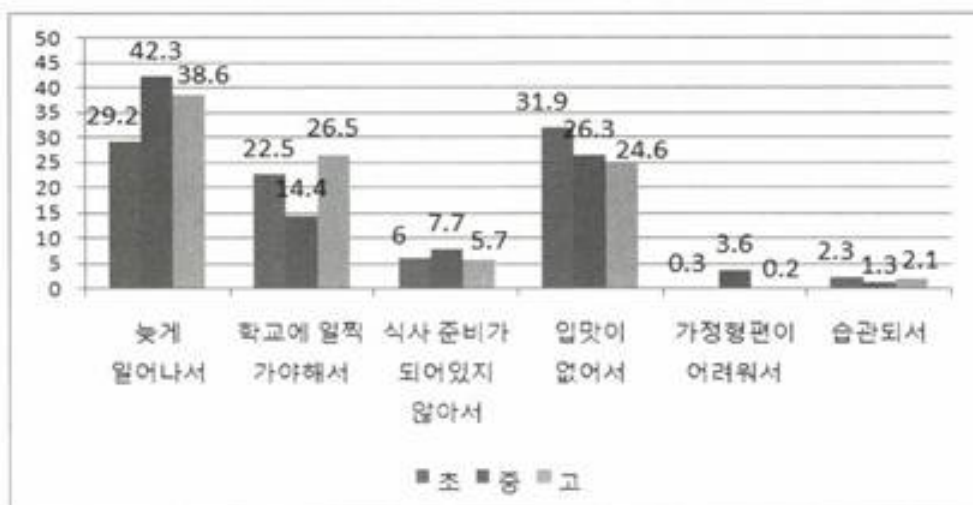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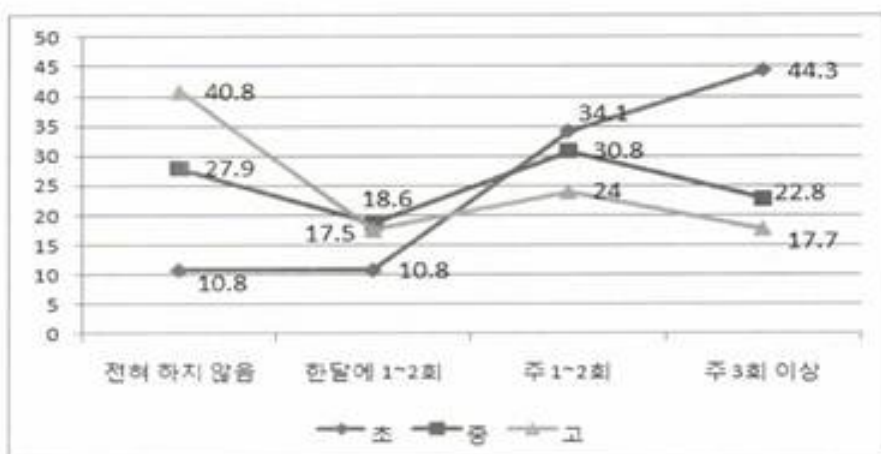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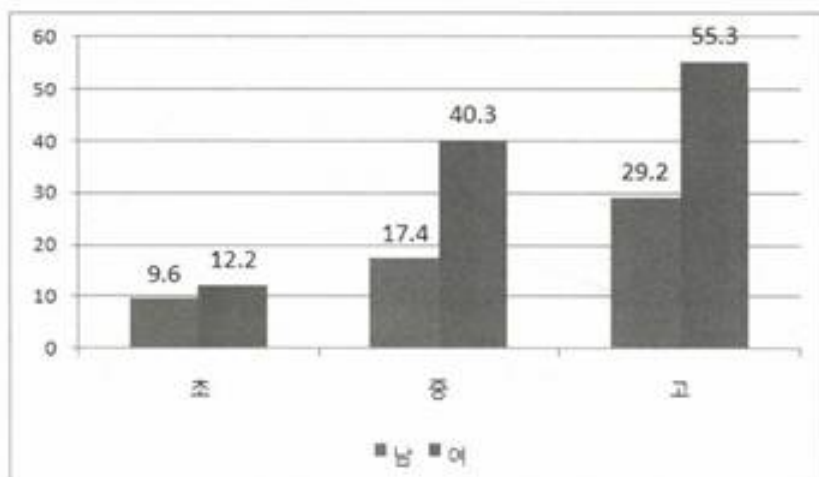
그림 X-13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 서울시 아동·청소년 운동실태를 살펴보면,
 - 운동 안하는 비율이 초등학생(10.8%)→중학생(27.9%)→고등학생(40.8%)로 갈수록 증가
 -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4배정도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위주 교육환경에 따른 신체활동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 반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44.3%로 가장 높고, 중학생 22.8%, 고등학생 17.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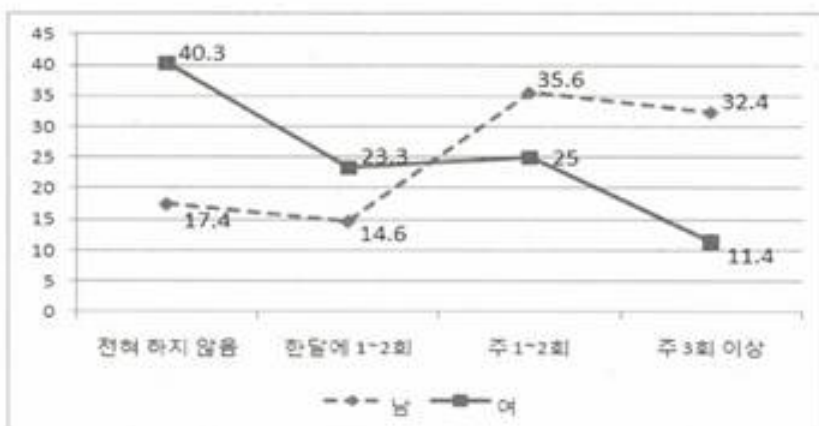


Ⅱ 그림 X-14 Ⅱ 초중고별 평소 운동정도 비교

- 성별 운동정도를 살펴본 결과, 운동을 전혀 안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여학생(40.3%), 고등학교 남학생(29.2%), 중학교 남학생(17.4%), 초등학교 여학생(12.2%), 초등학교 남학생(9.6%) 순으로 나타남
- 중학생 중 운동을 전혀 안하는 경우가 여학생이 40.3%로 남학생(17.4%)에 비해 2.3배 이상 운동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주 3회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32.4%로 여학생(11.4%)에 비해 2.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 체육교실 및 운동프로그램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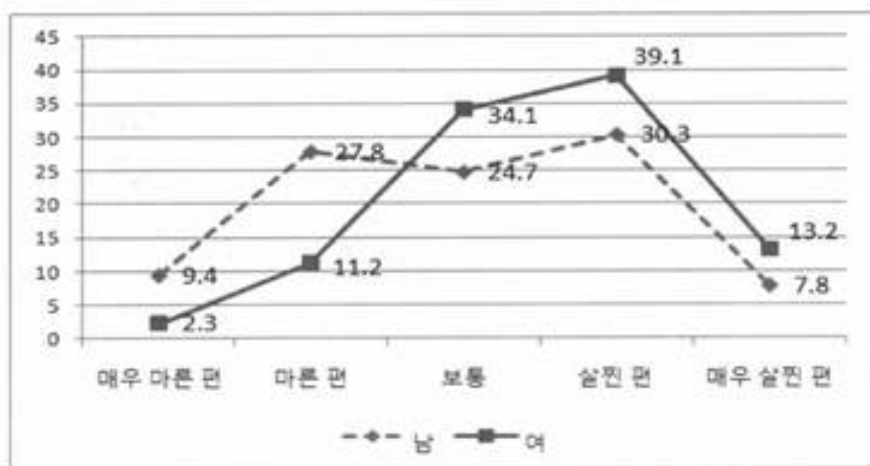


■ 그림 X-15 ■ 성별 운동 전혀 안하는 비율



■ 그림 X-16 ■ 성별 평소 운동정도 비교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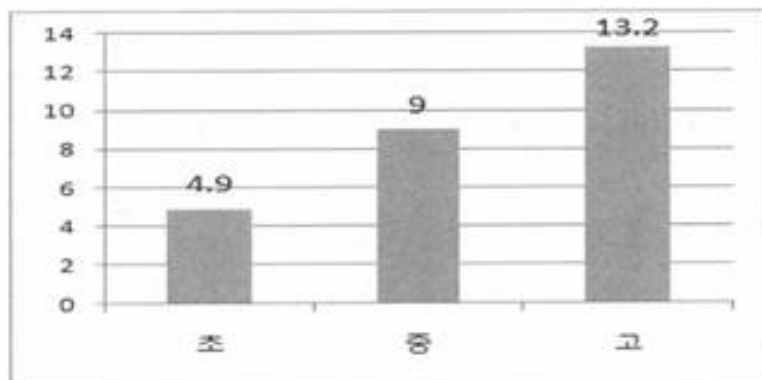
- 서울시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를 살펴보면,
 - 체격정도는 고등학생의 경우 '살찐 편'이 44.5%로 중학생(43.8%)보다 높아
 -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은 '살찐 편'이 52.3%로 고등학교 남학생(38.1%)보다 14.2% 높게 나타남



■ 그림 X-17 ■ 자신의 체격 정도(고등학생 성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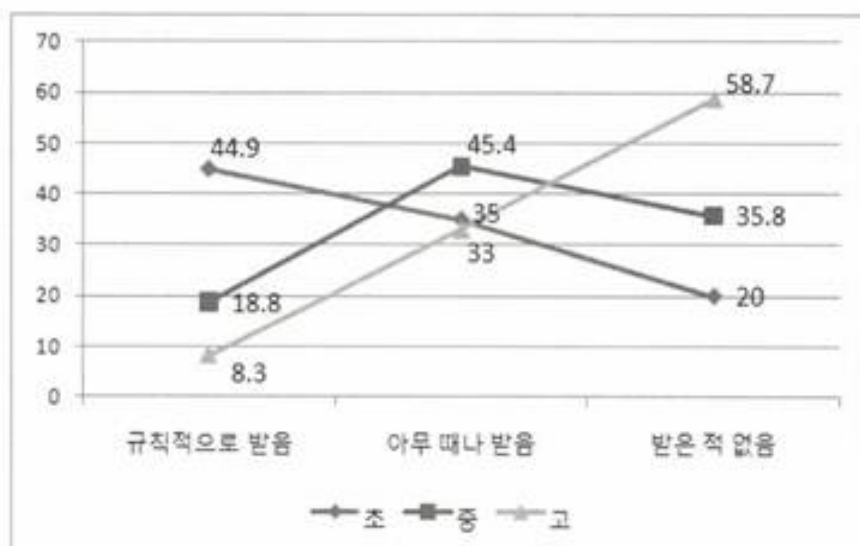
□ 서울시 아동·청소년 건강 상태(주관적)를 살펴보면,

- 초(4.9%)→중(9%)→고(13.2%)로 갈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
 -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생 74.9%, 중학생 56.9%, 고등학교생 50%로 학년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 감소
 - 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



■ 그림 X-18 ■ 초중고별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

- 고등학생 8.3%만이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초등학생(44.9%)→중학생(18.8%)→고등학생(8.3%)으로 갈수록 급격한 감소
 - 반면, 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는 비율은 초등학생(20%)→중학생(35.8%)→고등학생(58.7%)으로 갈수록 증가
 - 중고등학생 건강을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 대책마련이 필요함



Ⅰ 그림 X-19 Ⅰ 정기 건강검진 여부

제3절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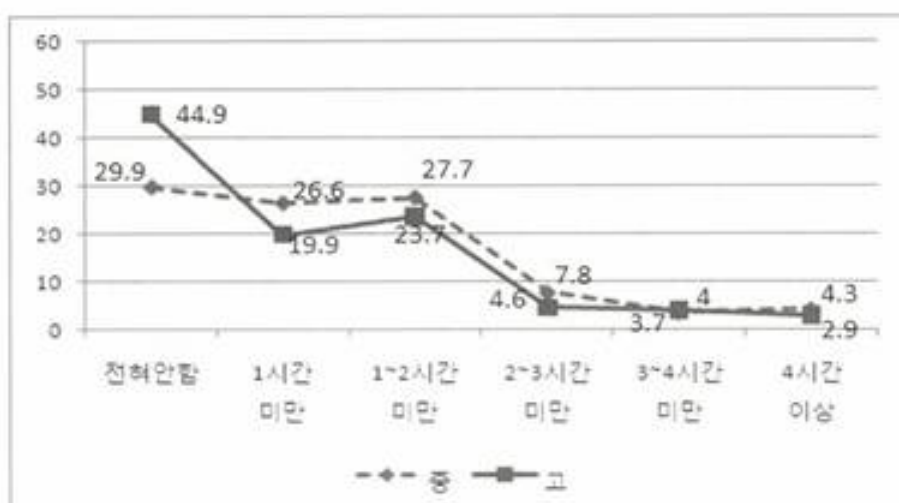
1. 인터넷 게임 이용 실태²⁾

-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자군(하루 2시간이상 게임) 중학생 15.8%, 고등학생 11.5%
- 주 5-6회 이상 게임하는 비율은 중학생 30.1%, 고등학생 3%
-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비율은 중학생 8.3%, 고등학생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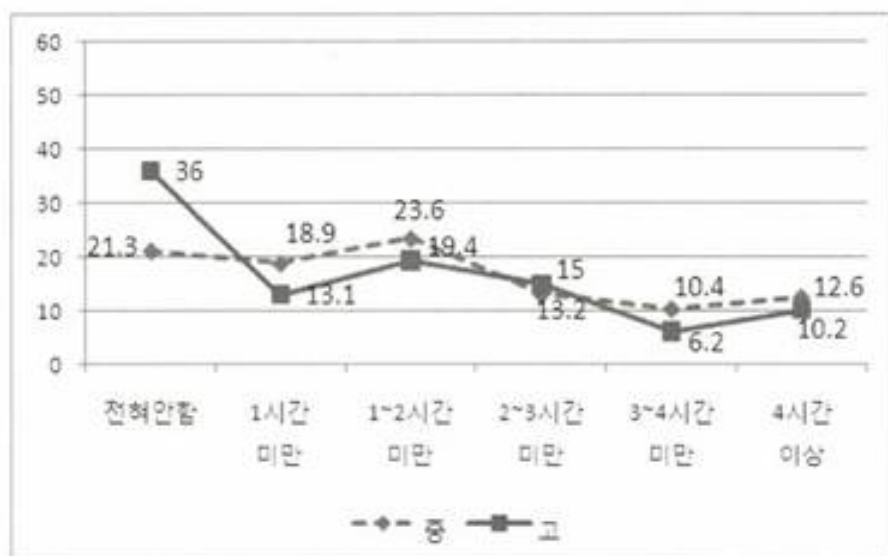
□ 서울시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실태를 살펴보면,

- 평일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자군 (하루 2시간이상 게임) 중학생 15.8%, 고등학생 11.5%
- 주말의 경우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중학생 36.2%, 고등학생 31.4%로 평일보다 2배 이상 심각한 수준
- 게임 한번 했을 때 2시간이상 지속하는 비율이 중학생 32.3%, 고등학생 29.5%, 특히 4시간이상 지속하는 비율도 중학생 9.5%, 고등학생 8.8%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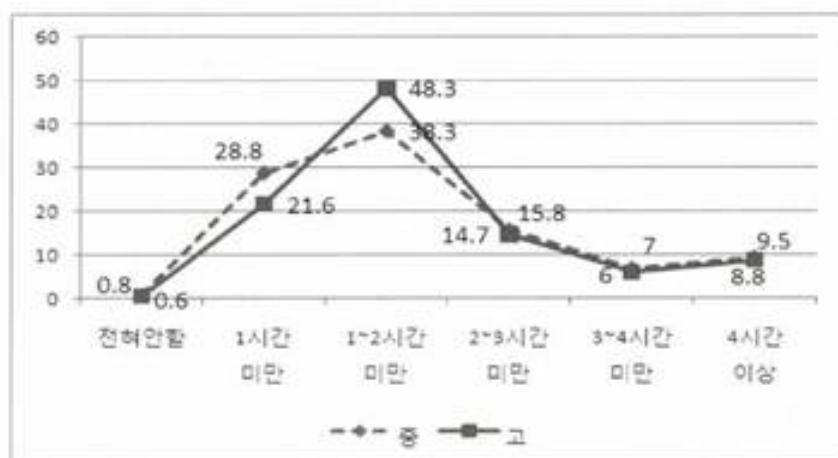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위험사용자군에는 게임중독 고위험 청소년과 게임중독 잠재위험 청소년이 포함됨
게임중독 고위험 청소년: 하루 2시간 30분이상, 매일 게임을 하는 경우
게임중독 잠재위험 청소년: 하루 2시간 이상, 주 5-6회 게임을 하는 경우
일반사용자: 하루 1시간 30분이하, 주 1-2회 이하 게임을 하는 경우



Ⅰ 그림 X-20 Ⅰ 하루 평균 게임시간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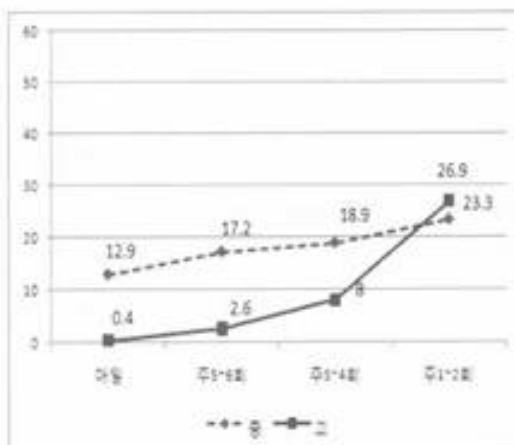


Ⅰ 그림 X-21 Ⅰ 하루 평균 게임시간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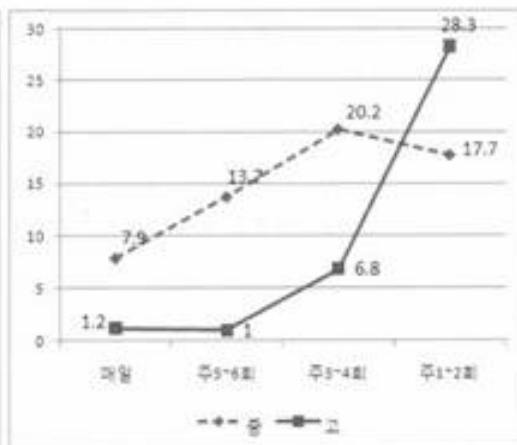


【그림 X-22】 게임 한번 했을 때 지속시간

- 주 5-6회 이상 게임하는 비율은 중학생 30.1%, 고등학생 3%
 - 인터넷위험사용자군(주5~6회 이상 게임) 비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10배 이상의 높게 나타나 중학생 인터넷 게임 중독률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게임을 하기 위한 pc방 이용률(주5~6회 이상)도 중학생 21.6%로 고등학생 2.2%보다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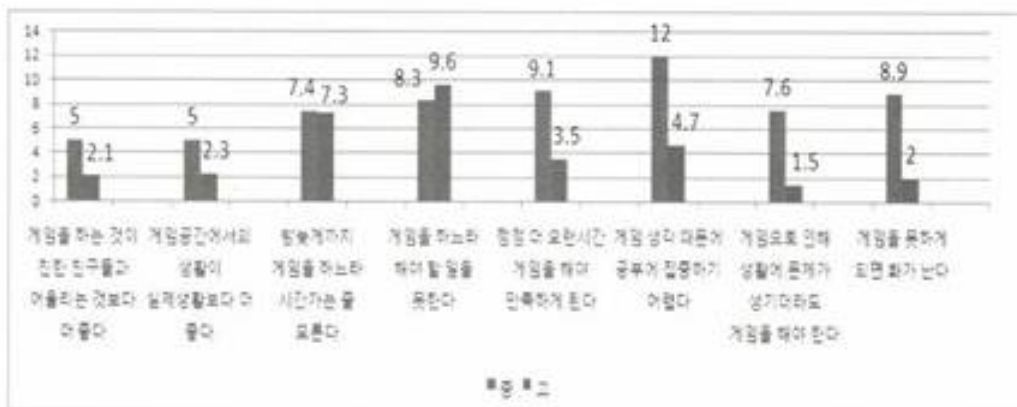


【그림 X-23】 게임빈도



【그림 X-24】 pc방 이용빈도

-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비율은 중학생 8.3%, 고등학생 9.6%
- 중학생의 경우 게임으로 인한 학업집중의 어려움(12%), 게임을 못하게 하면 화가 남(8.9%), 게임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함(8.3%)등 순으로 문제가 나타남
- 고등학생의 경우 게임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함(9.6%), 밤늦게 까지 게임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름(7.3%)등 순으로 문제가 나타남



Ⅰ 그림 X-25 Ⅰ 게임중독률 (자주그렇다+항상그렇다)

2. 유해매체 노출 실태

- 초→중→고로 갈수록 인터넷음란사이트, 폭력게임물 등 유해매체 노출 증가
- 초→중→고로 갈수록 유해매체 유해성에 대한 교육 경험 부족하고, 교육효과 감소

□ 서울시 아동·청소년 유해매체 노출실태를 살펴보면,

- 초→중→고로 갈수록 인터넷음란사이트, 폭력게임물 등 유해매체 노출 증가
- 특히 고등학생은 만19미만 시청불가 방송프로그램(39.7%), 중학생 및

초등학생은 폭력비디오나 폭력게임물(각각 31.8%, 17.3%) 유해매체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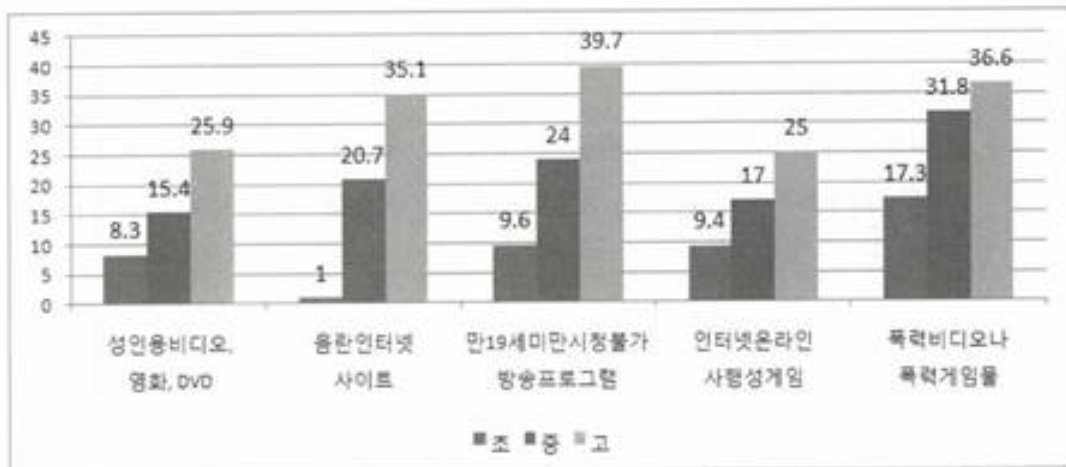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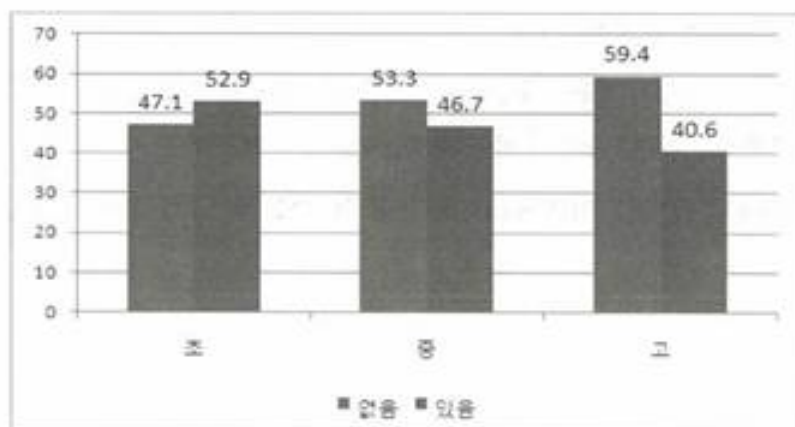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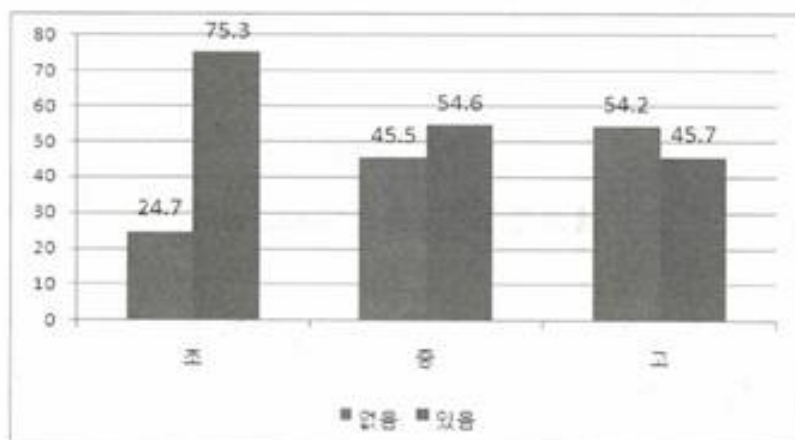


그림 X-26 유해매체 경험률

- 초→중→고로 갈수록 유해매체 유해성에 대한 교육경험 부족하고, 교육효과 감소
 - 특히 중고생의 경우 절반이 넘는 50%이상이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효과 역시 초등학생(75.3%)보다 중고등학생(각각 46.7%, 40.6%)이 매우 낮음
 - 유해매체 유해성에 대한 효과성 높은 교육프로그램 의무화 대책 마련 시급



■ 그림 X-27 ■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경험 여부



■ 그림 X-28 ■ 유해매체 유해성교육에 대한 효과정도

3. 스트레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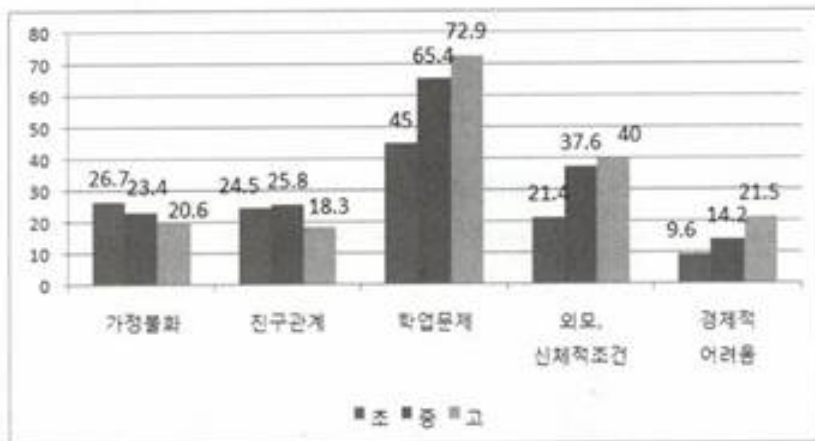
-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초(45%)→중(65.4%)→고(72.9%)로 갈수록 심각
- 중학교 여학생(51.4%)의 경우 남학생(25.9%)의 2배 정도가 외모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서울시 아동·청소년 스트레스 실태를 살펴보면,

- 초·중·고 모두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초(45%)→중(65.4%)→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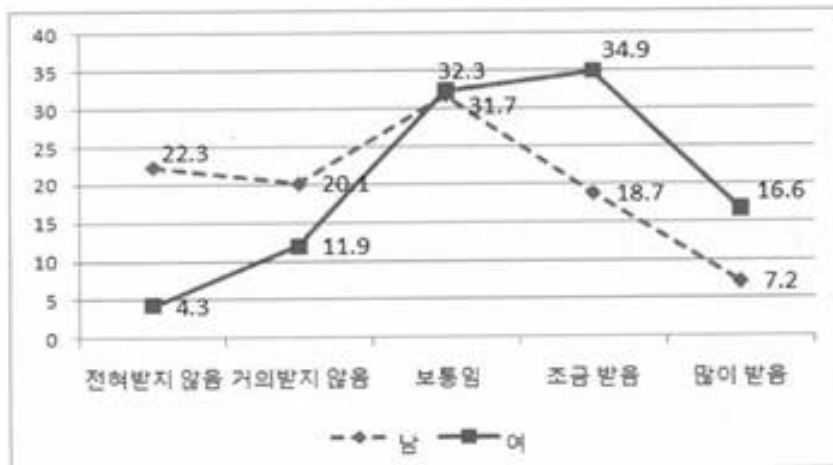
(72.9%)로 갈수록 심각

- 그 외 초등학생은 가정불화(26.7%), 친구관계(24.5%), 중학생은 외모, 신체적조건(37.6%), 친구관계(25.8%), 고등학생은 외모, 신체적조건(40%), 경제적 어려움(21.5%) 등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Ⅱ 그림 X-29 Ⅱ 스트레스 실태

- 외모 스트레스는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51.4%)이 남학생(25.9%)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나 성별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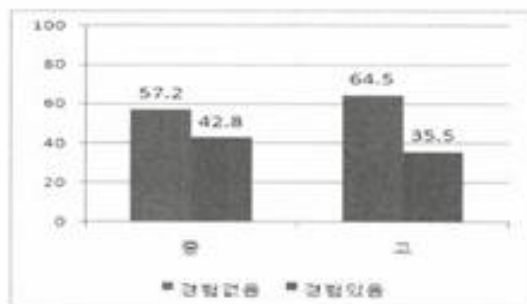
Ⅱ 그림 X-30 Ⅱ 외모·신체적 조건 스트레스 정도 (중학생/성별비교)

4. 자살에 대한 태도

- 자살생각 경험을 중학생 42.8%, 고등학생 35.5%로 심각
- 자살생각 원인으로 학교성적문제가 가장 높고, 중(33.9%)→고(35.7%)로 갈수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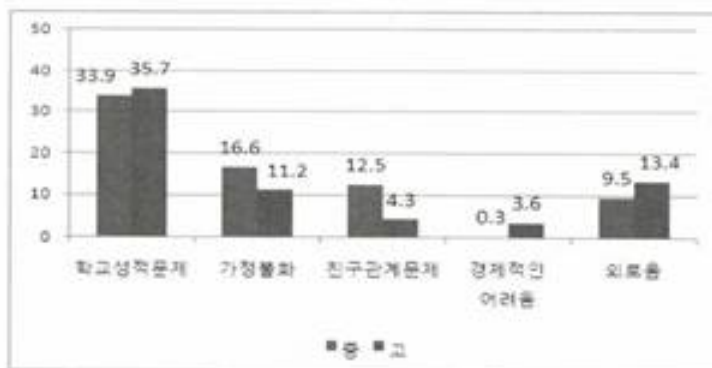
□ 서울시 아동·청소년 자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 자살생각 경험을 중학생 42.8%, 고등학생 35.5%로 심각



Ⅰ 그림 X-31 Ⅰ 자살생각 경험

- 학교성적문제 원인이 가장 높고, 중→고로 갈수록 증가
 - 자살생각 경험의 원인으로 학업성적문제가 중학생 33.9%, 고등학생 35.7%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지적됨
 - 그 외 중학생은 가정불화(16.6%), 친구관계문제(12.5%), 고등학생은 외로움(13.4%), 가정불화(11.2%)등의 원인이 높게 나타남



Ⅰ 그림 X-32 Ⅰ 자살생각 이유

【 별 침 】

1.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안전

표 X-별침-1 범죄 및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초	계	9.3	13.4	28.3	24.4	24.6	484	3.4	1.25
		남	9.8	8.7	27.6	23.2	30.7	254	3.6	1.28
		여	8.7	18.7	29.1	25.7	17.8	230	3.3	1.20
	중	계	10.1	21.4	37.7	21.8	8.9	514	3.0	1.09
		남	11.9	16.9	35.6	23.7	11.9	278	3.1	1.17
		여	8.1	26.7	40.3	19.5	5.5	236	2.9	1.00
	고	계	5.8	20.3	40.5	27.7	5.7	582	3.1	0.97
		남	5.9	19.9	34.9	32.4	6.9	321	3.1	1.01
		여	5.7	20.7	47.5	21.8	4.2	261	3.0	0.91
내가 다니는 학교 주변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초	계	7.3	15.6	26.8	26.8	23.7	482	3.4	1.21
		남	6.7	12.3	25.3	25.7	30.3	253	3.6	1.22
		여	7.9	19.2	28.4	27.9	16.6	229	3.3	1.18
	중	계	10.7	24.5	42.0	15.2	7.6	514	2.8	1.05
		남	12.9	22.3	39.6	15.5	9.7	278	2.9	1.13
		여	8.1	27.1	44.9	14.8	5.1	236	2.8	0.96
	고	계	5.7	23.9	46.7	20.8	2.9	582	2.9	0.89
		남	6.2	21.2	44.5	24.3	3.7	321	3.0	0.93
		여	5.0	27.2	49.4	16.5	1.9	261	2.8	0.83
내가 다니는 학교 주변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초	계	10.7	21.8	33.3	18.2	15.9	477	3.1	1.21
		남	12.3	17.1	33.3	17.9	19.4	252	3.2	1.27
		여	8.9	27.1	33.3	18.7	12.0	225	3.0	1.14
	중	계	10.5	27.6	40.6	15.0	6.4	515	2.8	1.03
		남	13.3	21.1	40.9	16.8	7.9	279	2.9	1.10
		여	7.2	35.2	40.3	12.7	4.7	236	2.7	0.94
	고	계	11.4	30.5	43.4	12.4	2.4	581	2.6	0.92
		남	12.8	28.3	42.4	13.4	3.1	321	2.7	0.97
		여	9.6	33.1	44.6	11.2	1.5	260	2.6	0.86

* 주) 평균값은 5점 만점으로 구성됨.

표 X-별첨-2 학교폭력 경험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서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심한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초	66.3	20.6	9.4	3.7	481	1.5	0.81
	중	62.1	25.6	10.1	2.1	515	1.5	0.76
	고	64.5	22.2	8.8	4.5	581	1.5	0.83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초	81.9	12.3	3.5	2.3	480	1.3	0.64
	중	80.0	14.8	3.9	1.4	515	1.3	0.60
	고	82.6	12.7	3.1	1.5	581	1.2	0.58
따돌림을 당함	초	76.6	13.7	7.5	2.3	482	1.4	0.72
	중	82.1	11.5	5.1	1.4	514	1.3	0.61
	고	84.3	12.0	2.4	1.2	581	1.2	0.53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초	89.0	6.7	3.1	1.2	481	1.2	0.53
	중	73.2	14.4	10.1	2.3	514	1.4	0.77
	고	86.6	9.6	2.8	1.0	581	1.2	0.52
협박을 당함	초	88.1	7.3	3.5	1.0	481	1.2	0.53
	중	85.4	9.7	3.5	1.4	515	1.2	0.56
	고	87.6	8.8	2.8	0.9	581	1.2	0.50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당함	초	91.7	5.2	2.5	0.6	481	1.1	0.44
	중	89.3	8.2	1.7	0.8	515	1.1	0.45
	고	89.3	7.8	1.7	1.2	580	1.2	0.48

* 주) 평균값은 5점 만점으로 구성됨.

표 X-별첨-3 학교폭력 후 대처방안

구분		아무행동도 하지 않음	친구와 상의	부모님과 상의	선생님과 상의	기타	전체
학교폭력 후 대처방안	초	27.6	8.9	50.9	7.9	4.7	100.0(214)
	중	35.6	31.5	21.0	5.5	6.4	100.0(219)
	고	45.1	21.1	14.1	6.1	13.6	100.0(213)

표 X-별첨-4 성적피해경험

구분			서울			서울 외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성적 피해 경험	초	계	94.5	5.5(26)	100.0(477)	96.0	4.0	100.0(2,380)
		남	95.6	4.4	100.0(249)	95.6	4.4	100.0(1,227)
		여	93.4	6.6	100.0(228)	96.4	3.6	100.0(1,153)
	중	계	97.2	2.8(14)	100.0(505)	97.2	2.8	100.0(2,571)
		남	98.2	1.8	100.0(272)	97.6	2.4	100.0(1,227)
		여	96.1	3.9	100.0(233)	96.8	3.2	100.0(1,294)
	고	계	96.9	3.1(18)	100.0(577)	97.5	2.5	100.0(2,890)
		남	97.5	2.5	100.0(319)	97.8	2.2	100.0(1,438)
		여	96.1	3.9	100.0(258)	97.2	2.8	100.0(1,452)

표 X-별첨-5 가출경험 유무

구분			서울			서울 외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가출 경험	초		93.5	6.5(30)	100.0(464)	94.6	5.4	100.0(2,301)
	중		73.3	26.7(138)	100.0(517)	88.5	11.5	100.0(2,330)
	고		78.7	21.3(124)	100.0(582)	85.3	14.7	100.0(2,609)

표 X-별첨-6 가출경험 원인

구분		부모님 문제	학업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교문제	친구문제	기타	전체
가출경험 원인	초	50.0	23.3	0	23.3	16.7	6.7	100.0(30)
	중	69.5	5.1	6.8	5.1	6.8	6.8	100.0(59)
	고	71.6	13.6	1.2	4.9	6.2	2.5	100.0(81)

표 X-별첨-7 가출 후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
가출 후 서비스 이용경험	초	93.2	6.8	3.4	3.4	0	0	0	100.0(29)
	중	81.3	18.7	6.8	5.1	3.4	3.4	0	100.0(59)
	고	91.0	9.0	3.8	1.3	1.3	1.3	1.3	100.0(79)

2.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

표 X-별첨-8 학교가기 전 아침식사 여부

구분		매일하는 편	보통하는 편	하지않는 편	전혀 하지 않는 편	전체
아침식사 여부	초	67.4	21.1	7.4	4.1	100.0(484)
	중	57.1	18.8	15.0	9.1	100.0(515)
	고	51.0	21.0	17.2	10.8	100.0(582)

표 X-별첨-9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구분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가야 해서	식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입맛이 없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습관이 되어서	기타	전체
아침식사 하지 않는 이유	초	29.2	22.5	6.0	31.9	0.3	2.3	7.7	100.0 (298)
	중	42.3	14.4	7.7	26.3	3.6	1.3	4.4	100.0 (388)
	고	38.6	26.5	5.7	24.6	0.2	2.1	2.1	100.0 (422)

표 X-별첨-10 평소 운동의 정도

구분			전혀 하지 않음	한달에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전체
운동 정도	초	계	10.8	10.8	34.1	44.3	100.0(481)
		남	9.6	7.6	30.3	52.6	100.0(251)
		여	12.2	14.3	38.3	35.2	100.0(230)
	중	계	27.9	18.6	30.8	22.8	100.0(517)
		남	17.4	14.6	35.6	32.4	100.0(281)
		여	40.3	23.3	25.0	11.4	100.0(236)
	고	계	40.8	17.5	24.0	17.7	100.0(576)
		남	29.2	16.0	30.7	24.1	100.0(319)
		여	55.3	19.5	15.6	9.6	100.0(257)

표 X-별첨-11 | 자신의 체격 정도(주관적 생각)

구분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약간 살찐 편	매우 살찐 편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체격 정도	중	계	4.5	20.7	31.0	36.6	7.2	513	3.2	1.00
		남	6.8	24.7	28.7	32.3	7.5	279	3.1	1.07
		여	1.7	15.8	33.8	41.9	6.8	234	3.4	0.89
	고	계	6.2	20.4	28.9	34.3	10.2	578	3.2	1.08
		남	9.4	27.8	24.7	30.3	7.8	320	3.0	1.13
		여	2.3	11.2	34.1	39.1	13.2	258	3.5	1.08

표 X-별첨-12 | 건강한 정도 (주관적 생각)

구분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건강한 정도	초		1.2	3.7	20.1	45.5	29.4	483	4.0	0.87
	중		1.0	8.0	34.2	40.9	16.0	514	3.6	0.88
	고		0.5	12.7	36.8	39.7	10.3	582	3.5	0.86

표 X-별첨-13 | 정기 건강검진 여부

구분		규칙적으로 받음	아무 때나 받음	받은 적 없음	전체
건강검진 여부	초	44.9	35.0	20.0	100.0(474)
	중	18.8	45.4	35.8	100.0(511)
	고	8.3	33.0	58.7	100.0(581)

3.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표 X-별첨-14 하루 평균 게임시간 및 게임 지속시간 (중, 고)

구분			전혀 안한다	한다	1시간 미만	1~2 시간 미만	2~3 시간 미만	3~4 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게 임 시 간	하루 평균 게임시간 (평일)	중	29.9	70.1	26.6	27.7	7.8	3.7	4.3	100.0(538)
		고	44.9	55.1	19.9	23.7	4.6	4.0	2.9	100.0(519)
	하루 평균 게임시간 (주말)	중	21.3	76.9	18.9	23.6	13.2	10.4	12.6	100.0(539)
		고	36.0	64.0	13.1	19.4	15.0	6.2	10.2	100.0(519)
	게임 한번 했을 때 지속시간	중	0.8	99.2	28.8	38.3	15.8	7.0	9.5	100.0(400)
		고	0.6	99.4	21.6	48.3	14.7	6.0	8.8	100.0(319)

표 X-별첨-15 게임빈도 및 pc방 이용빈도 (중, 고)

구분			매일	주5~6회	주3~4회	주1~2회	하지않음	기타	전체
이용 실태	게임 빈도	중	12.9	17.2	18.9	23.3	25.1	2.6	100.0 (541)
		고	0.4	2.6	8.0	26.9	47.6	14.6	100.0 (536)
	pc방 이용 빈도	중	7.9	13.7	20.2	17.7	38.3	2.3	100.0 (520)
		고	1.2	1.0	6.8	28.3	51.3	11.5	100.0 (515)

표 X-별첨-16 게임중독 관련 문항 (중, 고)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중	67.4	27.6	3.5	1.5	540	1.4	0.63
	고	72.3	25.6	1.3	0.8	519	1.3	0.54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 제생활보다 더 좋다	중	74.8	20.2	3.9	1.1	540	1.3	0.60
	고	83.7	14.0	1.5	0.8	520	1.2	0.48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중	79.4	13.2	4.8	2.6	539	1.3	0.68
	고	65.8	26.9	5.8	1.5	520	1.4	0.6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중	68.1	23.6	6.1	2.2	539	1.4	0.71
	고	57.0	33.3	7.3	2.3	519	1.6	0.73
점점 더 오랜시간 게임을 해 야 만족하게 된다	중	66.1	24.8	7.4	1.7	540	1.5	0.70
	고	77.5	19.0	2.9	0.6	520	1.3	0.54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 중하기 어렵다	중	62.5	25.4	9.8	2.2	539	1.5	0.76
	고	72.3	23.1	3.7	1.0	519	1.3	0.60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 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중	66.5	25.8	6.1	1.5	538	1.4	0.68
	고	90.6	7.9	1.3	0.2	519	1.1	0.37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중	65.5	25.6	6.9	2.0	539	1.5	0.71
	고	83.1	15.0	1.0	1.0	520	1.2	0.49

표 X-별첨-17 유해매체 중독 (초, 중, 고)

구분		서울							서울외						
		한번 도 없음	있음	일년	한달	주	주	전체	한번 도 없음	있음	일년	한달	주	주	전체
				1~2 회	1~2 회	1~2 회	3회 이상				1~2 회	1~2 회	1~2 회	3회 이상	
성인용 비디오 영화, DVD	초	91.7	8.3	6.0	1.5	0.6	0.2	100.0 (480)	94.0	6.0	4.2	1.4	0.2	0.3	100.0 (2,398)
	중	84.6	15.4	7.0	4.3	1.6	2.5	100.0 (514)	88.4	11.6	5.1	3.2	1.2	2.0	100.0 (2,587)
	고	74.1	25.9	10.3	7.8	3.6	4.1	100.0 (580)	71.0	29.0	13.5	9.3	3.4	2.8	100.0 (2,889)
음란 인터넷 사이트	초	99.0	1.0	0.8	0	0	0.2	100.0 (482)	97.8	2.2	1.6	0.3	0.2	0.2	100.0 (2,400)
	중	79.3	20.7	8.7	5.6	2.7	3.7	100.0 (516)	81.0	19.0	8.5	5.3	2.4	2.7	100.0 (2,585)
	고	64.9	35.1	12.9	10.8	6.3	5.1	100.0 (573)	71.3	28.7	10.1	9.9	5.3	3.4	100.0 (2,888)
만19세 미만 시청 불가 방송 프로그램	초	90.4	9.6	4.6	1.9	1.5	1.7	100.0 (481)	92.7	7.3	3.5	1.4	1.3	1.0	100.0 (2,399)
	중	76.0	24.0	16.0	5.7	2.4	3.3	100.0 (509)	80.9	19.1	9.6	4.8	2.5	2.1	100.0 (2,581)
	고	60.3	39.7	16.1	14.2	6.2	3.3	100.0 (579)	57.2	42.8	17.0	15.9	6.7	3.3	100.0 (2,879)
인터넷 온라인 사행성 게임	초	90.6	9.4	6.0	1.3	0.4	1.7	100.0 (480)	91.0	9.0	6.3	1.3	0.6	0.8	100.0 (2,399)
	중	83.0	17.0	9.2	4.5	1.0	2.3	100.0 (513)	81.9	18.1	9.9	4.3	1.9	1.9	100.0 (2,586)
	고	75.0	25.0	12.4	5.7	3.8	3.1	100.0 (581)	68.3	31.7	15.2	9.9	3.7	2.8	100.0 (2,888)
폭력 비디오나 폭력 게임물	초	82.7	17.3	6.1	3.1	4.2	4.0	100.0 (479)	85.4	14.6	6.8	2.9	2.3	2.5	100.0 (2,398)
	중	68.2	31.8	10.1	7.8	6.8	7.2	100.0 (513)	71.4	28.6	10.1	7.9	4.2	6.3	100.0 (2,586)
	고	63.4	36.6	13.9	12.0	5.2	5.5	100.0 (581)	63.0	37.0	13.7	11.7	6.0	5.6	100.0 (2,890)

【표 X-별첨-18】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경험 여부

구분		없음	있음	전체
교육경험 여부	초	47.1	52.9	100.0(456)
	중	53.3	46.7	100.0(503)
	고	59.4	40.6	100.0(576)

【표 X-별첨-19】 유해매체 유해성교육에 대한 효과정도

구분		전혀없음	별로없음	약간있음	많이있음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교육 효과정도	초	14.1	10.6	37.9	37.4	227	3.0	1.02
	중	19.1	26.4	41.4	13.2	220	2.5	0.95
	고	18.8	35.4	38.1	7.6	223	2.4	0.87

【표 X-별첨-20】 스트레스 정도

구분		전혀받지	거의받지	보통임	조금 받음	많이 받음	전체			
		않음	않음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가정 불화	초	38.1	20.3	14.9	16.8	9.9	483	2.4	1.4	
	중	28.4	28.6	19.6	14.6	8.8	514	2.5	1.28	
	고	28.5	27.3	23.5	14.6	6.0	582	2.4	1.21	
친구 관계	초	32.8	23.2	19.5	15.6	8.9	482	2.5	1.32	
	중	23.3	27.4	23.3	20.2	5.6	514	2.6	1.20	
	고	19.4	32.6	29.6	14.9	3.4	582	2.5	1.07	
학업 문제	초	16.0	19.0	20.0	25.2	19.8	480	3.1	1.36	
	중	5.8	7.6	21.2	33.0	32.4	515	3.8	1.15	
	고	4.6	4.8	17.7	35.1	37.8	582	4.0	1.08	
외모, 신체적 조건	초	계	32.6	20.6	25.4	13.3	8.1	481	2.4	1.29
		남	35.2	21.7	24.9	10.7	7.5	253	2.3	1.26
		여	29.8	19.3	25.9	16.2	8.8	228	2.6	1.31
	중	계	14.0	16.4	32.0	26.1	11.5	513	3.1	1.20
		남	22.3	20.1	31.7	18.7	7.2	278	2.7	1.21
		여	4.3	11.9	32.3	34.9	16.6	235	3.5	1.04
	고	계	7.6	15.8	36.6	29.0	11.0	582	3.2	1.07
		남	11.5	17.8	38.0	25.5	7.2	321	3.0	1.09
		여	2.7	13.4	34.9	33.3	15.7	261	3.5	1.00
경제적 어려움	초	56.5	18.1	15.8	5.2	4.4	480	1.8	1.14	
	중	36.8	26.3	22.8	11.1	3.1	514	2.2	1.14	
	고	22.3	25.4	30.8	16.3	5.2	582	2.6	1.15	

표 X-별첨-21 자살생각 경험

구분		전혀없음	가끔있다	자주있다	전체
서울	중	57.2	34.1	8.7	100.0(516)
	고	64.5	31.2	4.3	100.0(580)

표 X-별첨-22 자살생각 이유

구분		학교성적 문제	가정불화	친구관계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기타	전체
자살생각 이유	중	33.9	16.6	12.5	0.3	9.5	27.1	100.0(295)
	고	35.7	11.2	4.3	3.6	13.4	31.8	100.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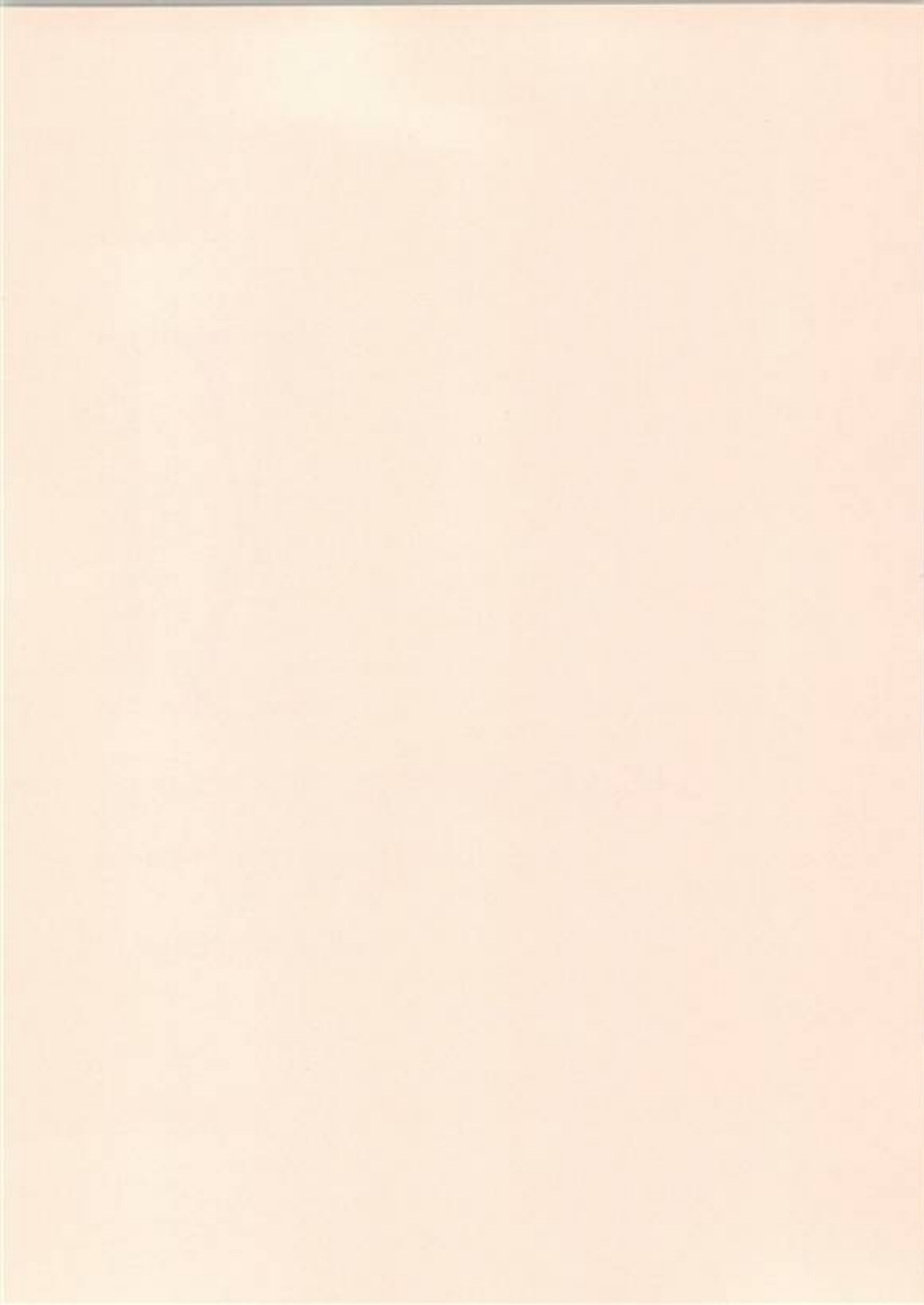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XI

서울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제도의 발전방향

김보람 (정책개발실 위촉연구원)



XI

서울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제도의 발전방향

제1절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는 학부모에게 급식당번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급식당번 참여를 위해 직장을 가진 학부모는 휴가를 내거나 유료도우미(1회 2만원 내외)를 고용하는 등 맞벌이 부부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었음.
- 맞벌이 가정이 많거나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급식도우미 지원을 통해 월 1~2회 급식당번에 참여하는 학부모, 특히 직장여성의 급식당번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노인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서울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의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본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 향후 본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함.

제2절 현황

- 초등학교 332개교에서 급식도우미 6,145명이 활동하고 있음(2010년 4월 기준)

표 XI-1 급식도우미 연차별 추진 실적

구 분	계	2007 (실적/계획)	2008 (실적/계획)	2009 (실적/계획)	2010
추진목표(인원)	6,400명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1,345명/1,311명	6,200명/4,500명	6,400명
소요예산(백만원)	20,289	-	2,042	8,547	9,700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 노인일자리아업 예산 활용(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자격: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근무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연중 계속 실시, 총 7개월(2분기 3개월, 3분기 2개월, 4분기 2개월)
- 급여 및 근무: 월 20만원, 월 40시간 이내 근무(1일 3~4시간)
- 지원내용: 학생식사 배식 및 식사예절 지도 등

제3절 조사개요

- 서울시 교육청과 대상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협조를 얻어 급식도우미를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급별 교사 1명, 학부모 1명, 급식도우미 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본 설문은 급식도우미 제도 운영, 급식도우미(배식, 자격, 위생), 만족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함.
- 서울시 소재 급식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2개의 초등학교 선정 후, 서울시 교육청과 대상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협조를 얻어 선정된 초등학교 학급별 교사 1명, 학부모 1명, 급식도우미 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그 결과 44개 초등학교의 교사 339명, 학

부모 343명, 급식도우미 333명으로 총 1,015명이 응답함.



급식도우미 현장 방문사진 I



급식도우미 현장 방문사진 II



급식도우미 현장 방문사진 III

Ⅰ 그림 XI-1 Ⅰ 급식도우미 현장 활동사진

제4절 조사결과

○ 급식도우미 제도의 운영

- 전반적으로 급식도우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급식도우미제도가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급식도우미임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급식도우미 제도의 도입', '급식도우미지원의 지속적 및 원활성', '급식도우미의 자격(60세 이상 여성)', '급식도우미의 인원의 적정성', '노인의 일자리 창출',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 '학부모의 급식 부담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교사, 학부모, 급식도우미 모두 4점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급식도우미의 임금(월20만원)의 적절성'에 대하여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다른 문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교

사, 학부모, 급식도우미의 순으로 도우미의 임금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급식도우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급식도우미 점심식사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급식도우미, 학부모, 교사의 순으로 급식 도우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호의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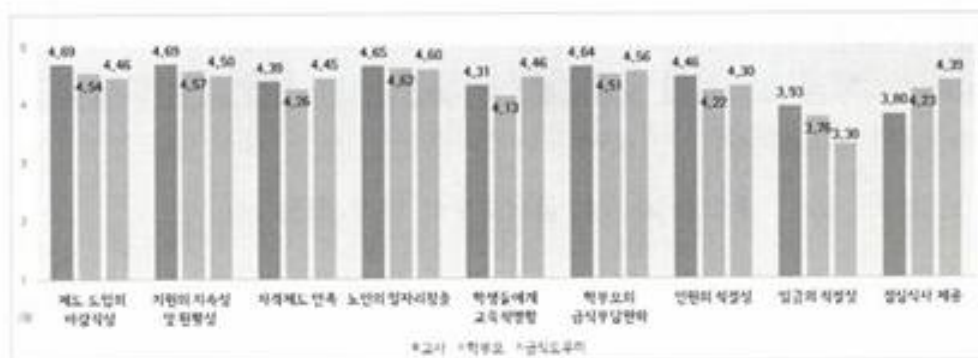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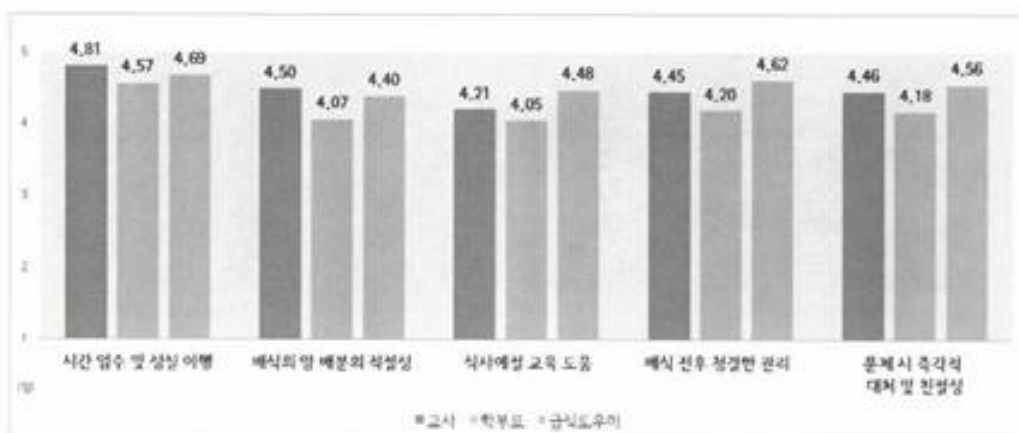


그림 XI-2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제도 운영의 만족도

○ 급식도우미의 배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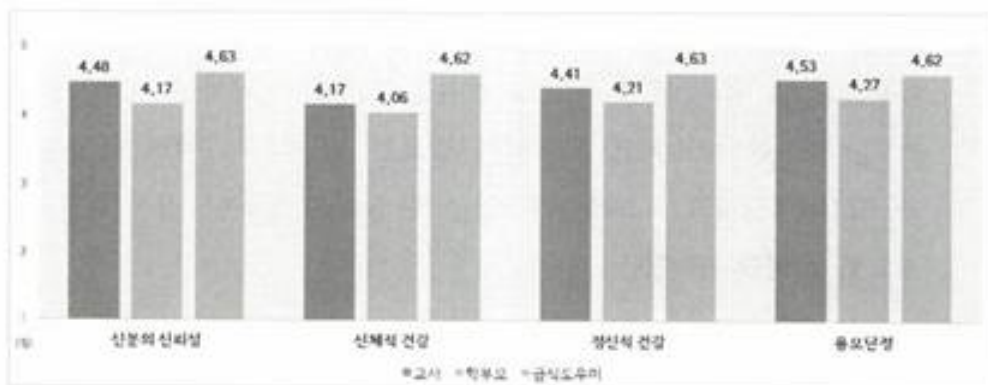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급식도우미의 배식 활동에 있어서 급식도우미가 배식시간 전에 도착하여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이 이행한다는 의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학생들의 식사예절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급식도우미의 배식활동과 관련하여 '급식도우미는 배식시간 전에 도착하여 시간을 엄수 및 성실한 이행', '식사 배식의 양 배분의 적절성', '학생들의 식사 예절 교육 도움', '배식 전후 관리상태 청결한 유지', '급식 상 문제가 있을 시 도우미의 즉각적 대처 및 친절성'에 대한 질문에 교사, 학부모, 급식도우미 모두 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러나 급식도우미의 배식활동에 대해 교사와 급식도우미의 만족도에 비해 학부모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그림 XI-3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의 배식 활동에 대한 만족도

○ 급식도우미의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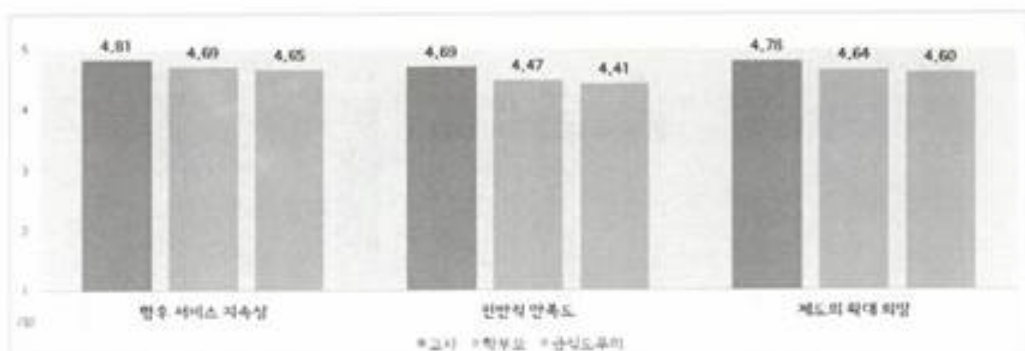
- 급식도우미의 신분의 신뢰성, 신체적/정신적 건강, 용모단정에 대해 교사, 학부모, 급식도우미 모두 4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음. 교사와 급식도우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 그림 XI-4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의 자격에 대한 만족도

○ 급식도우미 운영의 만족도

- 전반적으로 '향후 급식도우미 서비스의 계속적 지원', '급식도우미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급식도우미 제도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Ⅱ 그림 XI-5 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제도의 만족도

제5절 급식도우미 제도 운영의 효과

○ 교사의 업무 집중 향상

- 초등학교의 점심시간은 식사와 동시에 학교교육의 중요한 측면인 생활지도 시간이기도 함. 그러나 학생 배식과 생활지도, 두 가지 업무를 교사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움.
- 그러므로 급식도우미가 학생의 배식을 도와주고 교사는 생활지도를 하는 등 업무분담이 되어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교사가 세심히 살피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직장여성의 급식당번 부담 해소

-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급식 도우미 역할을 학부모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의 급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급식도우미제도를 통하여 자녀 급식 당번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서적 안정감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급식도우미 제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되어 있어 급증하는 노령 인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임.
- 이외에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비교적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연스런 상황에서의 예절 교육이 가능하며 노인들이 일하면서 정신적·신체적 건강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정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어서 도우미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음.

제6절 향후 정책 방향

- 급식도우미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 학부모, 급식도우미 대부분이 이 제도의 운영에 긍정적이며,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 급식도우미 제도의 지속적 지원과 확대를 원하고 있어 향후 급식도우미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음.

○ 급식도우미 자격 제한과 교육 강화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급식도우미는 60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가진 경우 활동할 수 있음(노인일자리사업 지침, 2010). 조사 대상 도우미 중 75세 이상(12%)의 고령의 도우미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정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상태 등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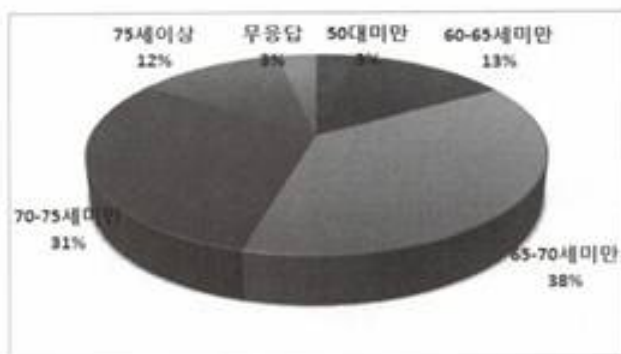


그림 XI-6 | 급식도우미의 연령

- 이와 함께 이들의 업무는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급식도우미로 활동하기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활동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급식도우미 처우 개선

- 본 조사에 의하면 도우미들의 월소득(부부합계)이 50만원 미만(39%),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17%) 순으로 소득 분포를 보이며, 도우미의 절반이상이 100만원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이들이 도우미 활동으로 버는 소득이 가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2010년 기준, 보건복지부) 858,747원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도우미들의 생활이 열악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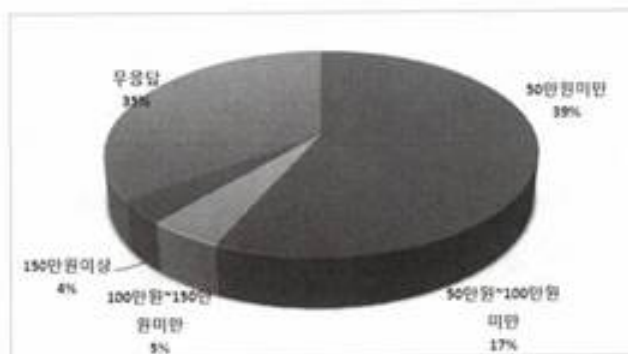


그림 XI-7 | 급식도우미의 소득

- 조사 결과 급식도우미의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식도우미 제도가 노인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도우미의 소득(부부합계)은 매우 낮아 급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도우미들이 독거노인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낮음. 앞으로 어르신들의 급식도우미 참여를 확대시키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 급식도우미의 임금의 개선이 필요함.

○ 급식도우미 홍보 및 인식개선

- 학부모들의 경우 급식도우미가 있음으로서 급식당번 부담에서 해소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직접 어르신들의 급식도우미 활동에 대한 우려가 드러남. 위에서 언급했듯이 급식도우미의 배식활동과 자격에 대한 만족도가 교사와 도우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부모들에게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들 도우미들이 급식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증을 제출과 함께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참여하게 됨. 그러므로 급식도우미 선정 기준 및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급식도우미를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급식도우미 제도의 적극적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0년 법령자료: 최저생계비 고시, 보건복지부

2010-정책개발-014

2010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과 이슈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이성은, 문은영 외, 손문금, 장명선,
안현미 외, 김창연, 조연숙,
김민경 외, 김보람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810-5101(대)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도
 서관여기여성이기록하고여
 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하
 고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성평등도서관여기여성이기
 록하고여성이기억하는여성
 을기록하고여성이기억하는
 바로이곳성평등도서관여기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을기록하고여성을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0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과 이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